

일본의 보험회사 도산처리제도 및 사례

2017. 5

정봉은

머 리 말

일본에서는 90년대 후반 이후 10개 보험회사가 파탄하여 도산처리되었다. 어떻게 처리하면 다수의 이해관계자의 이익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도산처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논쟁과 시행착오를 거쳐 왔다. 1990년대 후반에 도산한 4개 생명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의거한 행정절차 방식에 의해, 2000년 이후에 도산한 4개 생명보험회사는 갱생절차특례법에 의거한 사법절차에 의해 도산처리되었다. 보험계약자,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부분적으로 침해하면서도 보험계약의 지속적 보장이라는 대원칙하에 청산·파산을 시키지 않고 계약이전·합병·인수, 갱생처리 등으로 원만하게 도산처리를 진행하였다.

일본은 이차역마진의 장기화에 따른 연쇄도산과 도산처리 자금의 조달이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미국 등 선진국과의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갱생절차 처리제도를 만들어냈고 은행권과는 다르게 보험권 특유의 입장도 관철시킨 제도를 만들어냈다. 우리나라 보험업법상의 도산처리 법제는 일본의 1996년 이전 구 보험업법을 참조하여 도산처리 규정이 만들어졌다. 우리나라의 도산법제도 나름대로의 원칙과 발전을 이루어왔지만, 일본의 도산법제는 1996년 보험업법 개정 이후 방대한 조문의 내용으로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고 또한 2000년에 보험회사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갱생절차특례법이 정비되었다.

본 보고서는 일본의 도산처리제도의 절차와 내용 및 적용사례에 대하여 제도설계상의 관념, 시행착오, 발전과정의 관점에서 정리·소개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의 연구와 개선·발전에 기초자료가 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본 보고서가 이러한 측면에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2017년 5월
보 험 연 구 원
원장 한 기 정

■ 목차

요약 / 1

I. 서론 / 13

II. 보험회사 도산 시 계약자보호 및 도산처리제도 / 18

1. 보험회사 도산 시 계약자보호 현황 / 18
2. 보험회사의 도산처리제도 발전과정 / 24
3. 보험회사의 행정절차 방식 도산처리제도 / 38

III. 보험업법상 도산처리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 / 64

1. 일반채권자의 권리삭감 문제 / 64
2. 계약자보호기구의 재원증액 확충 한계 / 68
3. 도산처리 절차의 신속성 문제 / 71

IV. 갱생방식 도산처리제도의 도입 / 73

1. 갱생특례제도의 도입 경위 / 73
2. 갱생특례법상 갱생특례제도 개요 / 75
3. 갱생계획안의 주요 특색 및 적용사례 / 83

V. 결론 / 92

1. 행정절차 방식과 갱생절차 방식의 도산처리 비교 / 92
2. 일본 도산처리제도의 특징 요약 / 96
3. 우리나라 도산처리제도에 주는 시사점 / 100

| 참고문헌 | / 103

| 부록 | / 105

- I. 보험업법에 의거한 행정절차 처리사례(東邦生命 사례) / 105
- II. 갱생특례법에 의한 사법절차 처리사례(大和生命 사례) / 119

■ 표 차례

- 〈표 II -1〉 손해보험의 보상대상계약 계약자 정의 / 19
- 〈표 II -2〉 보상대상계약 및 보험 종류별 보상비율 / 20
- 〈표 II -3〉 보험과 은행의 계약자보호기구 / 33
- 〈표 IV-1〉 大和生命의 보험금 수시변제 현황 / 78
- 〈표 IV-2〉 갱생특례법상 각 채권의 권리 순위 / 84
- 〈표 IV-3〉 大和生命의 책임준비금 삭감 현황 / 86
- 〈표 IV-4〉 조기해약공제를 적용하는 사유 / 86
- 〈표 IV-5〉 조기해약공제 대상액 / 87
- 〈표 IV-6〉 연차별 조기해약공제 공제율 비교 / 87
- 〈표 IV-7〉 갱생처리 보험회사의 노동채권 면제율 비교 / 89
- 〈표 IV-8〉 大和生命의 자금원조액 산정 사례 / 91
- 〈표 V -1〉 행정절차와 갱생절차 방식의 계약조건 변경 비교 / 94
- 〈표 V -2〉 보험업법과 갱생특례법상의 도산처리 시 자금원조액 비교 / 99

■ 그림 차례

- 〈그림 I -1〉 조기사정조치 개념도 / 14
- 〈그림 I -2〉 보험업법상 도산회사의 부실처리 개념도 / 15
- 〈그림 I -3〉 승계보험회사에 의한 승계의 기본구조 / 16
- 〈그림 II -1〉 도산보험회사의 보상 개념도 / 21
- 〈그림 II -2〉 예금보험법상 금융기관의 도산처리 개념도 / 35
- 〈그림 II -3〉 자금원조액 개념도 / 36
- 〈그림 II -4〉 자금원조 신청 및 결정 프로세스 / 37
- 〈그림 II -5〉 보험업법상 도산보험회사의 도산처리 절차 / 39
- 〈그림 II -6〉 보험관리인의 관리계획에 의거한 계약이전 절차 / 42
- 〈그림 II -7〉 계약조건 변경을 수반하는 임의이전 절차 / 50
- 〈그림 II -8〉 구 보험업법하의 강제이전 절차 / 51
- 〈그림 II -9〉 합병을 통한 도산보험회사 처리 절차 / 55
- 〈그림 II -10〉 주식취득을 통한 도산보험회사 처리 절차 / 57
- 〈그림 II -11〉 승계(인수)의 신청~결정 프로세스 / 61
- 〈그림 II -12〉 계약자보호기구에 의한 계약인수의 기본구조 / 62
- 〈그림 III -1〉 생명보험계약자보호기구 재원의 변천도 / 70
- 〈그림 IV -1〉 갱생절차 기본 구조 / 75
- 〈그림 V -1〉 보험사 도산처리에 대한 행정절차와 사법절차 개념도 / 93

Study on resolution mechanism of Insurance Companies in Japan

This report attempts to examine the evolution of resolution of Japanese insurance companies since 1990s, the period of which 10 companies went bankruptcy. The resolution took the form of administrative procedure in the late 1990s, while it took the form of judicial procedure through the imposition of the act on Special Treatment of Corporate Reorganization Proceedings and Other Insolvency Proceedings of Financial Institutions in 2000.

According to the main principle of resolution which aims at providing continuous protection of insurance contract while allowing for a minimum loss of the technical reserves, the resolution was made through more gradual resolution methods such as transfer of insurance contract, merger and acquisition, rehabilitation proceeding rather than those through liquidation, and bankruptcy.

Japan has established rehabilitation proceeding system consistent with that for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despite of the fact that a chain of bankruptcies of small and medium sized insurance companies and the difficulties of raising the fundings. The rehabilitation proceeding system was contrasted with that for the banks.

Korean rehabilitation proceeding system has been established based on the 1996 version of Japanese rehabilitation proceeding system. Although Korean rehabilitation proceeding system underwent a major transformation since the 1997 IMF crisis, Japanese rehabilitation system was revised in many times in 1996 and became more transparent, making the 2000 version of the act on Special Treatment mentioned above applicable to insurance companies.

Finally, this research on the evolution of Japanese resolution mechanism will be useful for the further research on Korean Deposit Insurance in Korea.

요 약

I. 서론

- 보험업법상 파탄보험회사란 채무초과 상태이거나 보험금 지급정지 상태인 보험회사 또는 그 우려가 있는 보험회사를 말하는데 파탄보험회사가 도산처리의 대상임
- 보험업법상의 도산처리는 구제회사가 나타나는 경우와 나타나지 않는 경우로 나뉘며, 갱생특례법상의 도산처리는 구제회사를 통한 도산처리임
-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보험법제와 보험시장 환경이 비슷한 일본의 보험회사 도산처리제도와 발전과정을 소개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의 개선 시 참고가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본 보고서의 전개는 먼저 일본의 보험회사 도산 시 계약자보호 및 도산처리제도에 대해서 정리하고, 이어서 도산처리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갱생방식 도산처리제도의 도입내용을 정리하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II. 보험회사 도산 시 계약자보호 및 도산처리제도

1. 보험회사 도산 시 계약자보호 현황

- 계약자보호 보상대상계약 계약자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개인을 보호함
 - 손해보험의 경우 종목은 기업성물건을 제한하고 가계성물건을 보장하며, 계약

자속성 제한은 개인을 보장하나 예외적으로 소규모 법인은 인정

- 생명보험의 경우 기본적으로 피보험자가 모두 개인이므로 모든 계약을 보상 대상으로 하나, 재보험계약이나 운용실적연동형보험계약의 특별계정부분은 보상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보상의 상한한도는 제한이 없고, 보상액은 계약채권액의 일정비율만 보상하는 정률보상 방식임

- 생명보험은 보험금 및 해약·만기환급금에 대해 도산 시점 책임준비금의 90%를 보상
-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지진보험 등 강제보험은 보험금 및 해약·만기환급금을 100% 보상, 여타 일반손해보험의 보험금은 도산 후 3개월 내는 100% 보상하나 이후에는 80%만 보상하며, 해약·만기환급금은 80%를 보상하고 질병·상해보험은 90%를 보상함
- 또한 고예정이율계약(예정이율이 과거 5년간 기준이율을 초과해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는 파탄시점의 책임준비금 삭감에 추가하여 고예정이율계약의 보상 공제율만큼 추가 삭감함

2. 보험회사의 도산처리제도 발전과정

- 1996년 이전 구 보험업법 시대에는 도산회사 계약의 강제관리 및 강제이전을 하였음
- 1996년에서 1998년 법 개정까지는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의 임의가입 시기
 - 대상성 자문기구인 보험심의회는 답신보고서에서 당국의 가입기준 명확화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강제이전제도에 대해서는 지불보증기금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
 - 1996년 보험업법 개정 시 지불보증기금제도인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이 창설되었으나, 계약자에 대한 직접보상 지불 없이 인수회사에 대한 자금원조 기능만

수행하며 또한 기금에 대한 가입이 임의라는 제약을 지님

- 동 기금 도입 시 보험업계는 독일에서 보증기금 도입 주창 시 논란이 되었던 위험성 문제를 제기하며 보험회사를 기금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정당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

- 1998년 법 개정 이후, 계약자보호기금의 허점을 보완, 복합적 기능을 갖춘 생·손보 보험계약자보호기구가 각각 출현

3. 보험회사의 행정절차 방식 도산처리제도

가. 보험회사 도산처리의 준비단계

- 파탄보험회사의 확정 경로는 감독당국의 직권으로 지정 또는 부실회사가 사업지속의 곤란 보고
 - 감독당국이 보험회사의 업무·재산상황에 비추어 사업의 지속적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시 또는 보험사업의 운영이 부적절하여 지속적 영위 시 보험계약자보호가 결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업무 정지명령, 계약이전·합병·제3자 주식취득의 협의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거나, 보험관리인에 의한 관리를 명령
 - 보험회사 스스로 판단하여 보험사업의 업무·재산상황에 비추어 사업의 지속적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내각총리대신에게 이를 문서로 보고함
- 파탄보험회사로 확정이 되면 내각총리대신은 파탄보험회사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를 명하는 관리처분을 하고, 관리처분과 동시에 보험관리인을 선임

나. 보험회사의 도산처리 실행단계

■ 인수보험회사에 대한 계약조건 변경 및 계약이전

- 파탄보험회사에 대해서 내각총리대신으로부터 보험계약의 전부이전 협의를 명령받아 전부이전을 하는 경우, 피관리회사가 보험관리인의 관리계획에 따라 보험계약의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 내각총리대신으로부터 적격성 인정을 받은 파탄보험회사가 인수회사에게 보험계약의 전부이전을 하는 경우는 보험금액의 삭감 및 기타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음
- 계약조건을 변경을 수반하는 임의이전의 절차
 - 주주총회 결의를 득한 후 이전서류와 함께 1개월 이상 공고하며, 계약자의 이의제기를 통한 이전절차 부결요건은 대상계약자 총수의 1/10을 초과하는 자의 이의제기와 대상계약자의 보험계약 채권총액의 1/10을 초과하는 때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임
 - 임의이전 및 보험관리인 관리계획하의 이전 시 사전심사의 요건이 이전대상계약자 이외의 이전회사(도산회사) 채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우려가 없을 것임

■ 계약조건을 변경을 수반하는 합병

- 파탄보험회사에 대해서 내각총리대신의 합병 협의명령을 받아 합병을 추진하는 경우, 보험관리인의 관리계획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 파탄보험회사가 구제보험회사와 합병하여 그 구제보험회사가 존속하게 되는 합병을 하는 경우에 계약조건을 변경을 할 수 있음
- 계약조건을 변경을 수반하는 합병의 절차
 - 주주총회 소집통지 발송일에 합병계약의 승인결의를 위한 회의목적공고하고, 공고 시부터 업무의 전부를 정지하며, 계약자의 이의제기를 통한 합병절차 부결 요건은 합병대상 계약자 총수의 1/10을 초과하는 자의 이의제기와 합병대상 계약자의 보험계약 채권총액의 1/10을 초과하는 때를 충족하여야 함

- 계약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취득
 - 파탄보험회사에 대해서 내각총리대신의 주식취득 협의 명령을 받아 주식취득을 하는 경우, 보험관리인의 관리계획에 따라 주식취득을 하는 경우, 파탄보험회사가 구제보험회사에 주식취득됨으로써 인수회사의 자회사가 되는 경우에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음

- 승계보험회사에 대한 계약이전 및 계약조건의 변경
 - 파탄회사의 보험계약이전 등을 받아줄 구제보험회사가 나타날 전망이 없는 경우, 파탄보험회사는 계약자보호기구가 자회사로서 승계보험회사를 설립하여 보험계약의 이전을 받아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
 - 파탄보험회사의 계약을 인수한 승계보험회사는 임시조치에 불과하며, 당해 보험계약의 최종적인 인수처가 될 다른 보험회사 또는 보험지주회사 등을 찾아 보험계약의 이전·합병·주식취득 등을 추진하는 것을 지향함

- 보험계약자보호기구의 계약인수 및 계약조건 변경
 - 구제보험회사 등이 나타날 전망이 없어 보험계약을 이전·합병할 수 없는 경우 파탄회사는 계약자보호기구에 승계가 아닌 보험계약의 이전(보험계약인수)을 신청할 수 있음
 - 승계와 마찬가지로 보호기구의 직접인수는 임시적 조치에 불과하며 당해 보험계약의 최종적인 인수처가 될 다른 보험회사 또는 보험지주회사 등을 찾아 보험계약의 이전·합병·주식취득 등을 추진하는 것을 지향함

Ⅲ. 보험업법상 도산처리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

- 보험업법에 의거하여 도산처리 시 일반채권자의 권리삭감이 불가한 문제
 - 도산보험회사가 인수회사에 계약이전을 할 때에 청산법인(도산보험회사)에

일반채권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재산을 남겨둔다는 것을 전제로 계약자보호기구가 자금원조를 하게 됨

- 보험업법에 의거하여 도산처리 시 보험계약자의 채권을 삭감하고 일반채권자는 오히려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해 비난 야기

■ 계약자보호기구의 재원증액 확충 한계

- 당초 생보의 기본재원 규모는 4,000억 엔을 기본으로 출범하여 보상충실화를 위해 600억 엔을 추가로 설정(총 4600억 엔), 이후 2003년 3월 31일까지 도산하는 보험회사에 대응할 재원으로서 부담한도액을 1,000억 엔 추가증액 설정(총 5,600억 엔)하였고, 동시에 보호기구의 한도액 5,600억 엔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4,000억 엔을 상한으로 하여 정부가 재정보조를 하는 안전망 설정
- 금융심의회는 연쇄도산의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1999년 12월 보험회사의 안전망 및 도산법제의 정비 필요성에 대해 검토, 2000년 5월 「보험업법 및 금융기관 등의 갱생절차 특례법」이 제정되어 생보계약자보호기구의 기능 확충 및 갱생절차 이용이 가능하게 됨

■ 도산한 보험회사의 계약집단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도산처리 절차 진행이 필요

- 보험회사는 보험계리인의 사업지속 적정성에 대한 수리적 검토를 통하여 보험업의 지속적 영위가 곤란한 때에는 이를 감독당국에 보고하나, 동 보고 후 해당회사에 대한 특별검사를 통한 확인을 거쳐 업무정지명령 및 보험관리인에 의한 관리처분 명령을 내리는 등 일련의 과정이 보험계약자들에게 알려지게 되어 대량해약을 야기할 가능성 상존
 - 신속한 도산처리를 위하여 갱생특례법에 의한 갱생처리를 선호

IV. 갱생방식 도산처리제도의 도입

1. 갱생특례제도의 도입 경위 및 개요

- 회사갱생법은 절차상 문제가 많아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의 갱생절차에는 이용 곤란
 - 보험계약자의 수가 방대하여 채권자에 대한 송달, 채권신고, 채권조사, 관계인 집회의 개최 등을 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측면
 - 갱생절차의 신청권한 등이 회사갱생법상에서는 감독당국에 부여되어 있지 않고 해당회사 및 주주, 채권자에게만 부여되며 보험상호회사는 이용이 불가능한 한계
- 보험업법에 의거한 도산처리가 효율성이 떨어지고 많은 시간과 비용을 수반함에 따라 보험권에도 절차상의 특칙을 설정하도록 갱생특례법이 개정됨
- 계약자보호기구의 권리에 대한 특례 권한 신설
 - 보험회사의 경우 갱생절차개시 결정에 대하여 계약자보호기구에 송달하면 족하며 개별계약자에게 송달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여 보험계약자에 대한 서면 송부의 부담 경감
 - 채권신고에 대해서 계약자보호기구가 계약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자 표를 작성, 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개별적 채권신고를 면제
- 보험회사에 대하여 세 가지의 갱생계획 특례가 인정됨
 - 첫째로, 갱생계획에서 동종의 보험계약 채권을 변경하는 경우 책임준비금의 적립방식 및 예정사망률 등 책임준비금의 계산기초가 되는 계수의 수준에 대해서 동일한 수준을 사용하는 것은 채권자의 실질적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됨
 - 둘째로, 보험계약자의 권리 중 해약환급금 등 이와 유사한 급부금에 대해서 다

른 권리에 비해 불리한 조건을 정하는 것도 채권자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됨

- 셋째로, 갱생절차 개시 결정 후에 납부된 보험료에 의해 적립해야 할 책임준비금에 대응하는 보험계약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갱생계획에서 감면 등 권리제한의 조치를 할 수 없음

■ 자산운용 등에 관련된 채권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상무(常務)에 기인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공익채권화하여 수시변제를 할 수 있음

■ 갱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관리업무의 일환으로 일부 업무가 정지됨

- 신계약의 체결, 계약전환, 해약접수, 실효 시 환급금 청구접수, 보험금액 및 급부금액의 감액, 특약의 해약접수, 단체보험의 인수비율의 감소, 계약자약관대출 등

2. 갱생계획안의 주요 특색 및 적용사례

■ 보험계약자의 지위 및 권리변경

- 회사갱생법 및 갱생특례법상 ‘갱생채권자 등 또는 주주 권리의 변경’을 정할 수 있음. 즉, 갱생채권자인 보험계약자의 권리변경을 정할 수 있음
 - 권리변경의 내용은 동일 종류의 권리를 갖는 자 간에는 각각 평등하다는 것임
 - 보험계약자는 2순위(일반 선취특권 등 기타 일반우선권 있는 갱생채권)에 속함

■ 조건변경기준일 시점에서 책임준비금 등을 다음과 같이 삭감

- 책임준비금 적립방식을 전기질멜식으로 변경한 후,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하여 갱생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삭감
- 고이정이용계약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율로 삭감하여 보상 적용

- 高예정이율계약의 보상률 = 90% - {(과거 5년간 각 연도의 예정이율 - 기준이율)의 총합 ÷ 2}

■ 보험계약의 권리변경 시 조기해약공제제도의 적용

- 조기해약공제는 해약, 감액, 실효 등 조기해약공제를 적용하는 사유에 대하여 조기해약공제의 대상액(해약환급금, 책임준비금액 등)에 조기해약공제율을 연차별로 적용
 - 조기해약공제기간은 보통 10년간 적용하며, 공제율은 1년차 20%에서 10년차 2%로 연차별로 2%씩 인하하여 적용함

■ 노동채권에 대한 권리변경

- 노동채권도 우선적 갹생채권에 속하여 보험계약 채권과 평등을 도모하여야 하므로 자산훼손율을 반영하여 노동채권의 면제율을 규정

■ 보험계약 이외의 일반갹생채권 권리변경

- 일반갹생채권은 4개 갹생회사 모두 전액 면제조치함
- 후순위갹생채권은 갹생처리 4개사 모두 전액 면제조치함

■ 주주의 권리변경

- 갹생회사는 무상으로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주식취득과 동시에 전부소각하며 자본금액을 감소시키고 신주예약권의 권리변경을 하며, 갹생회사가 발행한 신주예약권 전부를 무상으로 취득하고 보유하게 된 신주예약권 전부를 취득과 동시에 소각함

■ 계약자보호기구의 자금원조

- 갹생방식의 도산처리 시 원칙적으로 책임준비금의 90%가 계약자보호기구로부터 보호되나, 영업권을 포함한 자산의 훼손이 심각한 경우에는 책임준비금

등의 부채를 일부 면제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초과가 해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갱생특례법이 적용된 사안에서는 大和生命에 자금원조가 이루어짐

V. 결론

1. 행정절차 방식과 갱생절차 방식의 도산처리 비교

■ 행정절차 방식과 갱생절차 도산처리 방식의 선택적 사용

- 보험회사에 대한 도산처리 방법으로 보험업법에 의거한 행정절차 방식 이외에 갱생절차특례법에 의거한 사법절차 방식이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됨
- 보험업법에 의거한 계약이전 방식의 경우에는 일반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상당한 책임재산을 도산회사에 유보시켜 두어야 하기 때문에, 계약자에게만 보험금액 등 채권을 삭감하는 행정절차 방식은 갱생절차 방식에 비하여 사용 빈도가 대폭 감소함

■ 계약조건 변경 등 계약자보호 측면 비교

- 갱생방식이라 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갱생특례법에서 계약자 보호 장치를 규정하고, 보험계약의 권리변경은 보험업법을 준용하므로 행정절차 방식과 실질적 차이가 없음

■ 직원의 고용승계와 노동채권 일부면제

- 행정절차로 계약이전을 한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계약은 다른 회사에 전부 포괄이전되었으나, 기존회사의 직원은 기존법인의 청산·흡수합병 등으로 해산되어 실직함
- 갱생처리를 한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기존법인이 해산하지 아니하고 회생을 한 것이므로 사무효율화를 위한 인력구조조정 대상자 이외에는 고용을 유지할 수

있었음

- 갱생처리된 도산회사의 경우 갱생계획안에서 노동채권의 삭감 내용이 반영된 채 법원의 허가를 받게 되나, 행정절차로 도산처리를 한 회사는 감독당국이 노동채권에 대해 삭감 등 관여를 할 수 없어 고용은 유지되지 못하지만 노동채권은 변제순위에 따라 보장받음

2. 일본 도산처리제도의 특징 요약

- 첫째, 도산처리 시스템 설계 시 도산회사에 대한 계약자보호와 건전화사의 계약자보호를 양립하고자 노력하였음
- 둘째, ‘최소 비용의 원칙’에 의하지 않고 ‘보험계약의 유지를 통한 보장 지속’이라는 원칙을 관철하여 청·파산을 배제하고 구제회사를 찾아 계약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셋째,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상보험금의 직접지급을 인정하지 않고 도산회사나 구제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또는 계약자보호기구에 의한 계약인수만 인정함
- 넷째, 보상보험금에 상한을 두지 않으나 보증비율은 강제보험을 제외하고는 보험계약 채권액의 일정비율(80~90%)로 제한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 다섯째, 보험계약자보호기구에 각출하는 민간보험회사의 각출금은 최대부담금이 확정되어 있어 최대부담금 이상의 각출은 하지 않으며 추가적으로 자금이 필요 시에는 국가재정으로 공적자금을 출연함
- 여섯째, 일반채권자의 권리도 변경할 수 있는 갱생절차에 의한 처리특례를 도입하였음

3. 우리나라 도산처리제도에 주는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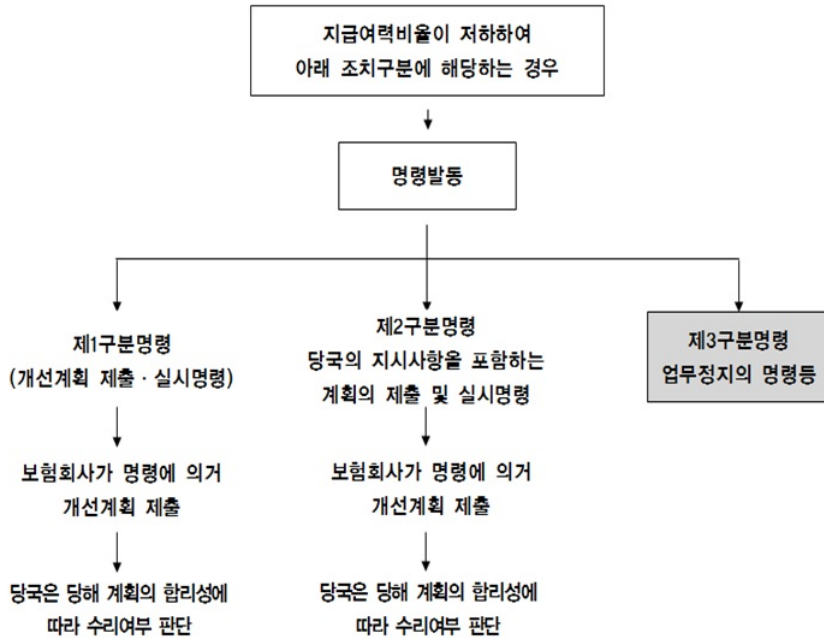
- 첫째, 계약자 자기책임원칙을 일본 등과 비교,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정액보상방식은 정액보상 상한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정률보상 방식과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시사점을 얻을 필요가 있음
- 셋째, 도산회사의 가입자에게 직접 보상보험금을 지급하는 Payoff 원칙은 유명무실할 수 있음
- 넷째, 도산처리 방식의 선택에 있어 예금자보호법상의 최소 비용 원칙은 보험에는 적용배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보험업법에 의한 행정절차 처리 외에 선택적으로 갱생방식의 도산처리도 가능하도록 선택지를 확대·정비해 둘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보험회사의 도산처리 투명화를 위해 법제의 정비가 필요함

I. 서론

보험회사가 경영부실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의 회사를 일본 보험업법에서는 '파탄보험회사'라고 칭한다.¹⁾ 구체적으로 파탄보험회사란 두 가지 사유의 형태로 정의되고 있는데, 첫째 사유는 업무 또는 재산상황에 비추어 보험금의 지급을 정지할 우려가 있는 자 또는 보험금의 지급을 정지한 자이고, 둘째 사유는 보험회사의 재산으로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이다. 다시 말해서 파탄보험회사란 채무초과 상태이거나 보험금 지급정지 상태인 자 또는 그 우려가 있는 보험회사를 말한다. 여기에서 보험금의 지급을 정지할 '우려'에 대한 건전성 확보 판정은 당연히 감독당국인 내각총리대신²⁾이 하는 것이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법령에서 정한 지급여력비율 기준상의 건전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다.³⁾ 즉, 지급여력비율이 조기시정조치의 제3구분(지급여력비율 0% 미만)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한부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
- 1) 일본 보험업법 제260조 제2항 1호(우리나라에서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서 '부실금융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부실금융기관이란 경영상태를 실제 조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이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융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나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한 금융기관을 말함.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보험회사라는 용어 대신에 일본 보험업법에서 정의한 '파탄보험회사'나 일반적 의미의 '도산보험회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함)
 - 2) 보험업법 제303조 제1항에서 내각총리대신은 보험업법상의 모든 권한을 금융청장관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내각총리대신이라 함은 금융청장관이 집행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함을 밝혀둠
 - 3) 보험업법 제130조(건전성 기준) 및 보험업법 제132조 제2항에 규정하는 구분 등을 정하는 명령 제2조 1항

〈그림 I-1〉 조기시정조치 개념도



자료: 保險研究所(1998), p. 4

지급여력비율로 판정하는 조기시정조치에서 지급여력비율이 200% 이상이면 비대상구분이고, 100% 이상 200% 미만은 제1구분에 해당하며 0% 이상 100% 미만은 제2구분, 0% 미만은 제3구분에 해당한다.⁴⁾ 제2구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급능력 충실화를 위한 각종 제재와 개선계획 제출 등이 수반되지만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파탄 보험회사의 도산처리에는 포함이 되지 않음을 밝혀둔다. 보험회사가 제2구분을 거쳐 제3구분에 이르기까지도 자본증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각총리대신에 의해 파탄 보험회사로 인정되거나⁵⁾ 또는 당해 보험회사가 보험업의 지속적 영위가 불가함을 문서로써 내각총리대신에게 보고⁶⁾하여야 한다.

4) 일본 보험업법 및 감독규정에서는 리스크총량의 1/2만을 지급여력비율 산정 시의 리스크 상당액으로 간주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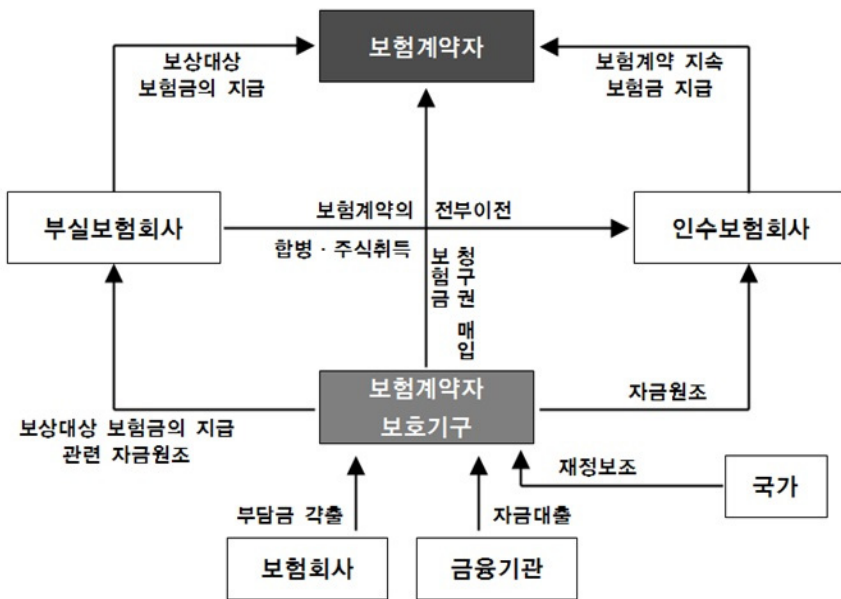
5) 보험업법 제241조 1항

6) 보험업법 제241조 3항(동 보고는 의무사항임)

이러한 과정을 거쳐 파탄보험회사가 나타나면 계약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게 도산처리를 하게 된다. 크게 나누어 보면, 계약이전을 받아 구제해 줄 인수회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계약이전을 받아 인수할 구제회사(인수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림 I-2>와 같이 계약이전, 합병, 제3자 주식취득 이 세 가지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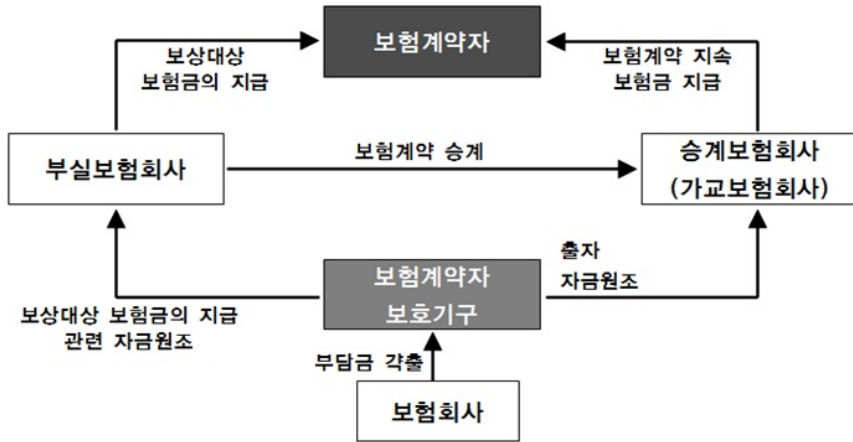
<그림 I-2> 보험업법상 도산회사의 부실처리 개념도



자료: 생명보험계약자보호기구 홈페이지(<http://www.seihohogo.jp/>)

그러나 계약이전을 받을 구제회사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림 I-3>과 같이 승계나 계약자보호기구에 의한 계약인수의 두 가지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이 두 가지 방법도 최종적으로는 구제보험회사를 찾아 계약을 이전 시키거나 합병 또는 주식취득 하는 것을 지향하므로 결국엔 <그림 I-2>와 같이 도산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I-3〉 승계보험회사에 의한 승계의 기본구조



자료: 생명보험계약자보호기구 홈페이지(<http://www.seihohogo.jp/>)

원래 기업의 도산처리를 하는 일반적 방법인 회사갱생, 파산, 민사재생, 정리, 청산이라는 각종 도산처리제도가 보험회사에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파산을 제외하고는 갱생특례법과 같은 특례적 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다른 조치들은 실용가능성이 없다.⁷⁾ 이는 보험회사의 채권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성때문이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도산처리는 보험감독법인 보험업법에 의거한 행정절차를 이용한 도산처리가 전통적 방식으로 사용되어 왔다. 보험업법에 의거하여 도산처리를 하는 행정절차도 한계를 드러내 2000년 갱생특례법이 개정된 이후부터는 주로 갱생절차 방식에 의하여 도산처리를 해 오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 방식인 보험업법에 의거한 행정절차 방식도 사용되고 있는 절차이고 갱생절차 방식의 모태라 할 수 있으므로, 이 두 가지 형태의 도산처리 방식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일본의 보험회사들은 1980년대 후반 확정고금리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양적경쟁을 전개한 결과, 1992년에 버블이 붕괴된 후 1990년대에 대규모 연쇄도산이 일어났다. 1997년의 日産(닛산)생명을 시작으로 2000년대 후반까

7) 山下友信(2005), *保険法*, 東京, 有斐閣, p. 621

지 8개 생명보험회사와 2개 손해보험회사⁸⁾가 도산하였다. 2000년 상반기 이전에 도산한 日産생명, 東邦(토오호오)생명, 第百(다이하쿠)생명, 大正(다이쇼우)생명은 보험업법에 의거하여 행정절차 방식으로 구제보험회사에 계약의 전부를 포괄이전하였고, 2000년 하반기 이후 도산한 千代田(치요다)생명, 協榮(쿄오에이)생명, 東京(토오쿄오)생명, 大和(아마토)생명은 사법절차인 갱생절차특례법에 의거하여 갱생처리되었다. 손해보험의 경우, 2000년에 도산한 第一(다이이치)화재는 행정절차 방식으로 포괄계약이전을 하였고 2001년에 도산한 大成(다이세이)화재는 갱생처리절차 진행 중에 구제회사에 흡수합병으로 도산처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행정절차 방식의 보험회사 도산처리제도를 소개하고 도산처리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살펴본 후에, 개선방법으로 대두된 갱생절차 처리제도를 정리·설명하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부록에서 보험업법에 의한 행정절차방식의 처리사례와 갱생특례법에 의한 갱생처리 사례의 회사 사례를 소개·정리해 두고자 한다.

일본의 도산처리제도는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의 제도를 흡수하여 일본만의 독특한 제도가 된 것인데, 우리나라도 과거의 일본과 같이 이차역마진에 의한 대규모 손실이나 회계제도의 변경 등에 따른 대규모연쇄도산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도산처리 시의 계약자보호와 계약자를 비롯한 채권자 자기책임의 원칙과 집행과정에 대하여 일본의 사례를 정리·소개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8) 2개 손해보험회사 중 하나인 대성화재는 911테러와 해외재보험거래의 실패에 의한 도산으로, 다른 생보사·손보사의 원인인 고금리확정형상품 과다판매에 따른 이차역마진손실과는 원인이 다른 사례임

Ⅱ. 보험회사 도산 시 계약자보호 및 도산처리제도

본 장에서는 보험회사의 도산 시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에 대해 계약자보호 제도의 현황을 정리·소개하고, 일본 보험회사의 도산 시 처리제도의 발전과정을 시대 순으로 정리한다. 또한 보험업법에 의거하여 진행되는 도산처리 방식의 주요 내용과 방법, 흐름 등을 정리·소개하며, 특히 높은 예정이율의 계약과 같이 도산처리 시에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한 특별조치의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기술해 두고자 한다.

1. 보험회사 도산 시 계약자보호 현황

가. 계약자보호 보상대상계약 계약자의 범위

손해보험회사 도산 시 계약자보호제도의 목적이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신뢰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보호대상은 기본적으로 개인계약자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개인계약자는 기업 등의 법인계약자와 비교할 때 보험회사에 대한 신용정보의 입수나 보험회사와의 계약교섭 시에 약자적 입장에 있어 보호의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⁹⁾ 보상대상계약을 제한하는 방법은 보험종목을 제한하는 방법과 계약자 속성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다. 손해보험종목의 제한은 기업성물건을 제한하고 가계성물건만을 보상대상으로 하며, 계약자는 개인계약자보호를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소규모법인에 한해 보호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피보험자가 모두 개인이므로 전 계약을 보상대상계약으로 하고 있

9) 佐野誠(2002, 12), “損害保険における支払保証制度”, 保険学雑誌, 第579号, p. 186

다. 생명보험은 보험의 목적이 보험금수령에 의한 장래의 생활보장에 있고 또한 퇴직연금보험이나 단체보험이라 하더라도 보장을 받는 피보험자나 보험금수령인은 기업이 아니라 개인이기 때문이다.

보상대상계약은 보험계약자보호를 위한 보험업법 및 보험계약자보호특별조치명령에 규정되어 있다.¹⁰⁾ 생명보험계약은 보험 종류나 보험계약의 속성에 관계없이 일본 내에서 체결된 모든 원수보험계약을 보상대상계약으로 한다. 다만, 재보험계약이나 운용실적연동형보험계약의 특별계정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손해보험의 보상대상계약은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 가계지진보험계약, 자동차보험계약은 개인이나 법인 등 보험계약자의 속성에 불문하고 모두 보상의 대상이 된다. 다만, 화재보험 및 기타 일반손해보험(배상책임, 동산종합, 해상, 운송, 신용, 산재보상보험 등)의 경우는 보험계약자가 개인이나 소규모법인, 아파트·맨션(공동주택)관리조합인 경우에만 보상대상이 되고 기업 등 기타 법인인 경우에는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 보험계약자가 개인·소규모법인·맨션관리조합 이외인 경우라도 그 피보험자인 개인·소규모법인·맨션관리조합이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보험계약 중 당해 피보험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대상으로 한다.

〈표 II-1〉 손해보험의 보상대상계약 계약자 정의

| 계약자 | 정의 및 내용 |
|--------|---|
| 개인 | - |
| 소규모법인 | 소규모법인이란, 도산 시점에 상시고용하는 종업원 또는 상시근무 직원 수가 20인 이하인 아래의 법인을 말한다 ① 일본법인 ② 일본에서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통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외국법인 |
| 맨션관리조합 | 맨션관리조합(공동주택관리조합)이란, 건물구분소유법 3조·65조에 규정하는 단채로 주로 주거용으로 제공되는 건물 등의 관리를 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

자료: 보험계약자보호를 위한 특별조치명령(대장성령 제124호)에서 작성

10) 보험업법 제270조의3 제2항 1호 및 보험계약자보호특별조치명령 제50조의3

나. 보상방식 및 보상수준

대부분의 나라가 보상수준의 상한을 제한하는 대신 보험계약채권액은 전액 100% 보상하는 정액보상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일본은 보상의 상한한도는 제한하지 않고 보상대상계약 채권액의 일정비율만을 보상하는 정률보상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보험계약자보호특별조치명령에서 보상률을 정하고 있는 보상 내용은 <표 II-2>와 같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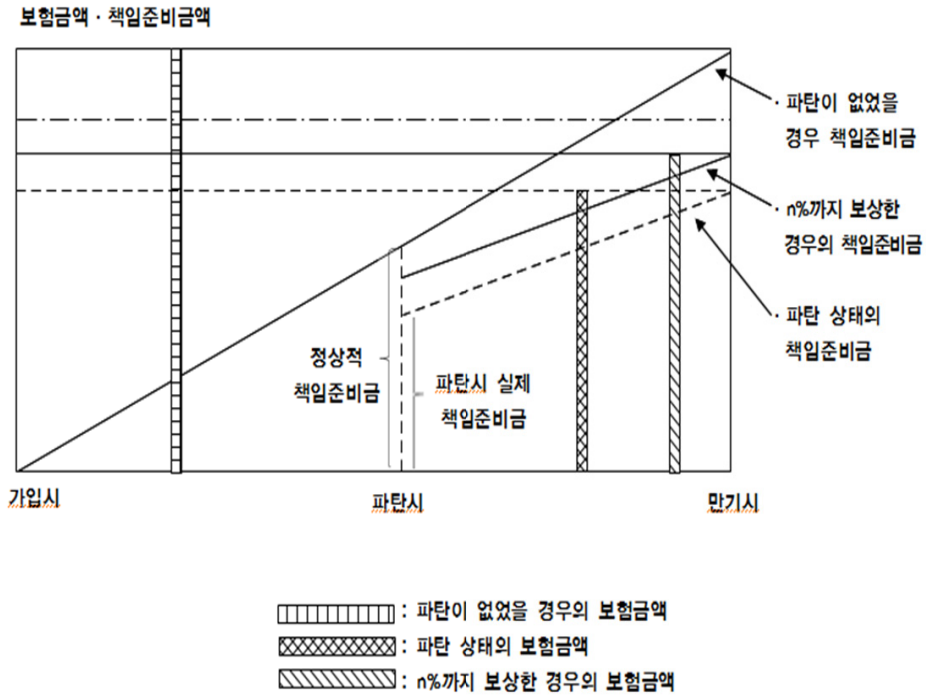
<표 II-2> 보상대상계약 및 보험 종류별 보상비율

| 보상대상계약 | | 보상비율 | |
|-------------|--|--|----------------------------------|
| | | 보험금 |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
| 손해보험 |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가계지진보험 | 100% | |
| | 자동차보험 | ·도산 후 3개월간 100%(보험금 전액지급) ·3개월 경과 후: 80% | 80% |
| | 화재보험 | | |
| | 기타 손해보험 (배상책임, 동산종합, 해상, 운 송, 신용, 산재보상 등) | | |
| 질병· 상해보험 | 단기상해보험 특정해외여행상해보험 | 90% | 90% (적립형보험의 적립부분: 80%) |
| | 연금지급형적립상해보험 재산형성저축상해보험 확정각출연금상해보험 | | |
| | 기타 질병·상해보험 (상기 외 상해보험, 소득보상 보험, 의료·개호보험 등) | | |
| | 생명보험 | | |
| 생명보험 | 생명보험 | 도산 시점 책임준비금의 90% | |

보상대상계약 이외의 보험(일반손해보험분야에서 계약자가 개인, 소규모법인, 주택관리조합 등이 아닌 것)은 계약자보호기구로부터 보상되지 않으며, 도산보험회사의 재산상태 여하에 따라 급부를 받게 될지 알 수 없다.

11) 보험계약자보호특별조치명령 제50조의5

〈그림 II-1〉 도산보험회사의 보상 개념도



자료: 保險研究所(1998), p. 6

위 그림의 사례는 경영파탄 시 생사혼합보험의 보상 수준을 도식화한 것이다. 실선으로 표시된 파탄이 없었을 경우의 정상적인 책임준비금보다 점선으로 표시된 파탄상태의 실제 책임준비금은 채무초과로 인하여 크게 부족하므로 작아져 있다. 그러나 앞의 〈표 II-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도산 시점 책임준비금의 90%를 보상하기 때문에 위 그림에서 n%(생명보험 및 적립형장기보험은 90%)까지 보상한 경우의 책임준비금 선(실선과 점선 사이의 책임준비금 선)이 실제 보상하는 책임준비금 수준이다. n%까지 보상하는 책임준비금 선은 계약조건 변경 시에 가입 시의 예정이율을 최선의 예정이율로 인하하므로 계약조건 변경 후 예정이율이 반영된 책임준비금이다.

여기서 책임준비금은 구체적으로 보상대상계약에 관련된 책임준비금(‘특정책임준비금’이라 한다)을 가리킨다. 특정책임준비금은 책임준비금, 지급비금, 계약자배당

준비금(미할당인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¹²⁾ 다시 말해서, 보상대상계약의 특정책임준비금액에 일정의 보상비율을 곱한 금액을 보험금, 만기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다. 고예정이율계약에 대한 추가적 보상제한

생명보험계약 및 질병·상해보험계약(보험기간이 5년 초과인 경우에 한한다) 중 그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기초가 되는 예정이율이 과거 5년간 기준이율을 초과해 있었던 경우에 당해보험계약은 ‘고예정이율계약에 해당하게 된다. 이 고예정이율계약에 대한 보상률은 90%에서 ‘보상공제율’을 공제한 이율로 하는데, 다만 여기서 산정된 율이 ‘기준변제예상률’에 미달할 경우에는 당해 기준변제예상률이 그 보상률이 된다.¹³⁾

위의 적립형보험인 질병·상해보험계약에 대해서는 그 적립부분을 독립된 계약으로 취급한다. 또한 하나의 보험계약의 주계약 또는 이에 부가된 보험특약의 예정이율이 다른 경우나, 하나의 보험계약이 복수의 피보험자¹⁴⁾를 대상으로 다른 예정이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예정이율이 다른 것마다 각각 독립된 보험계약으로 간주한다.

위에서 ‘보상공제율’이란, 당해 보험계약의 예정이율이 기준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의 1/2에 상당하는 이율을 말하며,¹⁵⁾ ‘기준이율’이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별로 각각 전 보험회사의 과거 5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자산운용이익률을 기준으로 하며 당해 연평균 자산운용이익률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내각총리대신 및 재무대신이 정한 이율을 말하는데 현재 기준이율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모두 연 3%로 규정되어 있다.¹⁶⁾

12) 보험업법 제270조의3 제2항 및 보험계약자보호를 위한 특별조치명령 제50조의4

13) 보험계약자보호를 위한 특별조치명령 제50조의5 제2항 및 3항

14) 확정각출연금보험계약 및 확정각출연금상해보험계약의 경우를 제외하며, 당해보험계약의 보험료를 각출하는 자에 한함(보험계약자보호특별조치명령 제50조의5 제4항2호)

15) 보험계약자보호를 위한 특별조치명령 제1조의6 제4항1호

16) 보험계약자보호를 위한 특별조치명령 제1조의6 제4항2호 및 2006년 금융청·재무성 고시(제2호) 제2조

또한 위의 ‘기준변제예상률’이란, 도산보험회사의 확인재산평가에 의거하여 산출된 자산가액 중 보상대상계약 관련 특정책임준비금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계산된 금액(영업권 포함)을 특정책임준비금 등의 금액으로 나누어 얻은 이율을 말한다.¹⁷⁾ 아무리 高예정이율계약에 대해서 보상을 인한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보호제도에 의해서 추가보상되고 있는 부분의 감축에 그쳐야 하는 것이지 채권자평등원칙에 의거하여 배당되는 경우의 변제율에도 미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의거한 것이다.¹⁸⁾

高예정이율계약의 보상을 산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text{高예정이율계약의 보상률} = 90\% - \{(\text{과거 5년간의 각 연도의 예정이율} - \text{기준이율}) \text{의 총합} \div 2\}$$

한편, 미국에서는 생명보험회사의 도산 시 각 주의 ‘생명보험보증법인(The Life Insurance Guaranty Corporation)’이 지급보증을 하고 있는데, 각 주의 법률 모델이 되는 1985년 NAIC(전미보험감독관협회) 모델법에서는 “도산 전 4년간의 예정이율 중 ‘무디스공사채평균이율 - 2%’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대상 외”로 하고 있다.¹⁹⁾ 동법 규정은 37개 주에서 채택 · 시행되고 있다.

17) 보험계약자보호를 위한 특별조치명령 제50조의5 제5항

18) 安居孝啓(2006), *最新保險業法の解説*, 東京, 大成出版社, p. 664

19) 保險監督法研究會編(1994), *生命保險保證基金に関する諸問題*, 財團法人生命保險文化研究所, p. 7, 16(1983년 Baldwin-United사의 보험자회사의 도산 시 동사의 高예정이율의 일시납거치연금이 문제가 되어 기 판매한 기초율 보증에 제한을 설정함)

2. 보험회사의 도산처리제도 발전과정

가. 도산회사 계약의 강제관리 및 강제이전 시기

1996년 이전의 구 보험업법(법률 제65호)에서는 부실보험회사에 대한 처리방안으로 강제적 수단이 사용되었다. 즉, 강제관리와 강제이전이 보험업법상 허용되어 있었다.

보험업법상 관리라 함은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에 경영을 위임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에는 위임관리와 강제관리가 있다. 위임관리는 사적계약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에게 그 업무 및 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것(구 보험업법 92조)을 말하는데 이것은 위탁회사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거한 경우와 대장대신의 권고(구 보험업법 제99조)에 의한 경우가 있다. 여기서 권고란 대장대신²⁰⁾이 행하는 행정처분이지만 명령과는 달라 법적 강제력은 없다. 권고를 받은 회사는 대장대신이 지정한 기간 내에 권고사항에 대하여 회사가 취한 조치 등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야 하나 법적 강제력은 없다.

이에 반해, 강제관리는 대장대신의 정리명령(구 보험업법 제100조) 또는 해산 후의 보험회사의 관리명령(구 보험업법 제137조)에 의거한 관리를 말하며 대장대신이 선임한 보험관리인이 이를 집행한다. 보험회사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법원의 감독하에 집행되는 것이 ‘회사정리’인데 반하여, 강제관리는 상법의 정리(상법 제2편4장7절)에 대하여 특별규정인 썬인데 대장대신의 판단에 의하여 그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회사정리의 갱생절차라 할 수 있다.²¹⁾

구 보험업법 제100조에 따르면 보험업법상 정리명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대장대신은 보험회사의 업무 및 재산의 상황에 따라 그 사업의 지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업무의 상황이 현저하게 불량하여서 공익상 그 사업의 지속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험사업의 정지, 업무 및 재산의 관리 또는 계약의 이전을 명령할 수 있다. 여기서 ‘사업의 지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란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의

20) 대장대신이란 재무장관을 말하며 당시에는 금융정책·감독업무도 관장하고 있었음

21) 保險業法研究会編(1986), 最新保險業法の解説, 東京, 大成出版社, p. 125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구 상법 제381조²²⁾)의 경우와 같이 장래의 지급능력의 확보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때이며 ‘공익상 그 사업의 지속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때’란 사업실적이 현저하게 불량하여 장래에 지급능력의 확보가 위험하므로 보험회사의 공익성 관점에서 사업부진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영향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²³⁾

참고로, 재무상황의 악화 이외에 법령위반이나 명령위반, 기초서류 위반 또는 공익 침해행위에 대한 처분은 구 보험업법 제12조²⁴⁾의 규정에 의하여 처결할 사항으로 여기서 말하는 정리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²⁵⁾

정리명령의 제재의 내용은 보험사업의 정지, 업무 및 재산의 보험관리인에 의한 강제관리, 계약의 이전이다. 여기서 강제관리란 대장대신이 임명한 보험관리인에게 피관리회사의 모든 거래 및 재산의 처분권을 갖는 강제적 관리를 말한다. 관리를 받는 피관리회사는 대장대신에 의하여 사업의 지속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된 것이므로 사업을 계속 영위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관리명령을 받으면 회사의 사업은 원칙적으로 정지되는 것이다.²⁶⁾ 또한 대장대신은 관리를 받은 회사에 대하여 계산기초의 변경, 보험금액의 삭감 및 장래보험료의 감액 또는 계약조항의 변경을 하도록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여기서, 계산기초의 변경이란 예컨대 책임준비금 적립방법을 완화하는 것을 들 수 있고, 보험금액의 삭감은

22) 구 상법 제381조: 회사의 현황 및 기타의 사정에 의하여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판소는 이사, 감사 또는 총주주의 의결권의 100분의3 이상을 갖는 주주 또는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상당하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회사에 대하여 정리의 개시를 명할 수 있음. 회사에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의 의심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도 같음

23) 保險業法研究会編(1986), 전계서, p. 124

24) 구 보험업법 제12조: 보험회사가 법령, 주무대신의 명령 또는 제1조제2항의 서류(기초서류)에서 정한 특별히 중요한 사항에 위반하거나 또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대신은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

25) 保險業法研究会編(1986), 전계서, p. 124

26) 구 보험업법 제103조(사업의 정지): 관리의 명령이 있었던 때에는 관리를 받은 회사의 사업은 이를 정지함. 다만 대장대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지 않을 수 있음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수지상등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히 장래 보험료의 삭감을 수반하는 것이며, 계약조항의 변경이란 보험약관내용의 변경인데 예컨대 이익배당조항을 변경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주무부처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피관리회사는 바로 그 취지 및 변경요지를 보험계약자에게 알리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정리명령의 일환으로 내려지는 처분 중 하나가 계약이전 명령이다. 일반적인 계약이전은 이전회사와 피이전회사(인수회사) 간에 사적계약으로써 이전계약을 체결하여 이전을 추진하며 공고된 이전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이전대상계약자 수 및 보험금액의 각각 10분의 1 이상의 이익제기가 있을 때에는 부결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정리명령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계약이전은 보험계약의 강제이전을 말한다. 강제이전의 요건은 구 보험업법 제100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보험회사의 업무 및 재산의 상황에 비추어 그 사업의 지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업무의 상황이 현저하게 불량하여 공익상 그 사업의 지속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이다. 강제이전의 협의는 대장대신으로부터 이전대상회사의 지정을 받은 때에는 그 회사, 지정이 없을 때에는 대장대신의 인가를 받은 회사와 협의하여야 하나 강제이전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진행하지 않거나 협의를 했으나 이전회사와 피이전회사 양사의 주주총회 등에서 의결되지 않는 등 협의불발이 되는 경우에는 대장대신은 계약의 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강제이전 결정을 내릴 수 있다.²⁷⁾ 강제이전 결정은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효력을 발생하며 이전회사는 즉시 사업을 정지하고 계약이전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1996년 이전의 구 보험업법 시대에는 도산보험회사에 대하여 강제적인 관리위탁이나 강제계약이전 등을 통하여 신속한 도산처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27) 구 보험업법 제124조(강제이전의 결정): 계약의 이전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않거나 할 수 없을 때 또는 협이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주무대신은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의 이전에 대하여 필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음

나.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의 임의가입 시기

일본 대장성은 1988년 4월부터 1992년 6월에 걸쳐 금융의 자유화·국제화와 대대적인 규제완화에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대장대신의 자문기구인 보험심의회를 가동하여 보험심의회 답신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동 보고서에서 ‘경영위기 시 대응방안’이 검토되었다. 동 답신보고서에서는 당시의 보험업법은 행정당국에 의해 관리, 계약이전을 명령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어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첫째로 현행 보험업법상의 도산처리제도는 부실사 인수를 떠안게 되는 특정회사에 대하여 부담을 강요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계약자보호의 관점에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둘째로는 행정당국의 개입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계약의 강제이전과 같은 제도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에 행정당국의 개입기준의 명확화에 의해 투명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강제이전 등의 제도에 대해서는 지불보증기금과 같은 새로운 경영위기대응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폐지 가능성을 포함하여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안이 제시되었다.²⁸⁾ 사실 도산한 부실보험회사에 대하여 계약의 강제이전, 업무·재산의 강제관리 명령, 계산기초의 강제변경, 계약조항의 변경 명령처분 등의 규정이 있어 도산회사에 대한 정리 및 도산보험회사의 계약자보호를 위한 경영위기대응제도로는 이보다 나은 것이 없을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제도는 도산회사인 피관리회사와 계약인수회사 모두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었고 행정당국의 개입기준도 불명확한 점 등 강제이전의 문제점들이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었고,²⁹⁾ 또한 일본생명 등 생보업계에서는 강제적으로 계약이전을 결정하고 계약인수회사를 지정하는 것은 헌법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³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강제이전 등

28) 大蔵省銀行局保険研究会編(1992), *新しい保険事業の在り方* (保険審議会答申), 東京, 財経詳報社, p. 91

29) 石田満(1992), “会社の管理・保険契約の移転・保険保障基金”, 竹内昭夫編, *保険事業の在り方*(上巻), p. 268; 神谷高保(1993), “国際的な保険事業者の強制管理及び保険契約の包括移転の研究”, *損害保険研究*, 第55巻1号, p. 1; 神谷高保(1994), “保険事業者の強制管理に関する研究”, *損害保険研究*, 第55巻4号, p. 17

30) 財部福一(1997. 6), “なぜ日産生命は倒産したのか”, *生保倒産あなたの生命保険はどうなる?*, 日本実業出版, p. 21(강제이전 조항은 1996년 보험업법 개정 시 삭제됨)

의 제도는 당장에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이는데 답신보고서에서는 강제이전 제도의 폐지 가능성을 지불보증기금제도와 같은 안전망 도입을 조건부로 제시하고 있다.³¹⁾

1996년 보험업법 개정에 의해 도입된 지불보증기금 제도는 법상 ‘보험계약자보호 기금’이라 칭하였는데, 동 기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 기금은 기존의 계약 강제이전 등을 대체하는 셈이므로 그 목적을 보험계약의 이전 등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함으로써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도모하고 나아가 보험업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함으로 하고 있다.³²⁾ 그 주요기능은 인수보험회사가 나타나 계약이전을 할 경우에 채무초과액의 일부를 자금원조하는 것과 부담금의 수납 및 관리 등이다.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의 재원은 보험회사가 부담금을 각출하여 분담하는데 1회의 자금원조에 사용가능한 재원은 최고상한액이 2,000억 엔(생명보험은 2,000억 엔, 손해보험은 300억 엔)이며 복수의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누계로 2,000억 엔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동 기금 자금의 자원부담은 회원회사가 부담하는데 기금에의 가입은 강제 가 아닌 임의가입을 인정하고 있다.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의 두 가지 큰 특징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직접보상 지불이 없이 인수회사에 대한 자금원조 기능만 수행하는 것과 기금에 대한 가입이 임의라는 점이다.

첫째로,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은 왜 예금보험제도와 같이 보험방식을 취하지 않고 계약자에게 직접 보상을 하지 않는 기금방식을 취한 것일까? 일본의 은행예금의 경우에는 보험방식을 따르고 있어 예금보험기구는 도산금융기관의 예금자에게 예금보험 법상 약정된 보험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개별지급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³³⁾ 일본예금보험법상의 목적(제1조)은 첫째 금융기관이 예금 등의 지급을 정지한 경우에 필요한 보험금(예금채권액)을 지급하는 것과, 둘째 도산금융기관의 합병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자금원조를 하는 것에 있다.

그러나 보험권은 예금과 근본적으로 다른 측면이 있어서 보험방식을 적용하지

31) 保險監督法研究會編(1994), 전계서, p. 120

32) 구 보험업법 제261조

33) 일본 예금보험법 제49조 이하

않았다. 즉,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도산회사의 보험계약을 종료시켜 보험계약자에게 기발생 보험금청구권이나 해약환급금 또는 미경과보험료의 지급을 보증하는 것만으로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호가 충분히 달성되지 않는다. 특히, 생명보험계약의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의 지급을 받아 다른 보험회사에 신규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치 않은 경우도 발생한다. 위험증가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재가입이 안 된 채로 가입거절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합병이나 계약이전 등을 가능케 하는 자금원조를 통해서만 보험계약의 지속이라고 하는 계약자보호 목표달성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³⁴⁾ 다시 말해서 보험의 경우에는 은행 등 타 금융기관과 달리 계약자에게 보험계약채권액을 직접 지급하는 기능(Payoff)은 없는 셈이다.

두 번째 특징은 기금의 참가가 강제가 아니라 임의라는 점 즉, 가입의 자주성을 인정한다는 것이다.³⁵⁾ 보험업법상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은 기금에 참가하는 사업자의 명부를 작성하여 대장대신에게 제출하고 이를 공중에 열람하도록 되어 있다.³⁶⁾ 강제적으로 모든 보험사업자가 참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금의 형성과 유지에는 당초부터 실효성 측면에 문제를 안고 출범한 셈이었다. 동 기금의 출범에 앞서 논의된 것 중에서 미묘한 부분 중 하나는 보호기금이 자칫 잘못하면 경쟁을 왜곡시키고 건전한 보험사의 계약자가 불건전한 보험사를 선택한 계약자를 구제해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 것이다. 지불보증기금제도의 본질은 승자가 패자를 구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한 도산이 아니라 불건전한 경영이나 무책임한 약관·보험료로 영업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면 건전한 경영을 한 회사 및 그 계약자가 불건전한 회사와 그 계약자를 책임져 주는 것이어서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게 된다.³⁷⁾ 기금의 도입문제에 제언을 한 보험심의회 답신보고서에서도 계약자보호 안전망에 안이하게 의존하는 경영이

34) 保險監督法研究會編(1994), 전계서, p. 146

35) 전계서, p. 139

36) 구 보험업법 제260조 제3항

37) 전계서, pp. 124-125

되지 않도록 모럴해저드 방지책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³⁸⁾ 그 방지책으로 거론된 것을 보면, 조기경보시스템 강화를 통하여 사전적으로 건전성유지 확보에 주력하나 사후적으로 보험회사의 도산이 명확하게 불건전·불성실한 경영에 의하여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보호기금에 의한 구제·자금원조를 하지 않는 방법도 거론되었고, 다른 방안은 일단 구제원조는 하나 경영자의 책임가중 강화 및 불건전·불성실한 경영을 간과한 행정당국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책임추궁을 용이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두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³⁹⁾ 지불보증기금의 주된 재원을 보험회사의 부담금에 의해 조달하는 것이므로 보험회사가 강제로 기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산회사의 계약자구제나 보험제도의 신뢰성 확보라고 하는 공공성이나 국민경제적 의의는 국가의 책무이지 개별 보험사와 그 보험계약자의 책무는 아니라는 입장이며 보험사들의 사회적 책임 완수는 자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⁴⁰⁾

보험보증기금의 가입에 대한 자주성과 관련하여 독일에서 보험보증기금(Garantiefonds) 제도 도입이 주창되었을 때 Oehmke씨는 보험회사에 대한 가입강제 및 부담금 납입의무와 관련하여 위헌성 문제를 제기하였다.⁴¹⁾ 그 주요 요지를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헌법상의 조세 및 부과금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헌법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조세 및 형평성 원칙은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판례 및 학설상의 기본법 제3조1항(평등원칙)에 거하여 인정되고 있다. 이 원칙은 입법자가 일반적이지 않은 특정의 그룹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일반의 공공적 의무 달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 원칙에 따라 조세의 징수에 의하여 일반 대중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자의적으로 특정의 그룹에게 그 임무에 수반하는 비용을 포함하는 특별부과금의 징수라고 하는 형태로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이 원칙에 따라 특정그룹

38) 大蔵省銀行局保険研究会編(1992), 전계서, p. 91

39) 保険監督法研究会編(1994), 전계서, p. 124

40) 전계서, p. 128

41) Oehmke(1990), "Gläubigerschutz durch Insolvenzversicherungs-fonds in einen deregulierten Versicherungsmarket", p. 156, 재인용; 保険監督法研究会編(1994), 전계서, p.135

에 대한 부과금의 징수는 그것이 이 그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또한 조세에 비하여 특별부과금은 항상 “드문 예외”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요건으로서 특히 중요한 것은 “그룹의 유용성”이라고 하는 측면인데, 유용성에도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것이 있다. 이를 보험보증기금(Garantiefonds)에 대입하여 보면 분담금을 부담하는 가입보험회사에게는 직접적인 유용성이 없는 것이 자명하다. 도산회사의 계약자에게만 직접적인 유용성이 있을 뿐이다. 이에 비하여, 간접적인 유용성은 최종적으로는 보험보증기금이 “신용의 선지불”을 보험계약자측에게 창출하는 점에 있으며 그 결과로서 각 보험회사에 신용이 부여되는 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보험사업부문의 일반적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리스크에 상응하는 보험료 및 약관의 형성에 의하여 스스로 건전성을 확보하고 이에 상응하는 정보공시 노력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회사의 상태를 명확히 밝히는 것은 각 보험회사의 자유이다. 건전한 보험회사는 보험보증기금(Garantiefonds)에 의한 “신용형성”이 전혀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은 자명하다. 실제 활동에서 나타나는 구조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며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그룹의 이익”을 규범화의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또한 보험보증기금에 의해 최종적으로 추구되는 목적도 간접적 유용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일본에서도 여러 논의를 거쳐 보험회사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임의가입제도로 도입된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이지만, 동 기금이 창설되어 향후의 도산처리 시에는 나름대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었다. 보험업법이 개정되고 난 이듬해인 1997년 4월에 日産生命의 도산이 발생하였다. 日産生命의 도산처리는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과거 보험업법에 존재했던 계약의 강제이전 등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는 없고 이번에는 자율적으로 계약을 인수할 회사가 나타나기를 기다릴 수 밖에 없었다.⁴²⁾ 당시에 감독기관인 대장성은 비공식적으로 대형보험사에게 금번에 도산한 회사를 인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하면 대형사 중 한 곳이 나타나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높은 예정이율의 상품으로 역마진이 심각하였으므로 대형사 어느

42) 財部隔一(1997. 6), 전계서, p. 22

곳도 계약인수를 할 생각이 없고 오히려 관계되지 않으려 피하고 있었다. 당시 예상되고 있었던 대안은 日産生命의 기계약의 보험료를 인상하고 지급보험금을 삭감한 후 대형생보사들이 계약을 분할하여 인수하는 방안이나, 또는 관계회사인 日産자동차와 日立그룹을 중심으로 자금지원을 받아 “新日産生命”으로 재건시키는 방안 등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도산처리 방안으로 예상되었다.⁴³⁾

개정된 보험업법에 따라 발족한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은 그 역할이 계약이전이나 흡수합병할 회사가 나타나는 경우에 자금원조를 하는 기능이 부여되어 있었는데, 어떠한 회사도 인수자로 나서지 않아 결국엔 인수할 보험회사를 생명보험협회 주도로 신규설립하여 도산처리를 할 수 밖에 없었다. 1996년 이전에 강제계약이전이 가능했던 시대와는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결국엔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의 역할도 계약인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한계를 반영하여 1998년 보험업법 개정에 의해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을 ‘보험계약자보호기구’로 재편하게 되었다.

다. 복합적 기능을 갖춘 보험계약자보호기구 시기

1996년 이전의 계약의 강제이전 제도도 없어졌고 보험계약자보호기금 제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계약인수 보험회사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의 맹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이를 보완·개선한 것이 보험계약자보호기구 제도이다.

일본의 전통적인 도산처리방식은 포괄계약이전 방식이었다. 이후 1996년에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을 창설하여 운영했지만 법 개정에 의한 규정삭제로 강제이전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약인수회사가 나타나지 않아 제도의 허점을 드러냈다.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의 자금이 있다 하더라도 계약인수회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인수회사에 대한 자금원조를 할 방법이 없다. 결국엔 인수회사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나 연쇄적으로 다수의 보험회사의 도산이 발생하거나 복잡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를

43) 전계서, p. 22(당시 일본생명 20.2%, 제일생명 13.7%, 주우생명 11.8%, 명치생명 8.7% 등으로 인수할 부담비율이 거론되고 있었음)

감안하면 예금보험의 체제를 일찍이 확립해 복합적 기능을 갖춘 예금보험법을 본받아 개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의 예금보험제도는 1971년에 예금보험법이 제정되고 정부출자법인인 예금보험기구에 의해 체계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예금보험제도는 기본적으로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직접 예금자에게 예금의 환불지급(Payoff)을 기본으로 하면서 영업양도, 승계은행, 부실자산 분리, 베일인(Bail-in) 등의 방식을 기본으로 하여 도산처리를 하고 있다. 보험계약자보호기금과 이를 대체하여 새롭게 창설된 보험계약자보호기구와 은행 등에 적용되는 예금보험기구의 도산처리의 업무와 방법 등을 비교해 보면 <표 II-3>과 같다.

<표 II-3> 보험과 은행의 계약자보호기구

| 구분 | 보험계약자보호기금 | 보험계약자보호기구 | 예금보험기구 |
|----------|------------------------|---|---|
| 설립 | 1996년 | 1998년 | 1971년 |
| 성격 | 보증기금 | 보증기금 | 보험제도 |
| 가입 의무 | 임의 가입 | 법상 가입의무 | 법상 가입의무 |
| 도산 처리 도구 | - 계약이전 | - 계약이전 - 인수·합병, 영업양도 - 승계보험회사 | - 보험금직접지불 (Payoff) : 부모예금 이전방식 - 영업양도(Purchase & Assumption: P&A) - 승계은행 (Bridge bank) - 부실자산분리 (Bad bank) - 베일 인(Bail-in) |
| 주요 임무 | - 자금원조 - 부담금의 수납·관리 | - 자금원조 - 승계보험회사 계약인수 - 관리위탁 등 - 부담금의 수납·관리 | - 자금원조 - 승계은행 계약인수 - 관리위탁 등 - 자금의 대부 - 예금 등 채권 매입 - 보험료의 수납·관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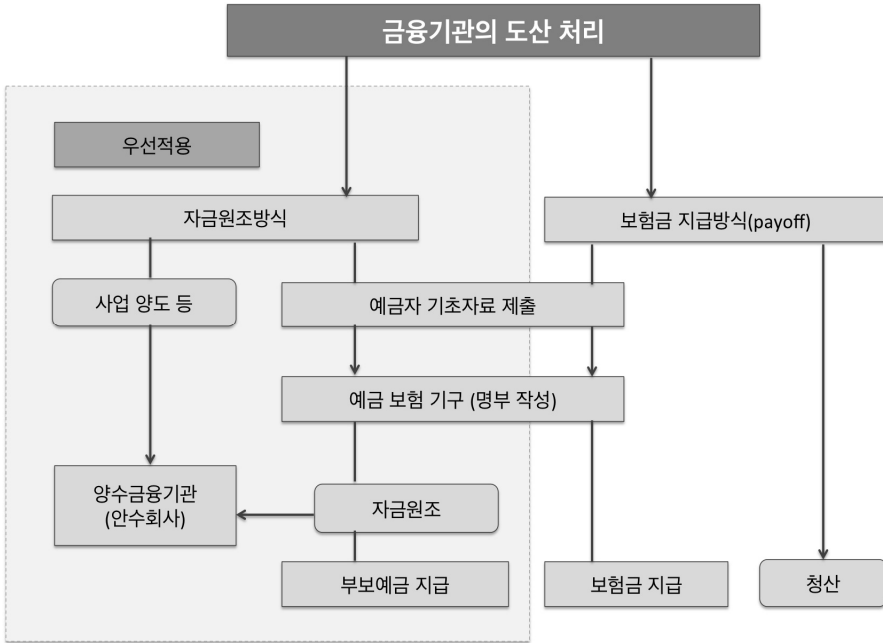
신생의 보험계약자보호기구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험의 특성 때문에 계약자에게 직접 보험금지급(Payoff)을 하지 않지만, 도산보험회사의 처리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제도로 설계되어 있어 기능적으로는 거의 예금보험기구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도산회사의 계약을 이전받을 회사(구제회사)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일종의 가교보험회사(은행의 Bridge bank에 해당)인 승계보험회사를 설립하여 계약을 인수하거나 또는 계약자보호기구가 직접 인수할 수 있도록 체제가 정비되었다.

일본의 은행 등 금융기관의 경우 <그림 II-2>의 도산처리 방법 중 대부분은 계약이전을 수반하는 영업양도(P&A, Purchase and Assumption: 일명, 자산·부채승계)이며, 실제 예금채권자에게 예금보험법상의 보장액을 지급(Payoff)한 사례는 2010년에 도산한 일본진흥은행이 유일하며 도산금융기관에 대해 완전한 청산을 전제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실행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은행 등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이를 파산시키지 아니하고 최대한 예금자를 보호하며 그 금융기관을 다른 인수금융기관에 사업양도나 계약이전을 시키거나 합병 등 M&A를 통하여 도산회사를 구제하고 있는 것이다.⁴⁴⁾

예금보험기구와 마찬가지로 보험계약자보호기구 또한 핵심기능은 계약이전 시의 자금원조와 가교회사 역할의 승계 기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보험계약자보호기구의 두 가지 핵심기능에 대해서 상술하고자 한다.

44) 미국 FDIC가 공표한 2009년에 도산한 140개의 은행을 보면, P&A가 130건으로 92.8%, Payoff가 10건으로 7.2%를 차지할 정도로 은행의 경우에도 대부분은 계약이전이나 P&A에 의한 인수가 대부분임(比護正史(2011), p. 113)

〈그림 II -2〉 예금보험법상 금융기관의 도산처리 개념도



자료: 금융청 · 예금보험기구, 예금보험제도(<http://www.fsa.go.jp/policy/Payoff/01.pdf>)

첫 번째 핵심기능은 보험계약의 이전 등의 경우 자금원조 기능이다. 이는 이전의 보험계약자보호기금에서도 존재했던 핵심기능이다. 계약자보호기구는 보상대상계약의 책임준비금 등을 일정률까지 보상하기 위해 인수보험회사 등에 의한 도산보험회사의 계약이전 시 자금원조를 하는데, 여기서 ‘보험계약의 이전 등’에는 계약이전 이외에 합병, 인수보험회사에 의한 주식취득(자회사화)도 포함되어 있다.⁴⁵⁾ 자금원조는 금전증여, 자산 매입, 손해담보⁴⁶⁾ 등의 방법으로 하며, 자금원조(금전증여)의 금액은 〈그림 II -3〉과 같이 ①도산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에 보상을 곱한 금액에서 ②계약자보호기구가 확인한 도산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등에 상응하는 자산(영업권 포함)의 금액을 공제하고, ③보험계약의 이전 등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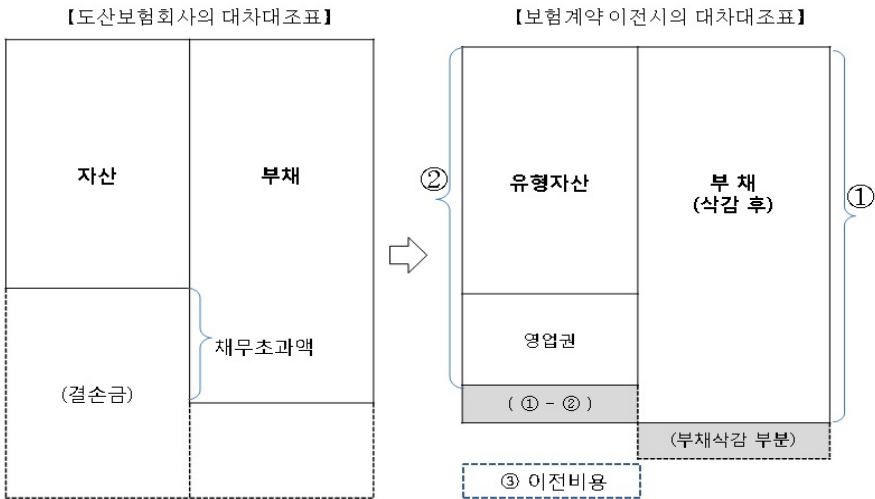
45) 보험업법 제266조 및 제260조 1항 및 4항

46) 손해담보란, 계약이전, 합병, 승계, 주식취득 등에 따라 취득한 도산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미리 약정된 계약에 의하여 당해손실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것을 말함(보험업법 제260조 제5항)

계약자보호기구가 인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다.⁴⁷⁾

도산보험회사가 계약자보호기구에 대한 자금원조 요청 및 결정과정은 다음과 같다.⁴⁸⁾ 계약자보호기구에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도산보험회사 및 인수보험사 등은 보험계약의 이전 등에 대해서 감독기관인 내각총리대신으로부터 적격성 인정을 받아 계약자보호기구에 연명으로 신청한다. 도산보험회사는 자금원조의 신청 시 회사 자체적으로 실시한 재산평가가 적절하다는 확인을 계약자보호기구에 요청한다. 신청을 받은 계약자보호기구는 필요에 따라 도산보험회사의 재산을 조사한 후에 조사심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산자기평가가 적절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재산자기평가의 확인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금원조의 집행여부를 결정한다.

〈그림 II-3〉 자금원조액 개념도



※ 계약자보호기구의 자금원조액 = ①이전시 부채 - ②이전시 자산 + ③이전소요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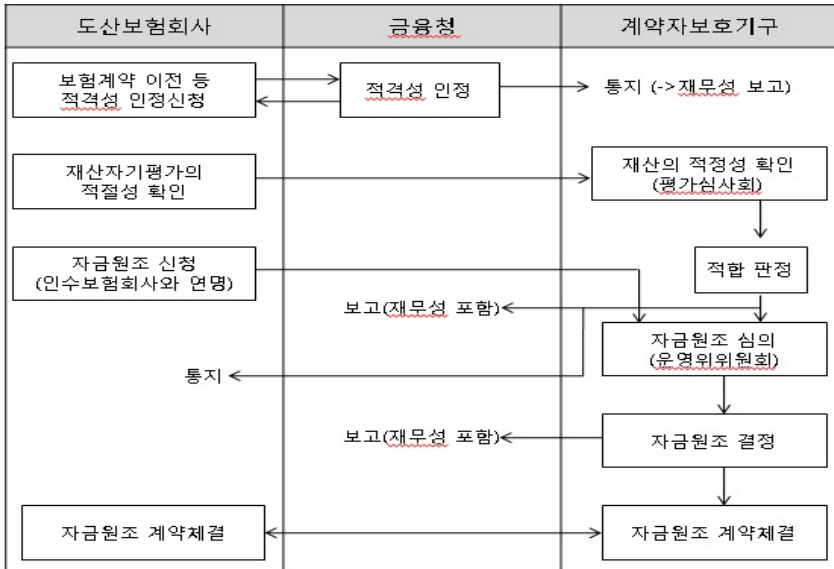
자료: 杉下智子(2010), p. 184

47) 보험업법 제270조의3 제2항

48) 보험업법 제266조~270조의3

두 번째 핵심기능은 계약자보호기구의 승계기능이다.⁴⁹⁾ 인수보험회사 등이 나타날 전망이 없는 등의 이유로 보험계약의 이전이 곤란할 경우 도산보험회사로부터 신청을 받아 계약자보호기구 자신이 보험계약의 이전을 받거나 또는 계약자보호기구가 자회사(승계보험회사)를 설립하여 그 승계보험회사에 보험계약을 인수시키게 된다. 승계보험회사란 보험계약의 이전 또는 합병에 의해 보험계약을 인수하여 그 관리처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로 계약자보호기구가 의결권의 50% 이상을 갖는 자회사를 말한다. 승계보험회사제도는 日産生命의 도산 시에 생명보험협회가 자회사로서 설립한 “아오바생명”의 사례를 모방하여 제도화한 것⁵⁰⁾인데, 정의규정을 비롯해 설립, 승계방법, 경영관리, 승계협정의 체결 등의 규정이나 기본적 골격은 예금보험제도의 승계은행제도와 동일한 부분이 많다.

(그림 II-4) 자금원조 신청 및 결정 프로세스



자료: 杉下智子(2010), p. 185

49) 보험업법 제260조 제6항 및 7항

50) 山名規雄(2000), “保險業法及び金融機関等の特例等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概要”, 金融法務事情 第1583号, p. 28

승계보험회사제도나 승계은행제도 모두 도산처리 시 인수회사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이용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는데, 승계보험회사가 최종적으로 인수회사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의 구제수단인 점에 비하여 승계은행은 인수자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인수자를 찾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되고 있어 도산금융기관의 인수자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도산처리 과정에서의 역할은 다소 다른 측면이 있다.⁵¹⁾ 승계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추진방법 등은 이 장의 다음 절에서 상세히 서술하기로 한다.

지금까지 보험계약자보호기구의 양대 핵심기능인 자금원조 기능과 승계 기능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새롭게 출범한 보험계약자보호기구도 종전의 보험계약자보호기금과 마찬가지로 계약자에 대한 직접보상(Payoff) 기능은 수행하지 않고 있어 예금보험제도 수준의 완벽한 안전망 수준은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보호기구가 시스템적으로는 체계적인 안전망 수준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도산회사에 대한 자금원조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재원조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동 보호기구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00년 전후에 걸친 생명보험회사의 대규모 연쇄도산이 일어남에 따라 계약자보호기구도 기능수행에 필요한 자금의 한계를 드러내 결국에는 동 기구의 활용이 줄어들고 법원주도의 회사갱생 방식으로 이행하게 되어 계약자보호기구 본래의 역할이 크게 위축되었다. 계약자보호기구의 한계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3. 보험회사의 행정절차 방식 도산처리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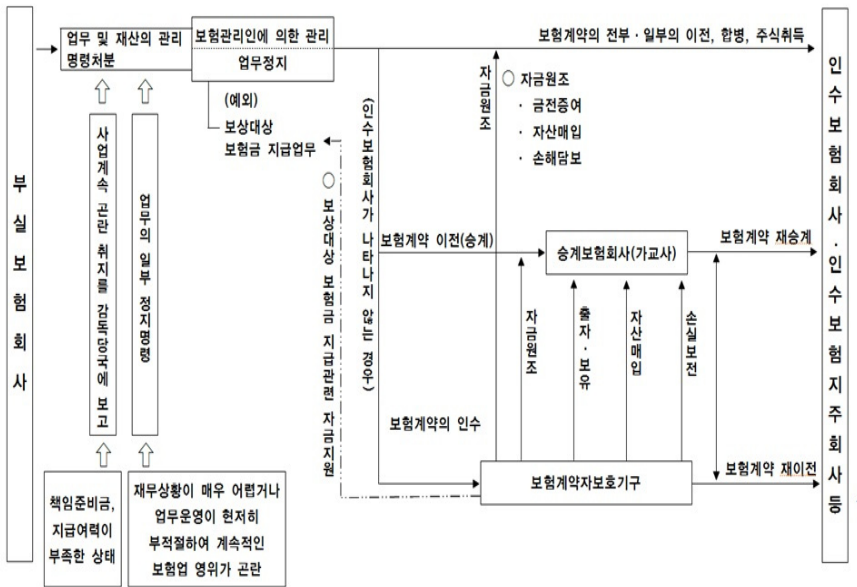
〈그림 II-5〉는 보험업법에 의거한 경영파탄보험회사의 도산처리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경영파탄이 된 보험회사에 대한 도산처리 업무는 크게 두 단계의 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51) 杉下智子(2010), “生命保険会社の更生手続きと保護機構による契約者保護”, *生命保険論集*, 第171号, p. 186

즉, 도산회사 처리를 위한 실행 전 준비단계와 실행단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준비단계에서는 「보험회사의 지속적인 사업영위 수행불가 보고 → 보험관리인에 의한 일상관리 및 관리계획 작성 → 관리계획의 승인신청」을 하고, 실행단계에서 「계약조건의 변경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계약이전/합병/주식취득/승계보험회사로의 승계/계약자보호기구에 의한 계약인수」 등의 프로세스를 거쳐 도산처리를 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도산처리의 전반부분인 준비단계와 계약변경을 수반하여 계약이전 등을 하는 실행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그림 II-5〉 보험업법상 도산보험회사의 도산처리 절차



자료: 금융청 홈페이지(http://www.fsa.go.jp/ordinary/hoken_hogo/04.pdf)

가. 보험회사 도산처리의 준비단계

1) 파탄보험회사의 확정

보험회사 도산처리의 준비를 위해서는 먼저, 감독당국은 어떤 회사가 파탄보험회사인지를 확정하고 그 다음으로 업무 및 재산의 관리명령처분을 내리고 보험관리인을 선임한 후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감독당국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부실보험회사는 두 가지 경로에 의해 파탄보험회사로 낙인된다. 첫째, 내각총리대신이 보험회사의 업무·재산상황에 비추어 보험사업의 지속적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보험사업의 운영이 매우 부적절하여 사업의 지속적 영위 시 보험계약자보호에 결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 계약이전·합병·제3자주식취득의 협의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보험관리인에 의한 관리를 명령할 수 있다.⁵²⁾ 둘째 경로는, 보험회사 스스로 판단할 때 보험사업의 업무·재산상황에 비추어 사업의 지속적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때는 내각총리대신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⁵³⁾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이 0% 이상 ~ 100% 미만(제2구분)인 제2구분 상태가 되면 보험금 지급능력 충실화를 위한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실행하여야 하며, 지급여력비율이 0% 미만(제3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내각총리대신은 기한부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2구분에 대한 조치명령은 지급여력충실화 비율이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100% 이상 수준을 달성하도록 하는 조치이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개선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1년을 목표로 하지만 보험계약자, 투자자, 시장의 신뢰 유지·회복을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하고 있다.⁵⁴⁾ 이와 같이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실행을 지켜본 연후에 지급여력비율이 0% 미만이 되거나 개선의 여지가 없을 때 업무 정지명령을 발동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부

52) 보험업법 제241조 제1항

53) 보험업법 제241조 제4항(이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는 100만 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동법 제333조 1항 60호))

54) 보험회사종합감독지침 II-2-2(2)④

실보험회사를 파탄보험회사로 지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감독당국이 조기사정조치명령을 내린다 하여도 보험사의 건전성 판단기준⁵⁵⁾인 지급여력 비율의 개선 및 실행과정을 지켜보는 등 상당한 시일을 기다려야 하고 그 동안에 언론이나 전파매체상의 루머 등을 통하여 회사의 재무상황이 잘못 전달될 경우에는 해약쇄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실제로 90년대 후반 이후 日産生命 등에서 이같은 과정을 거쳐 해약쇄도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보험사업의 지속적 사업수행이 어렵다는 판단을 보험회사가 스스로 하여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보험회사 내부에서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보험계리인이다. 보험계리인은 매 결산기에 장래의 수지를 보험수리에 의거하여 합리적으로 예측한 결과에 비추어 보험사업의 지속적 수행이 곤란한지를 파악한 후 이를 이사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⁵⁶⁾ 따라서, 스스로 사업수행 중단 의사를 결정하여 보고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이유서, 최종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외에 보험계리인이 이사회에 보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파탄보험회사를 내각총리대신의 직권에 의하여 지정하는 방법과 보험회사 스스로 사업지속의 곤란을 보고하는 등 두 가지 방법에 의하여 도산처리를 할 파탄보험회사가 확정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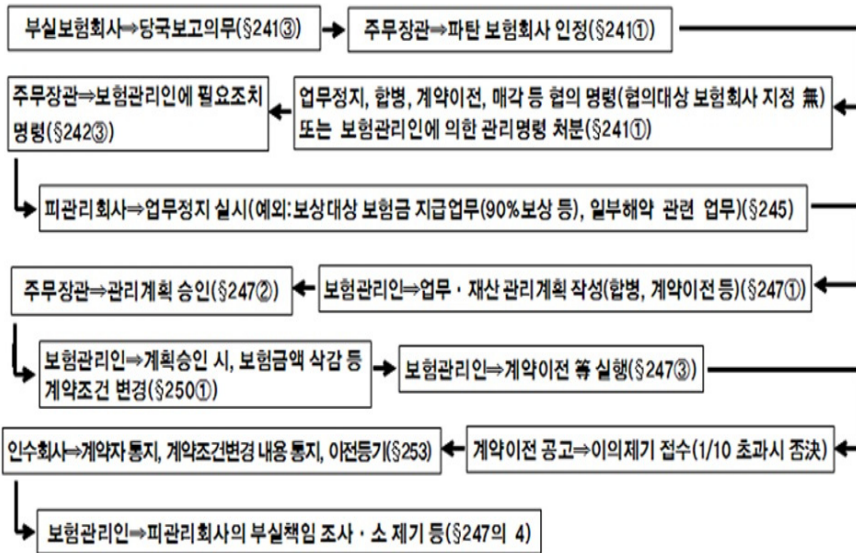
2) 보험관리인에 의한 관리 및 관리계획 작성

보험업법에 의거하여 행정절차가 진행된 4개 보험회사들은 보험관리인이 선임되고 보험관리인에 의한 관리계획하에 도산처리되었다. 이 장의 전반부에서 설명하였지만 주무장관에 의한 강제이전 명령은 1996년에 폐지되었다. 그 후부터 보험관리인에 의한 관리와 관리계획에 대한 주무장관의 승인 및 실행 등 관리를 통한 도산처리의 준비단계 부분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보험관리인을 통한 관리의 절차와 방법은 <그림 II-6>과 같다.

55) 보험업법 제130조

56) 보험업법 제1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9조의2(보험계리인의 직무 및 확인사항)

〈그림 II-6〉 보험관리인의 관리계획에 의거한 계약이전 절차



먼저, 파탄보험회사로 확정이 되면 내각총리대신은 파탄보험회사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를 명하는 관리처분을 하는데, 이 때 관리처분과 동시에 보험관리인을 선임한다. 보험관리인은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받아 1인 또는 복수의 보험관리인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도산처리에 깊이 관여하는 보험계약자보호기구도 보험관리인 또는 보험관리인대리가 되어 관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내각총리대신은 관리명령처분을 한 때에는 파탄보험회사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 통지하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한다. 이는 피관리회사가 파산이 신청되었을 때 법원이 감독당국과 협조하여 대응하기를 기대하는 취지이다.⁵⁷⁾

관리명령 처분을 받으면 피관리회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업무를 정지하여야 한다.⁵⁸⁾ 다만, 그 업무 중에 피관리회사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나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 관점에서 지속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보험관리인의 신청에 의해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얻어 그 업무의 일부를 계속 영위할 수 있다. 다음의 두 가지 업무는 업무

57) 安居孝啓(2006), 전게서, p. 598

58) 이에 위반 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보험업법 제316조 7호)

정지의 대상 외로 되어 있다.⁵⁹⁾ 즉, 첫째, 피관리회사가 보험계약자보호기구와 보상대상보험금의 지급에 관계된 자금원조계약⁶⁰⁾을 체결한 경우 보상대상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보상대상보험금지급업무’라 한다), 둘째, 보상대상계약 중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해 그 존속을 도모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보험계약(‘특정보상대상계약’)에 대해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행하는 해약관련 업무(해약환급금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급부금의 지급에 관련된 것은 제외)(‘특정보상대상계약 해약관련 업무’)가 업무정지의 대상 외에 해당한다.

이하에서 두 가지 ‘업무정지의 대상 외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보상대상보험금지급업무이다. 피관리회사의 업무가 정지된 경우 현실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할 권리자(유가족)에 대한 지급을 정지하면 당해 권리자의 생활유지가 곤란한 상황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보상대상보험금 지급업무를 업무의 정지대상 외로 하는 것은 이러한 사태의 발생에 대해 배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보상대상보험금지급업무에 의해 지급되는 것은 <표 II-2>의 보상대상계약의 보험금청구권 등에 의거하여 지급될 보험금에 일정 보상률⁶¹⁾을 곱한 금액 즉, 이것이 ‘보상대상보험금’이다.⁶²⁾ 이 장의 전반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상대상계약은 보험계약자보호기구 제도에 의하여 보호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인데 보상대상계약이 아닌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보호기구에 의해 보상되지 않으므로 결국엔 파탄보험회사의 청산 시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처리될 수밖에 없다.

보상대상보험금지급업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보험금청구권, 손해보상 청구 권리, 만기환급금 청구 권리 등에 한정되어 있다.⁶³⁾ 보상대상보

59) 보험업법 제245조

60) 보험업법 제270조의3 제4항 및 제270조의6의7 제3항(파탄보험회사가 보험금수령인에게 보상대상보험금을 지급하고 이 지급에 대하여 계약자보호기구가 자금원조하는 제도를 말하며 계약자보호기구가 자금원조를 결정할 때에 파탄보험회사와 자금원조계약을 체결한 후 집행됨)

61) 이 보상률은 보험계약자보호기구가 자금원조로서 지원하는 금전증여액의 계산 시 사용하는 보상률과 동일함(보험계약자보호특별조치명령 1조의6)

62) 보험업법 제245조 1호, 보험업법 제270조의3 제2항 1호 및 보험계약자보호특별조치명령 제50조의3

63) 보험업법시행령 제36조의4

험금지급업무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지급을 하는 소위 ‘보험의 보장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중도해약에 의한 해약환급금청구권 등은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피관리회사의 업무가 정지된 것은 피관리회사가 채무초과상태이고 또한 보험계약의 계약조건 변경 등에 의한 부채의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피관리회사의 업무가 정지되면 원칙적으로 해약접수나 해약환급금의 지급과 같은 보험계약의 해약 관련 업무도 정지된다. 이는 보험회사가 경영파탄을 초래한 경우에도 보험집단을 유지하면서 보험계약을 유지시키는 것이 보험계약자보호상 필요하다는 개념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장기간에 걸친 장기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연령증가에 따라 위험이 상승하는 생명보험 등을 주로 염두에 둔 것인데 이러한 위험의 상승이 없고 타사로의 계약승환 비용이 낮은 손해보험에 대해서는 반드시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조기에 타사로 승환시켜 다른 보험회사 아래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이다.⁶⁴⁾ 이 때문에 2005년 개정보험업법에서는 보상대상계약 중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해 계약을 유지시킬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특정보상대상계약에 대해서는 피관리회사의 업무가 정지되는 경우에도 그 해약에 관련된 업무는 계속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⁶⁵⁾ 특정보상대상계약에는 위와 같은 취지를 감안하여 주로 손해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다음의 네 가지 보험계약이 이에 해당한다.⁶⁶⁾

첫째, 상해보험계약 중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의 것으로 계약체결 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해야 할 중요사실에 피보험자의 현재 및 과거의 기왕증이 포함되지 않는 것(‘단기상해보험계약이라 한다), 둘째, 제3분야보험계약으로 적립보험⁶⁷⁾을 포함하는 계약(연금지급식적립상해보험계약, 재형상해보험계약, 확정각출연금상해보험계약은 제외한다)의 적립부분, 셋째, 해외여행기간 중의 사고를 보상하는 제3분야보험계약 중 계약체결 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해야 할 중요사실

64) 安居孝啓(2006), 전게서, p. 601

65) 보험업법 제245조 2호

66) 보험계약자보호특별조치명령 제1조의6의3 제1항

67) 제3분야보험계약에서 ‘적립보험’은 우리나라의 저축성장기보험에 해당함

에 피보험자의 현재 및 과거의 기왕증이 포함되지 않는 것(‘특정해외여행상해보험계약이라 한다), 넷째, 지진보험계약 등 네 가지 보험계약이 특정보상대상계약에 해당한다. 특정보상대상계약에 대해서는 타보험사로의 조기승환을 재촉한다는 취지를 감안하여 특정보상대상계약 해약 관련 업무는 관리명령 처분을 받아 업무정지가 된 때로부터 3개월간으로 한정하고 있다.⁶⁸⁾ 다만, 특정보상대상계약 해약관련 업무에는 해약환급금 등 기타 이에 준하는 급부금의 지급을 하는 업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중도해약에 따른 해약환급금의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의 지급 지연으로 인한 보험계약자의 생활상의 곤란에 직결될 우려가 크지 않고, 오히려 신속히 피관리회사를 처리한 후 업무정지 해제 후에 적절한 보상률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⁶⁹⁾

다음으로, 보험관리인의 업무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내각총리대신의 선임을 받은 보험관리인은 피관리회사의 업무 및 재산의 상황을 조사하여 업무 및 재산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작성한다. 이 계획에 따라 피관리회사의 보험계약의 이전이나 합병 등 기타 필요한 조치가 실행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실행한다.

우선, 보험관리인은 취임 후 바로 피관리회사가 관리처분을 받게 된 경우, 피관리회사의 업무 및 재산의 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조사하여 내각총리대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후 내각총리대신은 보험계약자보호를 위해 피관리회사의 보험계약의 유지·존속을 도모하거나 특정보상대상계약의 해약에 관한 업무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①보험관리인에게 피관리회사 업무의 정리 및 합리화에 관한 방침, ②피관리회사의 합병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방책 등을 포함한 ‘업무 및 재산의 관리계획’ 작성을 명할 수 있다. 보험관리인은 피관리회사, 채권자, 구제보험회사 후보자, 보험계약자보호기구와 교섭·조정을 해 나가면서 계획을 작성하게 되는데 계획이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얻으면 지체없이 이를 실행하여야 한다. 또한 계획의 변경이나 폐지가 필요한 때에는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얻어 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고 또한 내각총리대신은 계약자보호를 위해 필요

68) 보험계약자보호특별조치명령 제1조의6의2 제1항

69) 安居孝啓(2006), 전계서, p. 603

한 때에는 계획의 변경이나 폐지를 명령할 수 있다.

자본금 감소나 계약이전, 합병 등 제반 조치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데 보험관리인에 의한 업무·재산의 관리하에 있을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시에 가결의(假決議)의 특례제도가 설정되어 있다. 원래는 회사법상에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을 갖는 주주의 출석으로 출석주주의 2/3 이상의 의결권으로 처리하는데⁷⁰⁾ 보험관리인 특례에서는 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다수로써 당해 의결을 가결 의할 수 있다.⁷¹⁾

한편, 피관리회사가 자기의 재산으로써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채무초과의 상태인 경우에는 당해 피관리회사는 주주총회 등의 특별결의에 대신하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①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②보험계약의 이전, ③해산, ④자본금액의 감소를 할 수 있다.⁷²⁾ 피관리회사가 채무초과이면 그 주주권(상호회사는 사원권)은 원칙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잃어버린 셈이므로 법원의 허가에 의해 공정성을 확보하여 주주총회 결의를 생략하는 것도 신속한 절차의 진행 필요성과의 비교형량면에서 허용된다는 입장에 의한 것이다.⁷³⁾

보험관리인에 의한 관리계획의 작성 및 이에 대한 감독당국의 승인이 나면 준비상태는 갖추어졌고 이제 계약이전이나 합병 등 도산처리의 실행단계로 이행하게 되는 것이다.

70) 회사법 제309조 2항

71) 보험업법 제249조 1항

72) 보험업법 제249조의2 제1항 및 2항

73) 경쟁특례법 제166조 제2항에서는 경쟁회사가 경쟁절차개시 시 그 재산으로써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에는 당해 주주는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보험회사의 도산처리 실행단계⁷⁴⁾

1) 인수보험회사에 대한 계약이전 및 계약조건 변경

보험회사가 경영파탄을 초래하여 내각총리대신의 관여하에 다른 보험회사에 보험계약의 이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계약의 포괄이전⁷⁵⁾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경영파탄으로 도산한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의 삭감 및 기타 계약조항의 변경을 할 수 있는데 이는 다음의 세 가지 경우에 한정된다.⁷⁶⁾

첫째, 경영위기에 처한 보험회사가 내각총리대신에게 보험계약의 전부이전의 협의를 명령⁷⁷⁾받아 보험계약의 전부이전을 하는 때에 계약조항의 변경을 할 수 있다. 둘째, 피관리회사(도산회사)가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받은 보험관리인의 관리계획⁷⁸⁾에 따라 보험계약의 전부를 이전하는 때에 계약조항의 변경을 할 수 있다. 셋째, 내각총리대신으로부터 적격성 인정을 받은 도산보험회사가 인수보험회사에게 보험계약의 전부이전을 하는 때에 계약조항의 변경을 할 수 있다.⁷⁹⁾ 위 세 가지 경우 모두 도산회사를 구제해 줄 인수회사(구제회사)가 나타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며 인수회사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나 합병 또는 제3자 주식취득(M&A)되는 경우는 뒤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여기서 보험계약의 전부를 포괄하여 이전하여야 한다는 포괄이전 요건은 책임준비금의 산출 기초가 동일한 보험계약의 전부를 포괄하여 이전하여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는 보험계약집단을 유지하면서 보험계약자 간의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⁸⁰⁾ 계약의 포괄이전은 일반기업의 영업양도에 상당하는 것인데 영업양도가 제3자

74) 전체적으로 도산처리 실행단계에 대해서는 安居孝啓(2006), pp. 430~684를 참조

75) 보험업법 제135조 제1항

76) 보험업법 제250조 제1항

77) 보험업법 제241조 제1항

78) 보험업법 제247조 제1항

79) 보험업법 제268조 제1항

80) 安居孝啓(2006), 전계서, p. 431

와의 관계에서 양도인에게도 일정한 제척기간 내 채무변제 책임을 부담시키고 더욱이 개개의 재산에 대하여 이전행위를 요하는데 반해서 보험계약의 포괄이전은 제3자와의 관계에서 권리의무의 승계가 명확하며 더욱이 보험계약은 일괄하여 이전되는 점에서 계약의 다수성이라는 특색을 갖는 보험사업에 적절한 제도라 할 수 있다.⁸¹⁾ 또한 포괄이전은 영업양도의 특별규정같은 성격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⁸²⁾

또한, 포괄이전계약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에 관련된 채권이 이미 확정채권이 된 것(이하, '특정계약'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이전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조건 변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첫째 보험사고가 발생해 있어서 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멸하게 되는 보험계약과, 둘째로 보험기간이 종료되어 있는 보험계약이 이에 해당된다.⁸³⁾ 두 번째의 보험계약에는 보험기간 중에 중도해약을 하여 보험계약의 종료사유가 발생해 있는 것도 포함되는데, 원칙적으로 중도해약에 기인한 해약환급금 등의 권리는 다른 보험회사로 계약이전을 하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보험회사 등에 의해 파탄 전의 계약조건 변경절차에서 내각총리대신의 명령⁸⁴⁾에 의해 해약환급금의 지급이 정지되어 있는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여 두 번째 사유에 포함되지 않고 계약이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당해 명령 후의 중도해약에 기인한 해약환급금 등의 권리가 계약조건 변경을 수반하는 계약이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보험계약자가 당해 계약조건 변경에 의한 불이익을 우려해서 당해 명령 후에도 중도해약으로 쇄도해서 보험집단의 유지가 어렵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보험계약자 전체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이전회사인 도산회사에는 그에 상당하는 많은 재산을 남겨야 하고 해약환급금 지급업무에 비용과 노력을 들일 필요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상기의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보험기간의 종료를 판정하는 기준시점은 당해 보험회사

81) 保険業法研究会(1986), 전게서, p. 133

82) 전게서, p. 134(사적독점금지법 제16조 1호, 제15조 2항)

83) 보험업법 제250조 1~3항

84) 보험업법 제240조의3(내각총리대신이 보험회사가 신청한 계약조건 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해약업무의 정지 등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음)

에 대해서 보험계약의 이전에 관한 주주총회 개최안내 공고를 하여 보험회사의 업무정지가 이루어진 시점이다.⁸⁵⁾ 다만, 당해 보험회사가 공고 이전에 이미 지급업무를 정지하여 보험계약 관련 지급이 정지되어 있을 때에는 그 보험계약에 관계된 지급이 정지된 시점이 기준시점이 된다. 여기서 보험업법상 ‘업무의 정지’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① 내각총리대신에 의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받았을 때(보험업법제241조1항)
- ② 관리명령 처분에 의하여 업무를 정지한 경우(동법 제245조)
- ③ 내각총리대신에 의하여 합병 등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취할 것을 명령받아 업무를 정지하는 경우(동법 제258조2항)
- ④ 계약조건의 변경을 포함하는 보험계약의 이전에 관한 주주총회 등의 개최 공고에 따라 업무의 전부를 정지하는 경우(동법 제250조5항)
- ⑤ 계약조건의 변경을 포함하는 합병계약의 승인에 관한 주주총회 등의 개최 공고에 따라 업무의 전부를 정지하는 경우(동법 제254조4항)
- ⑥ 변경회사에 의한 계약조건변경계획의 공고(법255조의4 제1항)에 수반하여 업무의 전부를 정지하는 경우(동법 제255조의2 제3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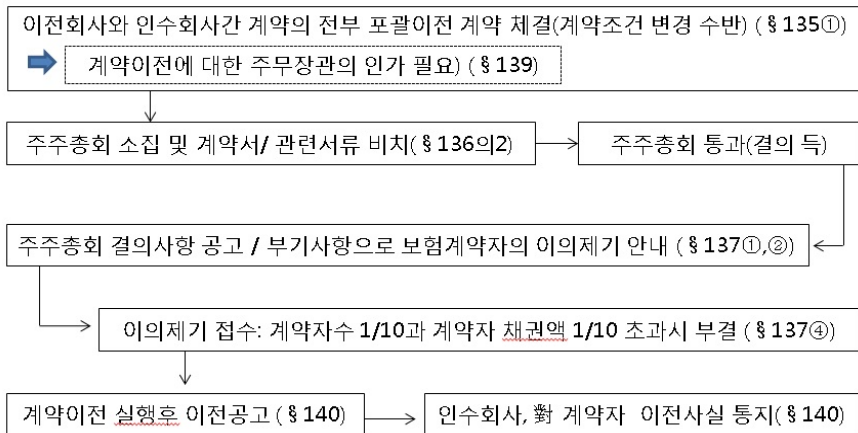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계약조건의 변경을 수반하여 포괄 계약이전하는 사안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위하여 주주총회일 2주 전부터 이전계약서를 비롯한 제반 서류를 보험회사의 각 영업소 및 사무소에 비치하여 열람 및 교부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의 결의를 득한 후에는 이전계약서 및 이전회사·인수회사의 대차대조표를 첨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계약자에 대한 공고는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하며, 공고에 다음 사항과 함께 계약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부기하여야 한다. 즉 첫째, 특정보상대상계약의 해약관련 업무가 시행되는 기간 및 당해기간의 만료상태 여부 표시, 둘째로 계약조건의 변경에 의해 발생하는 보험계약자의 권리의

85) 주주총회 안내 공고 시에 보험회사의 업무의 전부가 정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때부터 업무의 전부를 정지하여야 함(보험업법 제250조5항). 이는 공고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의 해약이 섣도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임

무 변경의 주요한 내용,⁸⁶⁾ 셋째로 계약조건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이유 등 이 세 가지 사항이 부기되어야 한다.

보험계약자의 이의제기를 통한 이전절차 부결 요건은 이전대상계약자 총수의 1/10을 초과하는 자의 이의제기와, 동시에 이전대상계약자의 보험계약 관련 채권총액의 1/10을 초과하는 때로 하고 있다. 원래 계약조건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계약의 이전은 위의 이의제기가 각각 1/5로 되어 있으나,⁸⁷⁾ 계약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계약이전에 대해서는 이전대상계약자의 부담을 강요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계약자의 의사로 계약이전을 저지하기 용이하도록 그 요건을 낮추어 계약자의 의사를 보다 존중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다.⁸⁸⁾

〈그림 II-7〉 계약조건 변경을 수반하는 임의이전 절차



일단 계약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이전의 부결요건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이전은 이전대상계약자 전원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간주되며,⁸⁹⁾ 이전에 따른 채권·채무

86) 이에는 ① 高예정이율계약에 적용되는 보상률 사항, ② 책임준비금, 예정이율 등 기타 계약조건의 변경과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보험금, 환급금 등 기타 급부금에 관한 권리의 변경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계약자보호명령 1조의10 제2호)

87) 보험업법 제137조 4항

88) 安居孝啓(2006), 전게서, p. 6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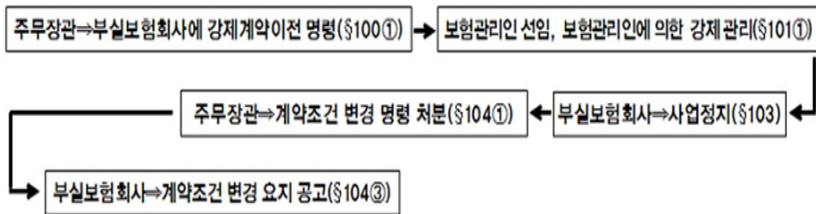
89) 보험업법 제137조 5항

는 인수회사가 승계하게 된다. 보험계약의 이전이 실행되면 인수회사는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자에게 계약이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 때 계약조건 변경 후의 보험계약자의 권리 및 의무의 내용에 대해서도 통지하여야 한다.⁹⁰⁾

위와 같은 흐름에 의해 계약조건 변경을 수반하는 계약이전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계약이전의 실행주체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의 계약이전의 실행주체는 보험관리인이다.⁹¹⁾ 보험관리인은 내각총리대신의 명령에 의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 승인받은 관리계획을 바탕으로 계약이전 또는 합병추진 등을 실행한다.⁹²⁾ 일반적으로 우량회사가 보험사업의 허가반납 등 사업중단을 하는 경우에 회사의 대표 및 경영진이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전 절차를 집행하는 경우인 ‘임의이전’과, 도산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관리인이 집행책임을 지고 계약이전 절차를 진행하는 ‘임의이전’은 절차상 프로세스는 대동소이하지만 근본적으로 전자는 사업철수에 따른 계약이전이고 후자는 도산처리에 따른 계약이전이라는 의미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구 보험업법(1996년 개정 전 보험업법)에서는 주무장관이 보험계약의 강제이전 명령을 발동하고 계약이전 협의의 상대방을 지정하거나 인가를 받아 협의를 개시토록 하는 등 주무장관이 나서서 강제적 절차진행을 하였다.

〈그림 II-8〉 구 보험업법하의 강제이전 절차



90) 보험업법 제253조

91)安居孝啓(2006), 전거서, p. 603

92) 보험업법 제247조(구 경영진은 조직변경 등을 포함한 관리대응책 결정 관여에 배제되어 있음)

또한 이전협약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불발이 되는 경우에는 주무장관이 행정 처분 효력이 있는 강제이전의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즉, 이전계약의 범위나 이전재산 및 채권자보호를 위한 유보재산 및 재산의 인도시기 등 이전조건을 주무장관이 재결정 하여 통보하는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협의를 진행한 당사자 회사들은 결정내용에 의거하여 지체없이 재산의 인도 및 계약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했다.⁹³⁾

위와 같이 주무장관에 의한 강제이전 방식은 앞서 제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전회사와 인수회사 양당사자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학계 및 업계의 주장이 제기되어 강제이전 절차는 신보험업법(1996)에서 모두 폐지되었다.

이에 대신하여 나타난 절차가 보험관리인을 통한 관리계획 작성, 주무장관 승인하에 동 계획을 통한 계약이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주무장관이 나서서 강제이전의 처분명령을 내리지는 않으나 보험관리인의 선임과 관리인에게 관리계획의 작성을 명령하고 동 계획을 승인하는 등 간접적 관여를 통해서 계약이전을 진행시키는 측면에서 강제성이 없고 자율성이 부여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도산회사의 구 경영진은 일체 관리계획의 작성에는 관여할 수 없다. 보험관리인 또는 보험관리인대리를 주로 보험회사나 보험협회, 보험계약자보호기구 등 민간인이 수행함으로써 형식 면이나 실제적인 관리계획의 작성·조율 측면에 있어서 자율성이 보장된 것이라 보아도 무방하다.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바뀐 후에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주무장관의 강제권 발동이 불가하므로 인수협의대상회사를 지정하지도 못하고 또한 보험업계 내에서 인수회사(구제회사)가 나타나지를 않아 결국엔 계약자보호기구가 가교사 형식으로 승계하는 시스템이 나타나게 되었다.

상기의 임의이전이나 보험관리인의 관리계획하에 이전하는 것이나 모두 계약이전에 대해 주무장관의 인가가 필요한데, 이 때 사전심사의 핵심적 요건이 '이전대상계약자 이외의 이전회사(도산회사)의 채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조건이다. 이 조항은 구 보험업법에서부터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보험회사의 도산 시 보험계약자 이외의 일반채권자의 채권은 우선하여 보호하겠다는 의미라 할 수

93) 구 보험업법 제121조~126조

있다. 실제로 日産生命, 東邦生命 등 행정절차에 의하여 도산처리를 한 보험회사의 경우 일반채권자들은 채권사감 등 권리변경 없이 전액보호를 받았고 보험계약자들은 보험금 등 계약채권액을 삭감하여 보험업법상의 행정절차제도의 허점을 드러내게 되었다.

한편, 보험계약 전부의 포괄계약이전을 한 원래의 도산회사(이전회사)는 해산 및 청산절차를 밟아 소멸하게 된다. 보험회사가 계약의 전부이전을 한 때에는 회사를 해산하여야 하며, 보험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보험계약자가 계약해제를 하지 않는 때에는 3개월을 경과한 날에 그 보험계약은 효력을 잃고 청산보험회사는 책임준비금액 또는 미경과보험료를 환불함으로써 회사 소멸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다.⁹⁴⁾

2) 계약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합병

경영파탄이 되어 도산하는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와 합병을 하는 경우에도 앞서 보험계약의 이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조건의 변경을 정할 수 있는데 보험업법에서 세 가지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⁹⁵⁾ 첫째로, 보험회사의 업무 및 재산 상황에 비추어 보험사업의 지속적 영위가 곤란하다고 내각총리대신으로부터 인정받고 동시에 합병의 협의를 명령받아 합병을 추진하는 경우, 둘째로, 피관리회사가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받은 보험관리인의 관리계획에 따라 합병을 하는 경우, 셋째로, 내각총리대신으로부터 적격성의 인정을 받은 파탄보험회사가 구제보험회사와 합병하여 그 구제보험회사가 존속하게 되는 합병을 하는 경우이다. 다만, 앞서 ‘인수보험회사에 대한 계약이전’에서 설명한 특정계약은 마찬가지로 합병 시에도 계약조건 변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⁹⁶⁾

94) 보험업법 제152조 3항 및 177조

95) 보험업법 제254조 1항

96) 보험업법 제254조 1항

계약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합병도 기본적으로는 통상적인 합병절차에 따라 추진되지만 보험계약의 이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칙이 설정되어 있다. 즉, 합병계약의 승인의 결의⁹⁷⁾를 하는 주주총회 소집통지 발송일에 당해 주주총회가 개최되는 취지 및 당해 계약조건의 변경을 포함하는 합병계약의 승인을 결의하는 것이 회의의 목적이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 때 이미 보험업무 전부의 정지를 명령받았거나 또는 정지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공고 시로부터 원칙적으로 그 업무의 전부(보상대상보험금 지급업무 및 특정보상대상계약 해약관련 업무를 제외한다)를 정지하여야 한다.⁹⁸⁾

보험계약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에 대해서는 합병절차 시 채권자의 이의제기 관련 공고를 할 때에 계약조건 변경에 의해 발생하는 보험계약자의 권리의무 변경의 주요한 내용 및 당해 변경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자의 이의제기를 통한 합병절차 부결 요건은 합병대상계약자 총수의 1/10을 초과하는 자의 이의제기와, 동시에 합병대상계약자의 보험계약 관련 채권총액의 1/10을 초과하는 때로 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계약조건을 수반한 계약이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계약이전 시의 부결 요건(1/5)보다 그 요건을 낮추어 계약자의 의사를 보다 존중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다. 또한 합병 후 존속하는 보험회사 또는 합병에 의해 새로 설립되는 보험회사는 합병 후 3개월 이내에 계약조건 변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변경의 취지 및 계약조건 변경 후의 보험계약자의 권리·의무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⁹⁹⁾

감독당국으로서 내각총리대신은 도산보험회사의 처리방법 중 하나인 합병에 대해 적극적 관여를 하고 있다. 즉, 합병의 상대방 지정, 협의의 권고, 합병조건의 알선 등 합병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감독당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도산보험회사가 합병 등에 관한 협의를 할 상대방으로 다른 보험회사 또는 보험지주회사 등을 지정하여 당해 다른 보험회사 또는 보험지주회사 등에게 그 협의에 응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¹⁰⁰⁾ 이 지정은 내각총리대신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협

97) 회사법 783조 1항, 795조 1항, 804조 1항, 보험업법 165조의3 제1항, 165조의10 제1항, 165조의16 제1항, 165조의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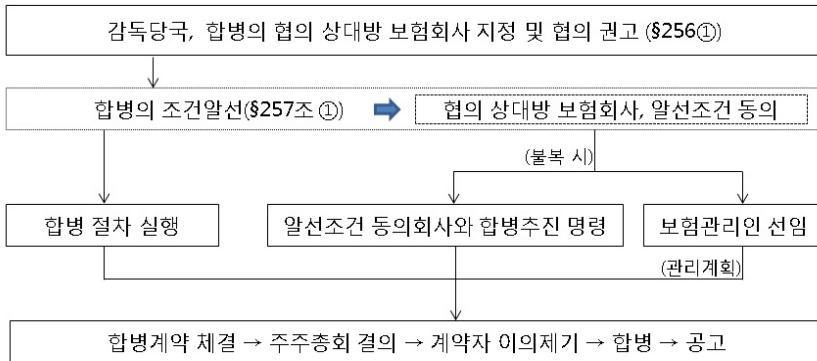
98) 보험업법 제254조 제4항

99) 보험업법 제254조 제3항

100) 보험업법 제256조 제1항

의 상대방을 선정하는 사실행위이며 지정된 다른 보험회사 또는 보험지주회사 등의 협의에 응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협의의 권고도 지정된 다른 보험회사 또는 보험지주회사 등에 대하여 법적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지정이나 협의의 권고는 반드시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권고가 내각총리대신에 의한 합병 관련 조건알선 등의 절차의 전제가 되는 점 및 보험계약자보호 기구에 의한 자금원조를 받는 데 있어 전제가 되는 적격성 인정을 대체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점¹⁰¹⁾을 감안하여 단순한 권고수준 이상으로 그 역할과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내각총리대신은 합병협의 권고의 실행을 조력하기 위해 도산회사나 도산우려회사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계약자보호기구에 합병협의 권고의 실행 또는 자산사정이나 실사 등 필요한 준비행위에 대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¹⁰²⁾

〈그림 II-9〉 합병을 통한 도산보험회사 처리 절차



내각총리대신의 상대방지정 및 권고에 따라 협의를 하였지만 협이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불발이 되는 경우, 내각총리대신은 미리 당해 도산회사 및 협의의 권고를 받은 다른 보험회사(우량회사)의 의견을 청취하여 조건을 제시하고 필요한 알선을 할 수 있다.¹⁰³⁾ 협의의 상대방인 다른 보험회사가 알선조건에 동의한 경우에는 도

101) 보험업법 제269조 제1항

102) 보험업법 제256조 제3항

103) 보험업법 제256조 제3항

산보험회사에 대하여 당해 조건에 따라 합병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취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다.¹⁰⁴⁾ 이는 합병의 조건에 합병 상대방인 우량회사가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산보험회사가 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내각총리대신의 명령에 의하여 이를 강제하는 것이다. 필요한 절차에는 합병계약의 협의·체결, 주주총회의 결의, 보험계약자의 이의제기 등이 있는데 내각총리대신의 명령은 도산보험회사의 경영진에 대하여만 효력을 갖는 것이지 주주총회 등에서의 합병의 승인 결의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경영진이 협의 상대방이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합병을 추진하지 않는 경우 내각총리대신은 보험관리인을 선임하여 확실한 합병절차의 진행을 도모할 수도 있다.

3) 계약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취득

부실보험회사가 경영파탄이 된 경우, 우량회사인 다른 보험회사나 외국보험회사 또는 보험지주회사 등이 도산보험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자회사화함으로써 당해 도산보험회사의 재건을 도모할 수 있다. 이 때, 도산보험회사의 보험계약에 대해서 계약조건의 변경을 할 수 있다.¹⁰⁵⁾ 계약조건의 변경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의 세 가지인데 당해 보험회사의 업무의 건전성과 적절한 운영을 확보하고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내각총리대신 및 재무대신이 정하는 것을 실행하기 위하여 주식취득이 이루어지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¹⁰⁶⁾ 첫째, 경영위기에 빠진 보험회사가 내각총리대신으로부터 보험회사·외국보험회사·보험지주회사 등(‘보험지주회사 등’이라 한다)에게 주식 취득의 협의를 명령받아,¹⁰⁷⁾ 보험지주회사 등이 당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 자회사가 되는 경우, 둘째 피관리회사인 도산회사가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받은 보험관리인의 관리계획에 따라 보험지주회사

104) 보험업법 제258조 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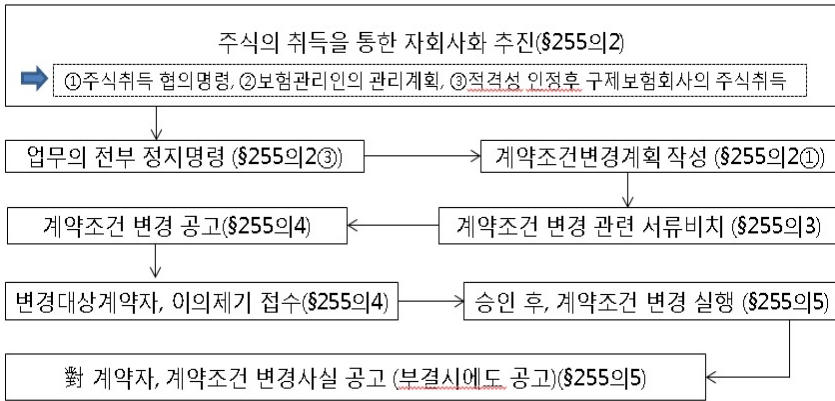
105) 보험업법 제255조의2 제1항

106) 보험업법 제255조의2

107) 보험업법 제241조 제1항

등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 자회사가 되는 경우, 셋째의 경우는 내각총리대신으로부터 적격성 인정을 받은 도산보험회사가 구제보험회사 또는 구제보험지주회사 등에게 주식이 취득됨으로써 그 자회사가 되는 경우이다.

〈그림 II-10〉 주식취득을 통한 도산보험회사 처리 절차



주식의 취득을 통한 자회사화 방식은 자회사가 되는 보험회사 등의 법인격에 변동이 없고 보험회사와 그 보험계약자간의 권리의무관계에도 변경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주식의 취득에 수반하는 계약조건의 변경에 대해서는 특별한 절차가 설정되어 있다. 우선, 상기의 ‘계약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취득’의 경우에 보험회사 등의 주식취득에 따른 당해 보험회사(‘변경회사’라 칭한다)의 보험계약에 대해서 계약조건의 변경을 하는 때에는 계약조건의 변경에 의해 발생하는 보험계약자의 권리의무 변경의 주요한 내용, 계약조건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이유, 주식의 취득을 하는 자의 상호, 명칭, 본점소재지 등을 기재한 ‘계약조건변경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¹⁰⁸⁾ 다만, 보험계약의 이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정계약¹⁰⁹⁾은 계약조건의 변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특정계약 판정의 기준시점은 변경회사의 업무의 전부가 정지되어

108) 보험업법 제255조의2 제1항 및 계약자보호명령제1조의11

109)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특정계약은 보험사고 기발생계약과 보험기간이 종료된 계약을 말함

있지 않은 경우 계약조건변경계획 작성의 공고를 한 때로 하고 있다. 계약조건변경계획의 공고에서 변경대상 보험계약자의 이의제기를 접수받는다든 것을 부기하여야 하며 변경대상 보험계약자의 이의제기를 통한 주식취득절차 부결 요건은 변경대상계약자 총수의 1/10을 초과하는 자의 이의제기와, 동시에 변경대상계약자의 보험계약 관련 채권총액의 1/10을 초과하는 때로 하고 있다. 이의제기 절차를 통과하여 승인을 얻고 주식취득을 한 후에는 바로 주식취득의 사실, 보험계약자의 이의절차 경과, 주식취득을 한 자의 상호, 명칭 또는 성명, 본점 소재지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¹¹⁰⁾

4) 승계보험회사에 대한 계약이전 및 계약조건의 변경

보험회사가 경영파탄을 초래하여 도산할 때 이 도산회사의 보험계약 이전을 받아 줄 구제보험회사가 나타날 전망이 없는 등의 이유로 인하여 보험계약을 이전할 수 없는 사태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파탄보험회사는 회사가 가입해 있는 계약자보호기구에 대하여, 당해 계약자보호기구가 자회사로서 승계보험회사를 설립하여 보험계약의 이전을 받아 줄 것(보험계약의 승계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¹¹¹⁾ 구체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경우에 승계의 신청이 인정된다.¹¹²⁾

첫 번째 경우는, 구제보험회사 또는 구제보험지주회사 등이 나타날 전망이 없음에 따라 보험계약의 이전 등¹¹³⁾을 할 수 없는 경우, 두 번째 경우는 도산보험회사가 손해보험업 면허를 받은 보험회사로서 구제보험지주회사 등이 당해 도산보험회사와 관련한 보험주요주주 등의 인가¹¹⁴⁾를 조기에 받을 전망이 없고 또한 당해 구제보험지주회사 등을 제외하고는 구제보험회사 또는 구제보험지주회사가 나타날 전망이 없

110) 보험업법 제255조의5 제1항 및 계약자보호명령 1조의15

111) 보험업법 제267조 1항

112) 보험계약자보호를 위한 특별조치 명령 제48조의2

113) 여기서 '이전 등'이라 함은 앞에서 차례대로 설명한 계약이전, 합병, 제3자에 의한 주식취득을 말함

114) 보험주요주주의 인가(보험업법 제271조의10 제1항) 또는 보험지주회사의 인가(보험업법 제271조의18제1항)를 말함

음에 따라 보험계약의 이전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이다.

두 번째 경우는 2005년 금융심의회 제2부회 보고서에서 “특히 손해보험회사의 도산의 경우에는 단기계약이 많으므로 신속한 처리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처리의 개시가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산 후 조기단계에서 계약자보호기구에 의한 인수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한 것을 바탕으로 2005년 개정보험업법에 반영된 것이다.¹¹⁵⁾ 구제보험회사를 찾아 보험계약의 이전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도산보험회사는 계약자보호기구에 의한 보험계약의 승계 또는 인수를 신청할 수 있다.¹¹⁶⁾ 법문장의 형식으로는 도산보험회사가 둘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계약자보호기구의 의향을 반영하여 신청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험계약의 승계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도산보험회사는 미리 보험계약의 승계와 관련하여 내각총리대신의 적격성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다음 요건의 전부를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격성 인정을 받을 수 있다.¹¹⁷⁾ 첫째로, 보험계약의 승계가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에 이바지 할 것, 둘째로, 계약자보호기구에 보험계약의 승계 신청을 하는 도산보험회사에 대하여 당해 보험계약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업무의 전부폐지 또는 해산 시에는 보험업의 신뢰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 것, 셋째로 보험계약의 승계 신청과 더불어 자금원조가 신청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금원조가 이루어지는 것이 당해 보험계약 승계의 원활한 실시에 불가결할 것 등 세 가지 요건이다. 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적격성을 인정했을 때 내각총리대신은 그 사실을 계약자보호기구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계약자보호기구는 신속하게 그 사실을 재무대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¹¹⁸⁾

한편, 도산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의 승계 신청을 받은 경우 계약자보호기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험계약의 승계 결정을 하기 전에 내각총리대신에게 도산

115) 安居孝啓(2006), 전제서, p. 666

116) 보험업법 제267조 1항

117) 보험업법 제270조 1항 및 2항

118) 보험업법 제270조 3항 및 4항

보험회사와 합병 등의 협의를 할 만한 상대방 보험회사 또는 보험지주회사 등을 지정하여 지정받은 상대방 회사들에게 그 협의에 응하도록 권고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¹¹⁹⁾ 이 권고조치에 대하여 내각총리대신으로부터 권고조치가 수용되어 통지가 온 경우 계약자보호기구는 승계에 대한 결정절차의 실시를 중단하며, 협의 상대방 회사와 계약이전 등이 타결된 경우에는 도산보험회사는 승계 신청을 취하여야 한다. 계약자보호기구가 내각총리대신에게 권고조치를 요청할 필요가 없거나,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은 경우 또는 권고조치에 따라 권고상대방 회사와 협의를 했으나 타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보호기구는 신속하게 운영위원회¹²⁰⁾를 열어 승계와 관련된 다음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즉, 승계보험회사를 계약자보호기구의 자회사로 설립하는 방안, 승계보험회사가 도산보험회사의 계약을 인계할 때 계약이전으로 할지 합병으로 할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때 계약자보호기구는 보험계약의 승계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계약자보호기구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바로 내각총리대신과 재무대신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도산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계약이전을 하거나 합병을 추진하여야 한다. 도산보험회사로부터 승계와 함께 자금원조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자금원조 여부를 결정하며 결정된 사항은 내각총리대신과 재무대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금원조는 금전증여의 성격이며 도산보험회사와 자금원조계약을 체결 후 집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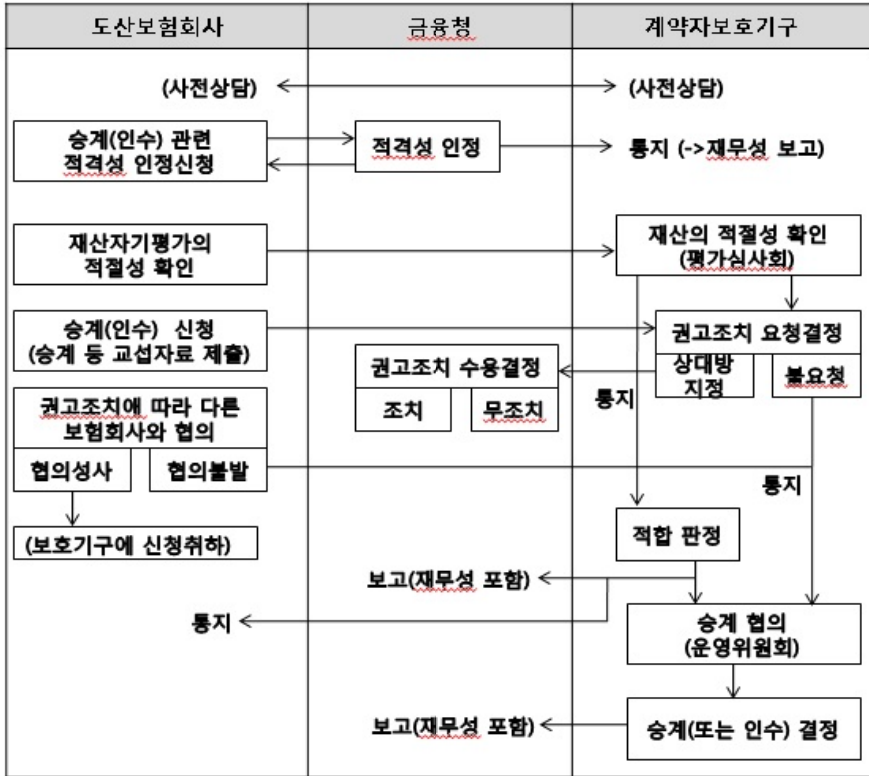
계약자보호기구가 승계보험회사를 설립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당해 결정과 관련한 출자내용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계보험회사가 되는 주식회사의 설립 발기인이 되어 이를 계약자보호기구의 자회사로서 설립하기 위한 출자를 하여 설립¹²¹⁾하고, 그 설립된 승계보험회사를 경영관리하고 승계보험회사 업무의 적절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승계협정을 체결하여 적정한 관리를 한다.

119) 보험업법 제256조 제1항 및 2항

120) 운영위원회는 보험업법 제265조의19 및 계약자보호기구의 정관 제37조에 의거 설치된 조직으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도산보험회사의 도산처리 관련 제반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임

121) 보험회사의 최저자본액은 10억 엔이며 또한 보험업 면허의 취득이 필요함

〈그림 II-11〉 승계(인수)의 신청~결정 프로세스



자료: 杉下智子(2010), p. 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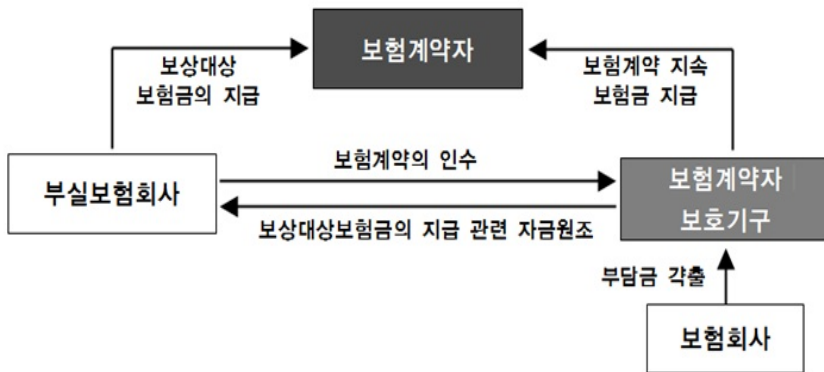
한편, 도산보험회사의 계약을 인수한 승계보험회사는 당해 보험계약의 관리와 처분을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임시적 조치에 불과하며 당해 보험계약의 최종적인 인수처가 될 다른 보험회사 또는 보험지주회사 등을 찾아 보험계약의 이전·합병·주식취득 등(보험계약의 재승계라 한다)을 추진하는 것을 지향한다. 보험계약의 재승계 시에 계약자보호기구는 필요한 경우 자금원조의 방법으로 손해담보를 할 수 있다. 재승계 시의 재승계 협의 회사에 대한 적격성 인정이나 협의 권고조치 등 기타 행정적 절차는 기존의 승계 시의 절차와 동일하다.

5) 보험계약자보호기구의 계약인수 및 계약조건 변경

보험회사가 경영파탄을 초래하여 도산한 경우 구제보험회사 등이 나타날 전망이 없어 도산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이전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도산보험회사는 계약자보호기구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승계 이외에 계약자보호기구 스스로가 보험계약의 이전을 받을 것(‘보험계약의 인수’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신청에 관한 절차나 내각총리대신의 적격성 인정은 보험계약 승계의 경우와 동일하다.

승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자보호기구가 보험계약의 인수 신청을 받은 경우 보호기구는 내각총리대신에게 우량한 다른 보험회사를 지정하여 도산보험회사와 합병 등의 협의에 응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¹²²⁾

〈그림 II-12〉 계약자보호기구에 의한 계약인수의 기본구조



자료: 생명보험계약자보호기구 홈페이지(<http://www.seihohogo.jp/>)

이러한 처리순서를 거쳐 계약자보호기구에 의한 계약인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확인되면 보호기구는 신속하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험계약의 인수를 위한 계약체결일을 결정하여 내각총리대신 및 재무대신에게 관련사항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승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자보호기구가 보험계약의 인수를 거부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계약자보호기구가 보험계약의 인

122) 보험업법 제270조의4 제1항

수를 할 계약체결일을 결정하면 신청을 한 도산보험회사는 계약자보호기구와 보험계약의 인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며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보험계약의 이전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의 포괄이전에 관한 규정(법 135조 2항~4항, 136조 ~140조, 155조, 201조) 이외에도 보험계약의 이전 시 계약조건 변경에 관한 규정(법 250조~253조)이 준용되며 구제보험회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조건의 변경을 한 후에 계약자보호기구에 대한 보험계약의 이전이 실행된다.

한편, 계약자보호기구가 직접 보험계약의 인수를 하는 것이므로 계약의 인수를 통해 양수한 도산회사의 재산은 당해 도산회사에 대해서 설정한 보험특별계정에 이체하여 관리한다. 동시에, 계약자보호기구가 자금원조(금전증여)를 할 경우에도 계약자보호기구의 일반계정에서 당해 보험특별계정으로 이체하여 관리하고 구분회계로 처리한다. 또한, 보호기구가 직접 계약을 인수한 것이므로 계약자보호기구를 보험회사로 간주한다.¹²³⁾

한편, 보험계약의 승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자보호기구가 도산보험회사의 계약을 직접 인수한 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 조치에 불과하며 당해 보험계약의 최종적인 인수처가 될 다른 보험회사 또는 보험지주회사 등을 찾아 보험계약의 이전·합병·주식취득 등(‘보험계약의 재이전’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것을 지향한다. 보험계약의 재이전 시에 계약자보호기구가 필요한 경우 자금원조를 하는 등 적격성 인정이나 협의 권고조치 등 기타 행정적 절차는 기존의 승계 시의 절차와 동일하다.

123) 보험업법 제276조의6

Ⅲ. 보험업법상 도산처리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

보험업법상의 행정적인 파탄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 이외의 일반채권자의 권리삭감이 곤란하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고, 또한 행정주도의 절차에서는 적시에 절차개시가 곤란하다는 점, 절차의 엄격성 및 투명성에 대한 의문, 처리방법의 한정, 생명보험계약자보호기구의 재원에 대한 우려 등이 지적되어 왔다.¹²⁴⁾

1. 일반채권자의 권리삭감 문제

보험업법에 의한 파탄처리 절차에서는 보험계약만이 권리변경의 대상이 되고 보험계약 이외의 일반채권의 권리변경은 할 수 없다. 보험업법상에서는 보험계약자에 대해서만 선취특권을 인정하고 있을 뿐 일반채권자의 지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규정이 없어 이들의 권리변경을 보험업법에 의거해서 행할 수가 없다.

먼저, 보험업법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규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채권액을 삭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보험업법 제270조의3에 의거 도산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타보험회사에 포괄계약 이전할 때에는 계약자보호기구가 자금지원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때 보상대상계약의 책임준비금 전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조건의 변경을 수반하게 되는데 「보험계약자등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명령」 제50조의5에 의거 대상계약의 책임준비금에서 일정률을 곱한 금액만큼만 보상대상으

124) 山本和彦(2001), “保險會社に對する更生特例法適用の諸問題”, *民商* 125卷3号, p. 287; 松下淳一·事業再生研究機構編(2014), “新更生計畫の實務と理論”, *商事法務*, p. 619

로 하고 있다.¹²⁵⁾ 결국 보험계약자의 채권액을 10~20% 삭감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보험계약자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채권액을 삭감조정하여 인수회사가 포괄계약이전을 받아 갈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보험업법 방식에 의해 계약이전을 할 때에는 일반채권자에 대해서는 채권조정을 할 법적 근거가 없어 보험업법 및 감독당국이 일반채권자는 보호하고 보험계약자에게만 희생을 요구한다는 비판을 받게 된 것이다. 보험업법에 의거하여 도산처리를 할 때 주식회사, 상호회사를 불문하고 보험계약자에 대하여는 책임준비금 삭감 등을 통해 보험계약 채권의 삭감을 할 수 있는데 후순위대출, 후순위채권 등 일반채권은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¹²⁶⁾ 한편, 보험계약자는 보험업법 제117조의2에 의거 회사의 총재산에 대하여 선취특권을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보험업법 및 특별조치명령에 의하여 계약이전 시에는 보험계약채권액의 일정률을 삭감하도록 규율받고 있으므로 선취특권 주장에 앞서 우선적으로 보험계약채권액 삭감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보험업법상 선취특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업법 제117조의2 ① 생명보험회사의 경우에 보험계약자(재보험에 관련된 보험계약자를 제외한다)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재보험에 관련된 권리를 제외한다)를 갖는 자는 그 권리의 금액에 대하여 각각 당해 생명보험회사의 총재산에 대하여 선취특권을 갖는다.

1. 보험금청구권
2. 손해를 보전할 것을 청구할 권리(제1호의 것을 제외한다)
3. 환급금, 잉여금, 계약자배당에 관련된 배당금 및 기타 급부금(보험금을 제외한다)을 청구할 권리

125) 예컨대, 생명보험계약의 경우는 ‘책임준비금+지급비금+계약자배당준비금(미할당부분 제외)의 합계액(특정책임준비금)’에 90%를 곱한 금액만 보상대상으로 하고 일반손해보험의 경우에는 80%, 자동차보상배상책임보험은 100%, 질병·상해보험은 90%만 보상대상으로 함(보험계약자등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명령(大藏省令제124호))

126) 田口 誠(2001), “生保會社の更生手続きと保険契約者の保護”, *生命保險經營*, 第69卷6号, p. 99; 河谷善夫(2011), “生命保險契約者保護機關起源に関する一考察”, *生命保險論集*, 第177号, p. 221; 佐野誠(2002), 전게서, p. 185; 山下友信(2005), 전게서, p. 620(보험업법상 도산처리에서는 보험계약자 이외의 일반채권자의 권리를 변경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 ② 전항의 선취특권의 순위는 민법 제306조¹²⁷⁾ 1호(공익비용의 선취특권)에서 규정하는 선취특권에 버금간다.

선취특권에는 일반선취특권, 동산선취특권, 부동산선취특권 등 세 종류가 있는데 일반선취특권은 채무자의 총재산 위에 성립한다. 즉, 선취특권을 갖는 자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그런데, 보험업법에서는 민법 제306조 제1호에 버금간다고만 하였지 제2호 등에 앞선다고는 하지 않고 있으므로 보험업법상의 선취특권은 민법 제306조 2호~4호와 동순위라고 보아야 하며 보험금선취특권이 민법 제306조 2호~4호와 경합되는 경우에는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그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고 해석이 가능하다.¹²⁸⁾ 또한 민법 제306조 제1호에서 말하는 공익비용(공익채권)이라 함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의 비용청구권이나 청·파산이나 갱생 시 업무·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이나 관리인 등에 대한 보수 청구권 등과 같이 공익이 우선시되는 비용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보험업법에 의거하여 도산처리 시에 일반채권자의 권리삭감을 어렵게 만드는 근본적인 문제는 도산보험회사가 인수회사(구제회사)에 포괄 계약이전을 할 때에 청산법인(도산보험회사)에 일반채권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재산을 남겨둔다는 것을 전제로 계약자보호기구가 자금원조를 하게 된다는 점이다. 보험계약의 계약이전은 감독당국(내각총리대신, 금융청에 위탁)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바, 인가심사기준으로서 보험업법 제139조 제2항3호¹²⁹⁾에 의거, 이전대상계약자(도산회사의 계약자) 이외의 이

127) 민법 제306조(일반선취특권) 다음 각 호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을 갖는 자는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선취특권을 갖는다.

1. 공익비용 2. 고용관계 3. 장례 비용 4. 일용품 공급

128) 青谷和夫監修(1974), *コンメンタル保險業法(上)*, 東京, 千倉書房, p. 455

129) 보험업법 제139조(보험계약 이전의 인가) ① 보험계약의 이전은 내각총리대신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② 내각총리대신은 전항의 인가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당해 보험계약의 이전이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에 비추어 적당할 것
2. 이전신청자가 당해 보험계약의 이전을 받은 후에 그 업무를 정확·공정하며 효율적으로 수행할 전망이 확실할 것
3. 이전대상계약자 이외의 이전회사의 채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우려가 없을 것

전회사(도산회사)¹³⁰⁾의 채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우려가 없을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보험업법상에서 도산회사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충분히 규정되어 있지만 일반채권자는 민법의 지배를 받으므로 이들에 대한 보호규정은 보험업법상에서는 일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보험업법에서는 계약이전 시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으면서 계약이전이 되도록 규정하여 심사하고 있는 것이다. 동규정은 1995년 이전 구보험업법 제111조 제2항에서는 회사의 모든 계약을 이전하는 포괄계약이전의 경우에 주무장관이 그 회사(도산회사)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을 유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이는 회사재산 이전에 의하여 도산회사의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은 형평성을 잃기 때문에 이전하는 회사는 대장대신이 일반채권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을 유보하도록 한 것이다.¹³¹⁾

현행 보험업법의 규정에 따라, 보험업법은 계약이전 시에 계약자 채권은 삭감하면서 일반채권자의 이익은 보호하는 모순을 낳게 되었고 또한 계약자보호기구가 도산처리에 지원해야 하는 자금이 일반채권자 이익이 보호되는 만큼 더 소요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러한 불합리한 측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이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권리변경이 가능한 갱생절차특례법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보험업법이 일반채권자를 규율하는 규정을 설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과 한계를 시정하기 위하여 회사갱생법의 특례법인 「금융기관 등의 갱생절차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1996년, 법률제95호)」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자 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채권자도 채권권리 변경의 대상으로 확대하였다.¹³²⁾

전부 또는 일부의 갱생채권자의 권리변경에는 보험계약자는 물론 일반채권자나 후순위채권자 등 모두 적용대상이 된다. 대부분 권리변경 시에는 일반채권자나 후순

130) 이전회사란, 보험업법 제135조 제3항에 의거 보험계약의 이전을 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를 말하며 이전을 받아 인수하는 회사는 移轉先회사라 칭함

131) 靑谷和夫監修(1974), 전계서, p. 190

132) 갱생절차특례법 제92조(갱생계획에서 정할 사항) ①갱생계획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전부 또는 일부의 갱생채권자 등 또는 조합원 등의 권리의 변경

위 채권자 등은 거의 전액이 채권액 면제조치를 받으나 보험계약자는 책임준비금의 일정률(10~20%)만 삭감하고 대부분의 책임준비금은 보장을 받고 있다. 경쟁계획에 있어서 채권 간 권리변경의 순위(경쟁절차특례법 제260조) 등 상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2. 계약자보호기구의 재원증액 확충 한계

1995년 보험업법 개정에 의해 보험회사 도산 시 보험계약자보호를 위하여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이 설치되었다. 동 기금은 각출한도가 2,000억 엔이었는데 1997년 4월 日産生命이 도산하여 채무초과액이 약 3,029억 엔 발생하여 자금한도액인 2,000억 엔을 지원하고 바로 소멸되었다. 이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하여 1998년 12월에 재차 설립된 계약자보호 안전망이 「생보계약자보호기구와 손보계약자보호기구」이다. 동 보호기구의 목적은 보험업법 제259조에 따라 도산보험회사에 관계된 보험계약 이전 등의 경우에 자금원조, 승계보험회사의 경영관리, 보험계약의 인수, 보상대상보험금의 지급에 관련된 자금원조 및 보험금청구권 등 매입함으로써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도모하고 나아가 보험업의 신뢰성을 유지함에 있다. 계약자보호기구는 설립 후 10년 이내에 중규모 정도의 보험회사 2개사가 도산한 경우에 대응가능한 수준(생보 4,000억 엔, 손보 500억 엔)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다.¹³³⁾

보험업법 제265조의 42(보험계약자보호기구의 차입금)에서는 계약자보호기구가 외부로부터 자금차입을 할 때에는 보험업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내각총리 및 재무장관의 인가를 받아 차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업법시행령 제37조의4(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한도액)에서는 생명보험계약자보호기구는 4,600억 엔을 차입금 한도로 하고 손해보험계약자보호기구는 500억 엔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계약자보호기구가 출범할 당시에 기본적인 재원규모로서는 생보의 경우 4,000억 엔을 기본으로 출범하였는데 2001년 3월 31일까지 특례

133) 安居孝啓(2006), 전게서, p. 645

기간에 도산 시에는 보다 충실한 자금원조를 하기 위하여 600억 엔을 추가로 설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재원은 4,600억 엔이 되었다.¹³⁴⁾

그런데, 계약자보호기구 출범 후 반년만인 1999년 6월 4일 東邦生命 상호회사가 도산하여 업무정지를 당하였다. 업계 14위에 이르는 중형사였던 東邦生命은 도산 당초 거액의 채무초과상태가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생보계약자보호기구의 자원총액을 훨씬 초과하는 5,000~6,000억 엔에 달할 것이라고 하였다.¹³⁵⁾ 결과적으로는 東邦生命의 계약을 포괄계약이전으로 인수한 G.E.Edison생명에 3,663억 엔의 자금을 지원하였으나,¹³⁶⁾ 당시 언론보도 등으로 연쇄도산이 우려되고 있었던 터라 연쇄도산 발생 시에는 도산정리할 자원부족이 우려되고 있었다.

생보계약자보호기구는 1999년 12월에 생보계약자보호기구 정관 제89조제1항에 의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정부에 건의하였다. 이를 받아들여 금융감독청 및 대장성은 2003년 3월 31일까지 도산하는 보험회사에 대응할 재원으로서 생보계약자보호기구의 부담한도액을 1,000억 엔 추가 부담하도록 증액하여 동 기간 중에는 누계 5,600억 엔으로 함과 동시에, 재원이 고갈되어 당해 한도액 5,600억 엔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4,000억 엔을 상한으로 하여 정부보조를 설정하는 안전망 재구축안이 제시되었다.

생보계약자보호기구는 이에 1999년 12월에 생보계약자보호기구에 관한 긴급조치 기본방침을 총회에서 결의하였는데, 이 결의에서 생보계약자보호기구의 부담은 2003년 3월 31일 기간까지는 생보계약자보호기구의 차입한도액을 4,600억 엔에서 9,600억 엔으로 확대하고 생보계약자보호기구(회원보험회사)의 부담은 누계로 5,600억 엔을 초과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였다.¹³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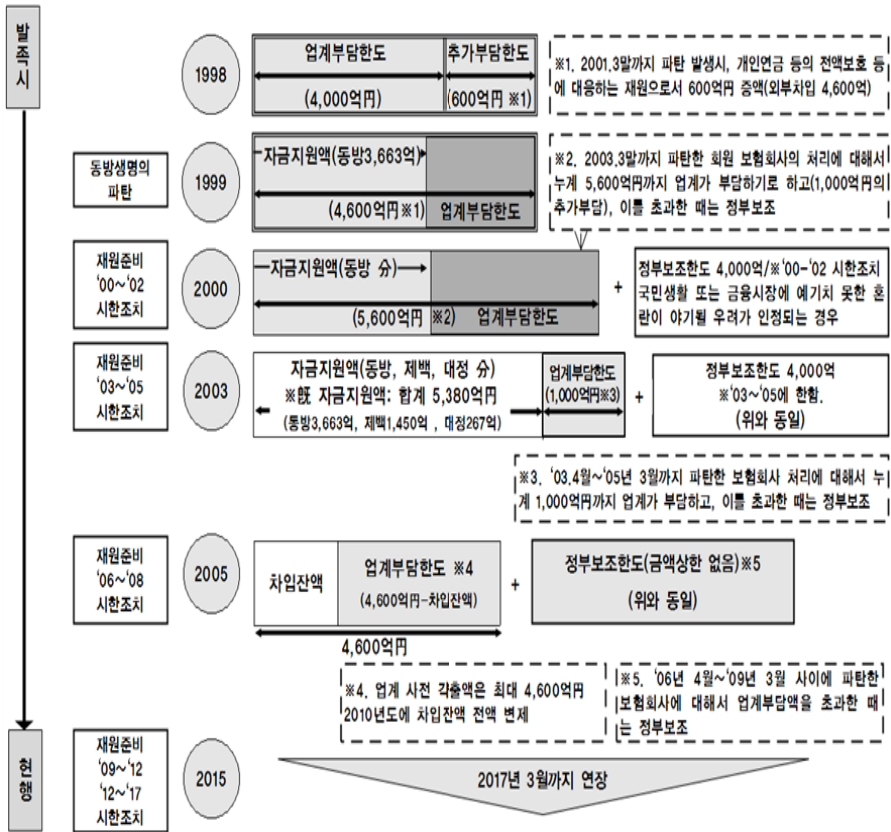
134) 河谷善夫(2011), 전거서, p. 226

135) 1999년 7월 31일 일본경제신문(조간)은 東邦生命의 채무초과액이 5,000~6,000억 엔에 달할 전망이다이라고 보도하였음

136) 東邦生命의 도산정리는 채무초과액 6,500억 엔에서 계약자보호기구가 3,663억 엔을 지원하고 영업권 2,400억 엔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계약조건변경을 통한 계약자부담 등에 의해 처리되었음

137) 日本生命保險協會(2009), 生命保險協會百年史, 東京, p. 209

<그림 Ⅲ-1> 생명보험계약자보호기구 재원의 변천도



자료: 河谷善夫(2011), p. 226

東邦生命이 도산한 후 다른 생보사들의 연쇄도산이 우려됨에 따라 금융감독청 전문기구인 금융심의회에서는 1999년 12월 보험회사의 안전망에 관하여 도산법제의 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요지의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와 도산법제의 정비” 중간보고서를 정리하여 보고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라 2000년 5월 「보험업법 및 금융기관 등의 갱생절차 특례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생보계약자보호기구의 기능 확충과 갱생절차를 상호회사에 적용하는 내용 등 제도 정비가 이루어졌다.

또한 2003년 3월까지 사이에 도산하는 생명보험회사의 도산처리비용에 대해서 생

명보험 각사의 각출부담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비되었고, 아울러 상호회사로부터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규정에 대한 정비도 이루어졌다. 2000년 5월에 第百生命이, 동년 8월에 大正生命이, 동년 10월에 千代田生命과 協榮生命이, 익년 3월에 東京生命이 도산하여 FY2000년에만 5개 생명보험회사가 연쇄도산하였다. 이에 생보계약자보호기구는 東邦, 第百, 大正生命 3개사에 대해서는 보험업법에 의거하여 계약이전 방식으로 도산처리를 하여 인수보험회사에 총 5,380억 엔의 자금원조를 집행하였다. 千代田生命은 채무초과액이 5,950억 엔이고 協榮生命은 6,895억 엔으로 양사 합계 1조 2,845억 엔이어서 생보계약자보호기구가 보험업법에 의거, 자금지원을 하여 계약이전을 하기에는 너무나 큰 도산처리 자금이 필요하므로 갱생절차특례법에 의한 처리를 선택한 것이라 보인다.

3. 도산처리 절차의 신속성 문제

보험회사의 도산처리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의 지속적 유지를 통한 보험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산한 보험사의 보험계약집단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도산처리 절차진행이 필요하다. 보험업법 제241조제3항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그 업무 또는 재산상황에 비추어 그 보험업의 지속이 곤란한 때에는 그 취지 및 이유를 문서로써 내각총리대신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보험업 지속곤란”이라 함은 ①채무초과 또는 그 우려가 있을 때, ②지급정지 또는 그 우려가 있을 때, ③ 보험계리사가 장래수지분석을 하여 이사회에 사업지속이 곤란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 그 요인의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없을 때 위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보험계약자보호를 위한 특별조치명령 제1조의2).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보험계리사는 매 결산기에 장래 시점에 있어서 자산·부채 금액이 사업지속의 관점에서 적정수준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보험업법 제121조). 구체적으로, 일본계리사회실무기준에 의거하여 보험계약에 대하여 전기질멜식 책임준비금과 해약환급금 상당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10년 이상의 예측을 하여 최소 5년간의 사업연도 말 부채에 상응하는 시가평가된 자산

이 있는지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되어 있다. 생명보험회사는 이 의견서를 바탕으로 매 결산기에 상기의 ①~③의 사업지속곤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 사업지속곤란에 대한 사전보고의무는 보험회사의 경영파탄을 회피하고 도산 시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감독당국의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제도이다.

보험회사로부터 사업지속곤란의 보고가 있을 때에 그 보험회사에 대한 특별검사를 통해 확인한 후 업무정지명령 및 보험관리인에 의한 관리처분 명령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언론을 통하여 보험계약자들에게 알려지게 되어 보험계약의 대량해약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물론, 감독당국에서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호방침을 천명하고 계약자 구제방침을 호소하지만 상당 계약자들은 이를 불신하고 해약행동으로 이어지기 쉽다.

위와 같은 일련의 행동으로 보험계약집단이 위축된다면 당장 해약환급금 지급을 위한 유동성 자금 마련이 필요하므로 우량자산에 대해서도 긴급매각을 하지 않을 수 없어 자산손실이 발생하고 장래적으로는 보험계약에 내재된 장래이익의 소실로 기업가치가 감소하여 계약이전이나 회사매각 등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실제로 日産生命이 도산하였을 때 언론상에서 연일 다음 차례로 도산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의 후보를 분석하여 기사화하는 등 정보가 난무하여 도산의 구체적인 징후나 사업지속곤란 등의 행정적 절차가 있게 되면 해약급증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갱생절차특례법에 의한 회생처리에 있어서는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의 위험집단 그 자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절차진행을 하고 있다. 즉, 법원에서는 갱생개시 결정 시에 갱생 전망을 보고 판단하는데 2002년 갱생절차특례법 개정 이전에는 실제적·경제적 판단을 필요로 했었는데 법 개정 이후에는 절차적 관점을 중시하여 갱생계획안의 작성·가결의 전망을 개시결정조건으로 하여 조기결정이 가능해졌다.¹³⁸⁾ 갱생절차특례법을 적용한 千代田生命의 경우에는 갱생개시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 4일이 소요되었고, 協榮生命은 3일, 東京生命은 8일, 大和生命은 7일 소요되어 신속한 절차진행이 가능해졌다.¹³⁹⁾

138) 櫻井忠明(2001), “更生特例法の適用状況”, 金融法務事情, 第1610号, p. 43

139) 杉下智子(2010), 전계서, p. 202

IV. 갱생방식 도산처리제도의 도입

1. 갱생특례제도의 도입 경위

회사갱생법은 1952년에 제정되어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어 왔다. 물론 보험주식회사도 적용대상이 되는 법이다. 그러나, 보험계약자의 수가 방대하여 채권자에 대한 송달, 채권신고, 채권조사, 관계인집회의 개최 등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회사갱생법상의 갱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은 곤란하였다.¹⁴⁰⁾ 또한 회사갱생법은 주식회사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보험상호회사는 갱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금융기관의 도산처리 등 구조조정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갱생절차의 신청권한 등이 회사갱생법상 감독당국에 부여되어 있지 않고 해당회사 및 주주, 채권자에게만 부여되어 있어 도산처리에 활용하기는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에 의한 신속한 도산처리가 가능했기 때문에 은행 등 예금취급금융기관의 도산 시 감독당국이 법원에 갱생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갱생절차특례법이 1996년 6월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당시 일본에서 버블이 붕괴하기 전까지는 은행이 도산할 경우 일반 사업법인과 마찬가지로 파산법에 의한 파산절차를 따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¹⁴¹⁾ 그러나 버블붕괴로 인하여 금융불안이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면 예금가입자에게 예금을 지급(Payoff)하고 청산하는 것은 실행할 수 없는 대안이었다. 구제은행을 찾아

140) 田口 誠(2011), 전계서, p. 86

141) 嶋石哉(2010), “銀行倒産における国際倒産法的規律”, FSAリサーチ・レビュー, 第6号, 金融庁金融研究研修センター, p. 116

계약이전을 하거나 인수합병을 시키고 규제은행이 없을 경우에는 가교은행을 설립한 후 계약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한편, 보험업법에 의한 도산처리는 1990년대 후반 당시에, 보험계약자를 권리변경의 대상으로 한 절차 밖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보험계약자 이외의 일반채권자의 권리변경을 시행할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이 문제시되고 있었고,¹⁴²⁾ 또한 보험업법에 의거한 행정절차로 도산처리 시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었다. 보험회사가 갱생절차를 이용하는데 있어 큰 장애가 되는 요소들, 예컨대 갱생절차 사무처리에 계약자보호기구에 대리권을 인정하고 채권자평등원칙에 일부예외 인정 등의 특칙을 설정하는 등 절차적 규정과 약간의 특칙을 설정하면 갱생절차 이용이 가능할 수 있었다.

예금보험기구에 대리권을 인정하는 문제 등 절차의 보완은 은행, 증권회사 등에도 공히 필요한 규정인 바, 금융기관의 도산처리를 위한 항구적 제도의 정비가 논의되는 있던 시점에 보험분야에서도 도산처리제도를 보완하고자 투명성 관점에서 갱생절차의 적용을 기대하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었다.¹⁴³⁾ 이러한 상황에서 1999년 8월 금융심의회 제2부회 산하에 “보험의 기본문제에 관한 워킹그룹(T/F)”이 설치되어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의 방향성과 함께 도산법제의 정비를 검토하게 되었다. 동 워킹그룹의 심의를 바탕으로 금융심의회 제2부회 보고서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와 도산법제의 정비(중간보고서)”가 정리되어 제출되었다. 동 보고서를 기본으로 입법화 작업이 이루어져 2000년 5월 “보험업법 및 금융기관 등의 갱생절차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통과되어 보험업법과 금융기관 등의 갱생절차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갱생절차특례법’ 또는 ‘갱생특례법’이라 약칭한다)이 각각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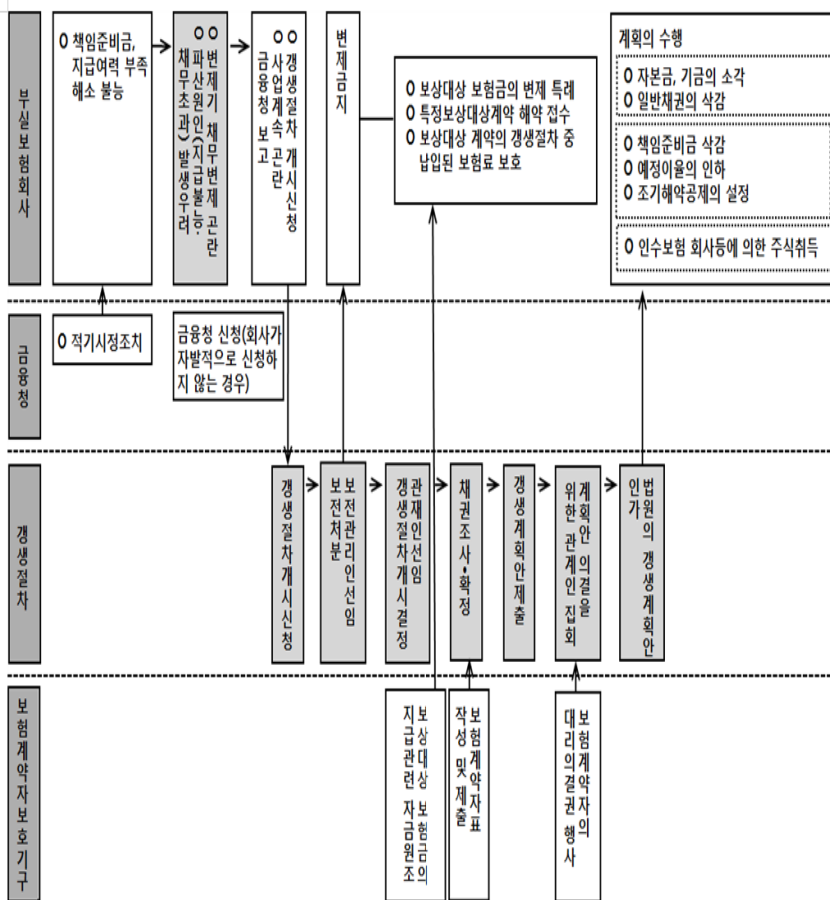
142) 松下淳一·事業再生研究機構(2014), 전거서, p. 619

143) 山名規雄(2000, 7), “保険業法及び金融機関の更生手続きの特例等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概要”, ファイナンス, p. 37

2. 갱생특례법상 갱생특례제도 개요(144)

이 절과 다음 절에서 설명할 갱생절차제도의 개요와 특색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기본 구조의 흐름도를 먼저 소개해 둔다.

〈그림 IV-1〉 갱생절차 기본 구조



자료: 금융청 홈페이지(http://www.fsa.go.jp/ordinary/hoken_hogo/04.pdf)

144) 갱생특례법상의 제도도입 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松下淳一·事業再生研究機構(2014), 전계서, pp. 620-630을 인용·참조함

가. 계약자보호기구¹⁴⁵⁾의 권한 신설

보험업법 제259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보호기구는 도산보험회사에 관련된 보험계약의 이전 시의 자금원조, 승계보험회사의 경영관리, 보험계약의 인수, 보상대상보험금의 지급에 관계된 자금원조 및 보험금청구권 매입 등을 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나아가 보험업에 대한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갱생특례법 제423조는 계약자보호기구에 대하여 송달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회사갱생법 제43조에 따르면 재판소는 갱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한 때에는 바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갱생특례법 제423조에서는 보험회사의 경우 갱생절차개시 결정에 대하여 계약자보호기구에 송달하면 족하며 개별계약자에게 일일이 송달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적으로 방대한 규모인 보험계약자에 대한 서면송부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이다.

또한 계약자보호기구는 보험계약자의 절차대리를 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갱생특례법 제428조 및 제429조에 따르면 채권신고에 대해서 계약자보호기구가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자료를 작성하며 재판소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여, 개별 보험계약자가 개별적으로 채권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다만, 개별 보험계약자가 독자적인 판단으로 스스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험계약자보호기구는 채권신고가 이루어진 보험계약자에 대해서 갱생절차에 속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¹⁴⁶⁾

나. 계약자보호기구의 역할, 요망사항 및 관리인단과의 연계

계약자보호기구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리인단에 요청하였다. 즉, 재산가액을 적

145) 보험업법 제259조에 의거 계약자보호기구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따로 법인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어 1998년 12월 따로 설립되었으며 각각의 보호기구의 정관에서도 갱생절차특례법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론에서는 생명보험계약자 보호기구를 중심으로 설명함. 법규 및 절차특례 모두 생존보 간에 동일함

146) 갱생특례법 제428조~제432조

절하게 평정할 것,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공정·형평하게 취급할 것,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갖는 보험계약자 간에 평등하게 취급할 것, 합리적인 계약조건변경추진 등 갱생계획이 수행 가능할 것, 임원 및 기타 관계자에 대한 법적 책임추궁을 할 것, 인수후보자 선정에 대해서 투명성이 높고 경쟁원리가 작동하는 방법으로 추진될 것, 인수후보자와 계약자보호기구와의 이익상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특별히 사업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법률관리인이 주도적으로 갱생절차의 처리·진행을 할 것, 구경영자에 대한 책임추궁에 대해서 엄격히 대응할 것 및 금융청과의 연계 시점에서 대응할 것 등이 요망 내용이다.

실무적으로는 사건의 개시 시에 계약자보호기구의 갱생대책실이 갱생회사에 상주하여 관리인단과 긴밀한 연계를 도모하고 있다.

다. 관리인의 해제권 제한

갱생특례법에 제439조에 의거, 보험회사를 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재보험계약을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회사갱생법 제61조¹⁴⁷⁾의 적용이 배제되어 있다. 즉,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관리인에 의한 쌍방미이행쌍무계약의 해제권 행사는 할 수 없다. 이는 관리인이 보험회사에 불리한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재계약이 곤란한 계약자의 계약만 해제됨에 따른 사회적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회피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라. 보험금 수시변제

갱생회사가 계약자보호기구와 자금원조계약을 체결한 때에 갱생회사는 보상대상계약(보험업법 제270조의3 제2항 제1호)에 관계된 보험금청구권 등에 대하여 보상대상보험금(보험업법 제245조 제1호)의 변제를 할 수 있다.

147) 쌍방계약에 대하여 갱생회사 및 그 상대방이 갱생절차 개시 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의 해제를 하거나 또는 갱생회사의 채무를 이행하여 상대방의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원래 갱생채권에 대해서는 갱생절차 중에 변제가 금지되어 있는데, 갱생절차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수령인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보험의 원래의 목적인 생활안정기능을 완수하지 못하게 되며, 또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납입 의무상실을 초래해 회사의 재건이 곤란하게 되기 때문이다.¹⁴⁸⁾ 다만, 그 지불에 의해서 갱생회사의 자금이 감소하여 다른 채권자에 대해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자금원조계약에 의한 계약자보호기구로부터의 보상범위 내에서 변제가 이루어진다.

갱생절차에 의해 도산처리를 한 생보사 중 계약자보호기구로부터 자금원조를 받은 회사는 大和生命이 유일하다. 大和生命의 경우 사망보험금, 만기보험금, 급부금 등의 보험급부는 계약자보호기구와 보상대상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자금원조계약 체결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보험금 지급을 개시한 바 있다.

〈표 IV-1〉 大和生命의 보험금 수시변제 현황

(단위: 건, 엔)

| 구분 | 지급건수 | 지급총액 |
|-------|-------|---------------|
| 사망보험금 | 508 | 1,182,883,295 |
| 만기보험금 | 3,945 | 6,246,153,404 |
| 연금 | 1,129 | 529,082,206 |
| 급부금 | 1,969 | 916,774,098 |
| 합계 | 7,551 | 8,874,893,003 |

자료: 松下淳一·事業再生研究機構(2014), p. 623

마. 보험계약 관련 채권신고, 조사, 확정특칙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계약자보호기구가 보험계약자의 절차대리를 하고, 채권신고에 대해서는 계약자보호기구가 보험계약자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보험계약자가 개별적으로 채권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보험계약자는 열람을 통하여 보험계약자표의 내용 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또한 직접 재판소에 신고하고 갱생절차에 참가하는 것도 가능하다.¹⁴⁹⁾

148) 山本和彦(2001), 전계서, p. 312

149) 갱생특례법 제428조~제431조

바. 보험회사에 대한 갱생계획 특례

갱생특례법에서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세 가지 갱생계획 특례가 규정되어 있다. 첫째로, 갱생계획에서 동종의 보험계약에 관계된 채권을 변경하는 경우에 책임준비금의 적립방식 및 예정사망률 등 기타 책임준비금의 계산기초가 되는 계수의 수준에 대해서 동일한 수준을 사용하는 것은 채권자의 실질적 평등의 원칙¹⁵⁰⁾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갱생특례법 제445조 1항). 동종의 보험계약에서도 그 계약의 체결 시기에 따라 책임준비금의 산출기초가 다른 것도 있는 바, 이를 갱생계획에서 일률적으로 변경했다 하더라도 장래의 책임준비금의 적립방식을 변경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을 확인한 것이다.¹⁵¹⁾

둘째로, 보험계약자의 권리 중 해약환급금 등 이와 유사한 급부금에 대해서 다른 권리에 비해 불리한 조건을 정하는 것도 채권자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된다(동법 제445조 제2항). 동조 동항은 조기해약공제제도가 채권자평등주의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규정이다. 조기해약공제제도는 보험의 균단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항인데, 해약을 할지 안 할지 또한 언제 해약할지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채권자평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석되고 있다.¹⁵²⁾

셋째로, 갱생절차 개시결정 후에 납부된 보험료에 의해 적립해야 할 책임준비금에 대응하는 보험계약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갱생계획에서 감면 등 기타 권리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규정할 수 없다(동법 제445조 제3항). 갱생절차 개시 후의 채무이행에 대응하는 채권부분은 절차개시 후의 계약상의 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이 공익채권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익채권으로서 간주되는 것이 타당하며 이런 의미에서 본 조항도 확인규정이다.¹⁵³⁾

150) 회사갱생법 제168조 제1항

151) 전게서, p. 318

152) 전게서, p. 319

153) 전게서, p. 320

사. 자산운용 관련 채권의 공익채권화

갱생특례법이 적용된 사안에서는 자산운용 등에 관련된 채권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상무(常務)에 기인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하여 공익채권화되어 수시변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갱생회사는 은행·증권사·부동산회사·자산운용사 등과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여 자산운용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계약에 의거한 채무를 변제금지의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자산운용의 기본구조가 붕괴하고 신용불안의 발생에 의해 갱생회사의 기업가치를 현저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최대채권자인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저해하여 생명보험회사로서의 유지·존속 자체에도 영향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갱생회사의 기업가치를 유지하고 보험계약자 등 채권자의 최대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갱생절차 개시 전을 원인으로 하는 채무 중 “상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공익채권으로 하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수시변제를 집행한다.

아. 관재업무에 대한 보험계약의 취급

갱생특례법이 적용된 사안에서는 갱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일부의 업무가 정지된다. 大和生命의 사례를 보면, 갱생절차개시결정에 따른 일부업무 정지 내용은 다음의 13개 업무이다.

- ① 신계약의 체결, 특약중도부가, 보험금 및 급부금액의 증액, 단체보험의 인수비율의 증가, ② 보험계약의 전환, ③ 보험계약의 해약접수, 보험계약 실효 시 환급금의 청구접수, ④ 보험금액 및 급부금액의 감액, 보험계약의 특약의 해약접수, 단체보험의 인수비율의 감소, ⑤ 계약자약관대출, ⑥ 보험계약 납입완제보험, 납제연금보험(단체보험은 제외) 및 연장정기보험으로의 변경, ⑦ 보험료 납입회수의 변경, ⑧ 연금개시일의 변경, ⑨ 보험료 납입기간의 변경, ⑩ 보험기간의 변경, ⑪ 보험·연금의 종류의 변경, ⑫ 연금의 일괄납입, ⑬ 보험계약자의 변경

상기 개시결정에서 보험계약에 대한 해약접수 업무는 금지되어 있다. 그런데 해약서류가 영업소나 지부에 있을 경우 또는 본사에 도달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는데 해약서류의 수령권한이 있는 본사에 접수된 것만 유효한 해약으로 간주된다. 大和生命 등 갱생처리를 한 보험사들 모두 갱생절차개시결정 전에 해약신청 서류의 수령권한이 있는 본사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한 해약으로 간주하여 해약환급금 지급을 하였다.

자. 재산평정

유형자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실제 사례에서 자산가치의 하락을 피하기 위해 또한 자산평가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 자산매각을 하여 그 매각가격을 평가액으로 하고 있다.

千代田生命의 사례를 보면, 관리인과 인수후보자였던 AIG와의 교섭대상은 기본적으로 자산, 부채, 무형기업가치(영업권 포함)에 대한 각 평가액이었다. 관리인 및 AIG는 성의있게 교섭했지만 많은 자산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관리인은 장기간에 걸쳐 막연하게 교섭을 계속하는 동안에 법원이 정한 절차일정에 쫓기게 될 때에는 교섭상 현저하게 불리하게 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해 관련당사자의 기본적인 합의를 얻어낸 후 쉽사리 가격합의 형성을 하기 어려운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그 평가액의 강제적 확정을 도모하였다. 자산평가에 이어서 무형기업가치에 대해서도 교섭이 평행을 달렸는데, 이 사안도 교섭정체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AIG 외에 교섭후보자 두 곳을 초빙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다. 즉, 관리인은 각 후보자에 대하여 상기 평가액 확정절차를 전제로 하여 갱생회사의 가치평가를 요구했다.

차. 보험가치평가

갱생특례법 제444조에서는 보험계약자의 권리 평가액에 대하여 평가기준을 두고 있고 생명보험회사에서는 계약자의 권리액은 갱생절차개시 시점에 피보험자를 위하여 적립된 책임준비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손해보험회사의 경우는 미경과보험

료적립금 금액과 갱생절차개시 시점에 해지환불을 위하여 적절한 보험료적립금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카.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

채무초과 상태인 도산보험회사의 재건을 위해서는 신용력의 보완을 위해 제3자 인수자에 의한 지원이 필수적이므로 인수자로 나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갱생회사의 인수·합병(M&A)을 추진하게 된다.

실제 두 회사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사례를 소개해 두고자 한다. 먼저, 千代田生命의 사례이다. 갱생회사가 영위하는 보험업에 있어서는 보험회사 자체에 경제적·사회적 신용의 존재가 불가결한데, 갱생회사의 경우에는 이미 수년 전부터 재무체질의 악화와 신용불안이 표면화되어 해약급증과 신계약 모집이 어려워져 4년여 간에 약 45%의 자산규모가 축소되고 업계 내에서의 시장점유율 지위는 급속하게 하락하였다. 상처입은 신용력의 회복이 최대의 과제이며 자력갱신이 어렵게 된 회사에 있어서는 회사의 신용을 외부에서 지원받을 인수자의 존재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보험회사 기업가치의 원천의 대부분은 보험사의 영업력에 있고 구체적으로는 전국의 영업망과 모집인 등의 영업직원이 영업력을 떠맡고 있다. 그런데 모집인은 소속사 이전 등 유동성도 높은 것이 현실이므로 갱생회사의 영업력을 유지해야 할 관점에서 조기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전관리인 및 관리인으로서의 구태여 입찰방식을 취하지 않고 일각을 다투듯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여, 갱생절차신청 후 10일째에, 갱생결정 후 6일째 날인 2000년 10월 19일에 AIG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하여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東京生命의 경우에는 1·2차 3개월여에 걸쳐 선정기준 및 조건을 진행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우선 1차 선정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2001년 3월 31일에 갱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렸는데 그 전 날까지 7개 그룹에서 우선협상대상자 후보 신청이 들어왔다. 7개 그룹에 입찰을 위한 예비실사를 시키는 것은 시간적·물리적으로 현실성이 떨어지므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제1차 선고를 하여 3개

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후보자로서 선정했다.¹⁵⁴⁾ 이 때 모든 참가그룹으로부터 갱생 계획 수행 시에 계약자보호기구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것과, 보험계약자의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최종제안서(Binding Bid Offer)를 제출하는 확약 문서를 받았다. 다음으로 3개월이 지난 2001년 6월 26일에 2차 선정을 하였다. 관리인으로서의 2차 선정 시에는 책임준비금의 삭감률 및 예정이율의 인하율 등을 중심으로 계약자보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최종후보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최종선정된 회사는 T&D보험그룹이며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책임준비금 삭감률은 전기질땡식 변경 후 0%, ② 예정이율은 2.6%로 인하, ③ 특별배당은 2006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의 각 사업연도 기계계약의 연간 수익의 80%를 권리변경 대상이 된 기계계약에 대해서 특별배당을 하며 이후에는 약관에 따라 계약자배당을 할당한다.

3. 갱생계획안의 주요 특색 및 적용사례¹⁵⁵⁾

가. 보험계약자의 지위 및 권리변경

보험회사의 갱생계획안에서 보험계약자는 우선적 갱생채권자로서 취급된다. 이는 보험업법상에서 보험계약자는 생명보험회사의 총재산에 대하여 선취특권을 갖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보험업법 제117조의2).

회사갱생법 제167조와 갱생절차특례법 제259조에서는 ‘갱생계획에서 정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전부 또는 일부의 갱생채권자 등 또는 주주(상호회사는 사원)의 권리의 변경’을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갱생채권자가 되는 보험계약자의 권리변경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회사갱생법 제168조1항에 의거, 갱생계획에 의한 권리변경의 내용은 동일 종류의 권리를 갖는 자 간에는 각각 평등하다. 여기서 보험계약

154) 선정된 3개 그룹은 AIG, GE에디슨생명, T&D보험그룹(太陽生命 및 大同生命)임

155) 갱생계획안의 주요특색에 대해서는, 松下淳一·事業再生研究機構(2014), 전거서, pp. 631-639를 인용·참조함

자가 속한 종류는 2순위에 속하여 있다. 회사갱생법 제168조1항 및 갱생절차특례법 제260조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종류별 권리의 순위’는 <표 IV-2>와 같다.

<표 IV-2> 갱생특례법상 각 채권의 권리 순위

| 순위 | 주식회사 | 상호회사 |
|-----|--------------------------------|-------------------------------|
| 1순위 | · 갱생담보권 | · 갱생담보권 |
| 2순위 | · 일반 선취특권 등 기타 일반우선권이 있는 갱생채권 | · 일반 선취특권 등 기타 일반우선권이 있는 갱생채권 |
| 3순위 | · 전호 및 차호 이외의 갱생채권 | · 전호 및 차호 이외의 갱생채권 |
| 4순위 | · 약정열후(후순위) 갱생채권 | · 약정열후(후순위) 갱생채권 |
| 5순위 | · 잔여재산의 분배 시 우선적 내용을 갖는 종류의 주식 | · 기금에 관계된 갱생채권 |
| 6순위 | · 전호 이외의 주식 | · 사원권 |

1순위는 갱생담보권이고, 2순위는 일반 선취특권 등 기타 일반 우선권이 있는 갱생채권(우선적 갱생채권)이며, 3순위는 1·2순위 및 4순위 이하에 속하는 것 이외의 갱생채권, 4순위는 약정후순위갱생채권, 5순위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을 갖는 종류의 주식, 6순위는 전호 이외의 주식이다. 갱생담보권이란, 갱생절차개시 시점에서 갱생회사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 등을 말하며, 갱생담보권은 우선적 갱생채권보다 유리한 취급을 받게 된다. 그 다음 순위가 일반우선권있는 갱생채권인데 보험계약은 이 범주 안에 포함된다. 근로자의 노동채권도 같은 종류인 우선적 갱생채권에 속해 있어 평등한 취급을 받는다.

나. 보험계약의 권리변경

보험계약의 권리변경의 주요 대상 및 내용은 책임준비금 등의 삭감, 예정이율의 변경, 조기해약공제 등이다.

1) 책임준비금 등의 변경

千代田生命은 조건변경기준일(갱생절차개시결정일인 2000년 10월 13일) 시점에서 책임준비금 등을 다음과 같이 삭감하였다. 책임준비금의 적립방식을 전기질멜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 보험 종류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의 인가¹⁵⁶⁾를 얻어 당해방식으로 변경한 후에, 변경 후 책임준비금 등을 기준으로 하여 본 갱생계획 및 갱생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삭감한다. 개인변액보험에 대해서는 변경기준일의 적립액을 책임준비금으로 취급한다. 또한 보전관리명령 발령일인 2000년 10월 9일 이후에 납입이 된 보험료에 관계된 책임준비금은 삭감하지 않는다. 또한 책임준비금의 삭감률은 개인연금보험, 재형보험, 재형연금보험의 경우는 0%, 상기 이외 보험은 10%로 하였다.

大和生命의 경우는 변경기준일(갱생절차개시결정일인 2008년 10월 17일)에 책임준비금을 <표 IV-3>과 같이 삭감하였다. 삭감률은 원칙적으로 10%로 하였고 책임준비금 적립방식을 전기질멜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 보험 종류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어 동 방식으로 변경한 후에 변경 후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본 갱생계획 및 소정의 방법에 따라 삭감하였다. 또한 보전관리명령 발령일 이후에 납입된 보험료에 관계된 책임준비금 등은 삭감하지 않는다.

갱생처리된 協榮生命, 東京生命 모두 책임준비금의 적립방식을 전기질멜식으로 변경하였다. 삭감률은 千代田生命과 大和生命이 10%, 協榮生命이 8%, 東京生命은 삭감을 하지 않았다. 大和生命의 갱생계획안에서 高예정이율계약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율을 적용하였다. 여기서 高예정이율계약이란, 갱생절차개시결정일 시점에서 과거 5년간 예정이율이 기준이율(3%)을 초과해 있었던 계약을 말하는데, 보상률은 “高예정이율계약의 보상률 = 90% - [(과거 5년간의 각 연도의 예정이율 - 기준이율)의 총화 ÷ 2] ” 이고, 삭감률은 “高예정이율계약의 삭감률 = 100% - 高예정이율계약의 보상률” 을 적용하였다.

156) 책임준비금 적립방식 변경은 보험업법 제123조에 의해 주무관청 인가가 필요함

〈표 IV-3〉 大和生命의 책임준비금 삭감 현황

| 구분 | | 개인보험 | 개인연금 | 단체보험 | 단체연금 | 재형보험 | |
|-----------|--------|------|------|------|------|------|----|
| 책입 준비금 | 보험료적립금 | 10% | 10% | 10% | 10% | 10% | |
| | 미경과보험료 | 10% | 10% | 10% | - | 10% | |
| 지급 준비금 | 보험금 | 생존 | 0% | 0% | - | 0% | 0% |
| | | 비생존 | 0% | 0% | 0% | 0% | 0% |
| | 연금 | 0% | 0% | 0% | 0% | 0% | |
| | 해약환급금 | 0% | 0% | - | 0% | 0% | |
| | 실효 | 10% | 10% | - | - | - | |
| 계약자배당준비금 | | 10% | 10% | 0% | 10% | 10% | |

주: 高예정이율 계약(연3.0% 초과)의 경우에는 별도로 산출된 삭감률을 적용함
 자료: 大和生命, 경쟁계획안, p. 29

2) 조기해약공제제도

갱생처리된 모든 보험회사가 조기해약공제제도에 대해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조기해약공제는 〈표 IV-4〉 조기해약공제를 적용하는 사유에 의하여, 〈표 IV-5〉의 조기해약공제의 대상액에 〈표 IV-6〉의 조기해약공제율을 연차별로 달리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다.

〈표 IV-4〉 조기해약공제를 적용하는 사유

| 보험 종류 | 조기해약공제 적용 사유 |
|-----------------|--|
| 개인보험· 개인연금보험 | 1. 해약(특약만 해약하는 경우도 포함) |
| | 2. 감액(특약만 감액하는 경우도 포함) |
| | 3. 실효 |
| | 4. 납제보험 및 납제연금보험으로의 변경 |
| | 5. 연금의 일괄지급(선납) |
| | 6. 전환일 또는 연금 등 이행일에 대출금 잔액이 있는 경우 전환 가격이 될 적립금에 의한 대출금의 원리금의 변제충당 |
| | 7. 연금개시일에 대출금 잔액이 있을 경우 연금적립금에 의한 대출금의 원리금 변제충당 |
| | 8. 연금개시일에 대출잔액이 있고 새로 기본연금액을 정하는 때 회사가 정한 금액 미달 시 연금적립금잔액의 일시금 지급 |
| | 9. 적립된 배당금의 지급 |

자료: 大和生命, 경쟁계획안, p. 34

〈표 IV-5〉 조기해약공제 대상액

| 보험 종류 | 조기해약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
|------------------|-------------------------------------|
| 개인보험 · 개인연금보험 | 1. 해약환급금 |
| | 2. 책임준비금 |
| | 3. 선납보험료(일시납 포함)의 미경과 부분 |
| | 4. 적립배당금 |
| | 5. 미지급연금의 현가에 상당하는 금액 · 연금수령기시적립금 |
| | 6. 개인연금세제적격특약: 변경기준일 시점 적립금액(이자 포함) |
| | 7. 고지의무위반 및 중대사유에 의한 해약환급금 |
| 단체보험 | 1. 해약환급금 |
| | 2. 탈퇴급부금 |
| | 3. 배당금 |
| | 4. 연금기금가격 또는 미지급연금의 현가상당 부분 |
| | 5. 월납의 일시납보험료의 미경과 부분 |
| 단체연금보험 | 1. 환급금 |
| | 2. 일시금(연금을 대신하는 일시금을 포함) |
| | 3. 연금수령기시적립금 |
| | 4. 연금수령인이 신청한 잔여보증기간 대응의 연금현가 |
| | 5. 배당금 |
| | 6. 인수비용의 변동에 따라 지급하는 책임준비금 |

자료: 大和生命, *갱생계획안*, p. 37

〈표 IV-6〉 연차별 조기해약공제 공제율 비교

(단위 :%)

| 구분 | 千代田生命 | 協榮生命 | 東京生命 | 大和生命 |
|------|-------|------|------|------|
| 1년차 | 20 | 15 | 20 | 20 |
| 2년차 | 18 | 14 | 18 | 18 |
| 3년차 | 16 | 12 | 16 | 16 |
| 4년차 | 14 | 10 | 14 | 14 |
| 5년차 | 12 | 8 | 12 | 12 |
| 6년차 | 10 | 6 | 10 | 10 |
| 7년차 | 8 | 4 | 8 | 8 |
| 8년차 | 6 | 2 | 6 | 6 |
| 9년차 | 4 | - | 4 | 4 |
| 10년차 | 2 | - | 2 | 2 |

자료: 松下淳一 · 事業再生研究機構(2014), pp. 634~635

위 4개 보험회사의 갱생처리 중에서 千代田生命, 東京生命, 大和生命은 삭감기간, 삭감률이 동일한 데 비하여 協榮生命은 삭감기간이 짧고 삭감률도 초년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되어 있다. 이는 協榮生命의 재정형편이 다른 회사보다 상대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계약자보호를 좀 더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 특별배당

千代田生命에서는 부동산의 매각액을 기초자금으로 하는 특별배당이 규정되었고, 協榮生命에서는 대출 및 부동산에 대하여 환가회수액을 기초자금으로 한 특별배당이 규정되어 있었다. 東京生命에서는 일정기간 동안 연간사업수익의 80%를 기초자금으로 하고 미처분자산이 평가액보다 고가로 매각된 경우의 차액분 및 구 임원 등으로부터 배상금이 회수된 경우의 특별배당이 규정되어 있다.

한편, 계약자보호기구로부터 자금원조가 집행된 大和生命의 경우에는 특별배당은 없었다.

다. 보험계약 이외의 채권의 권리변경

1) 노동채권

노동채권도 회사갱생법 제168조1항 및 갱생절차특례법 제260조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선적 갱생채권에 속하여 보험계약 채권과 평등을 도모하여야 하므로 자산훼손율을 반영하여 노동채권의 면제율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산회사의 자산훼손율에 따라 면제율이 상이하다. 協榮生命, 東京生命, 大和生命은 모든 노동채권에 대해서 동일률을 적용하는데 반해서, 千代田生命의 경우에는 노동채권의 종류별로 각기 다른 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갱생처리된 4개사의 회사별 적용률을 비교해 보면 <표 IV-7>과 같다.

〈표 IV-7〉 갱생처리 보험회사의 노동채권 면제율 비교

| 구분 | 千代田生命 | 協榮生命 | 東京生命 | 大和生命 |
|-------|--|---------|-------------|------------|
| 퇴직연금 | · 10년보중 종신 연금 선택 시 : 37.91% 면제 · 10년 확정연금 선택 시: 25.27% 면제 | · 8% 면제 | · 15.76% 면제 | · 24.8% 면제 |
| 퇴직일시금 | · 37.91% 면제 | · 8% 면제 | · 15.76% 면제 | · 24.8% 면제 |

자료: 각사, 갱생계획안에서 작성

2) 일반갱생채권의 권리 변경

보험회사의 갱생계획 처리 시 회사갱생법 및 갱생특례법의 규정에 따르면 앞서 〈표 IV-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반갱생채권의 권리 순위는 보험계약채권이나 노동채권에 후순위이다. 한편, 보험회사의 목적상 보호필요가 큰 우선적 갱생채권인 보험계약채권과 노동채권역도 삭감 또는 부분 면제조치하고 있으므로 이에 후순위이고 보호필요성이 덜한 일반갱생채권에 대해서는 갱생처리 4개사 모두 전액 면제조치를 하였다. 또한 후순위갱생채권(열후적갱생채권)에 대해서도 갱생처리 4개사 모두 전액 면제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편, 東京生命의 경우 수재보험이 일반갱생채권에 포함됨을 명기하여 수재보험은 전액 면제조치하고 있다. 수재보험은 보험계약이기는 하나 보험업법상 선취특권을 갖고 있지 않으며¹⁵⁷⁾ 회사갱생절차상으로도 우선적 갱생채권이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協榮生命의 경우에는 후순위대출에 대해서 갱생계획안에 특기하고 있는데, 후순위대출은 회사갱생절차에서 일반갱생채권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전액 면제가 되어 변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千代田生命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의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50%만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는 변액보험 관련 소송이 빈발하고 있어 피해자보호 관점에서 이와 같은 취급이 이루어진 것이다.¹⁵⁸⁾

157) 보험업법 제117조의2 제1항

158) 櫻井忠明(2001), “更生特例法の運用状況”, 金法, 第1610号, p. 44

3) 주주의 권리변경

주주의 권리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먼저, 갱생회사는 갱생계획인가결정 확정일의 익일(또는 지정일 중 늦은 날)에 무상으로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주식취득과 동시에 전부소각하며 자본금액을 감소시킨다. 다음으로 신주예약권의 권리변경을 한다. 갱생회사가 발행한 신주예약권 전부를 무상으로 취득하고, 보유하게 된 신주예약권 전부를 취득과 동시에 소각한다. 다음으로 모집주식의 발행이다. 갱생회사는 보통주 등 모집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하여 주식을 모집하고 갱생계획인가결정 확정일의 익일(또는 지정일 중 늦은 날)에 납입하여 납입된 자금은 자본금 및 자본준비금에 계상한다.¹⁵⁹⁾ 이 때 모집주식은 인수하는 회사에 할당한다.

協榮生命과 大和生命은 위와 같은 프로세스로 주주의 권리변경을 하였으나 千代田生命과 東京生命은 상호회사이기 때문에 먼저 상호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한 후 인수회사에 신주발행, 주식할당 및 인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라. 계약자보호기구의 자금원조

보험회사의 도산처리 시에는 책임준비금의 삭감, 예정이율의 인하 등 보험계약자의 권리가 삭감되고 보험계약자 자신이 손실부담을 지게 된다. 그러나 반드시 보험계약자에게 자기책임을 묻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도산처리 시에 계약조건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재보험계약을 제외한 모든 보험계약에 대해 책임준비금의 90%가 계약자보호기구로부터 보호된다. 이 때 영업권을 포함한 자산의 훼손이 심각한 경우에는 책임준비금 등의 부채를 일부 면제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초과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자보호기구로부터 자금원조가 검토될 수 있다. 갱생특례법이 적용된 사안에서는 大和生命만 자금원조가 이루어졌다. 大和生命은 계약조건변경, 자산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에 의한 영업권

159) 보험업법상 법정 자본금은 10억 엔이나, 일반적으로 실제 자본금 납입은 지급여력 확보가 가능한 수준으로 함

평가 반영에도 불구하고 채무초과 해소에 달하지 못해 계약자보호기구에 자금원조를 신청하게 되었다. 大和生命의 자금원조의 사례는 <표 IV-8>과 같다.

<표 IV-8> 大和生命의 자금원조액 산정 사례

| 구분 | 산정 내역 |
|-------|---|
| 자금원조액 | = A - B + C |
| A | 보상대상계약 관련 책임준비금에 보험계약자보호특별조치명령에서 정한 율을 곱한 금액 · 高예정이율계약 이외 : 90% · 高예정이율계약: 아래 산식에 의거 산출된 금액 【90% - (과거 5년간 각 연도 예정이율 - 기준이율)의 총합 ÷ 2】 |
| B | 계약자보호기구의 '자산·부채사정매뉴얼'에 의거한 확인재산평가의 자산 가액 중 갱생채권액·조건변경대상 외의 보험채권액을 공제하고 무형재산 (영업권)을 가산한 금액 |
| C | 보험계약 이전 등의 원활한 실시예 소요된다고 계약자보호기구가 인정한 비용 |

V. 결론

1. 행정절차 방식과 갱생절차 방식의 도산처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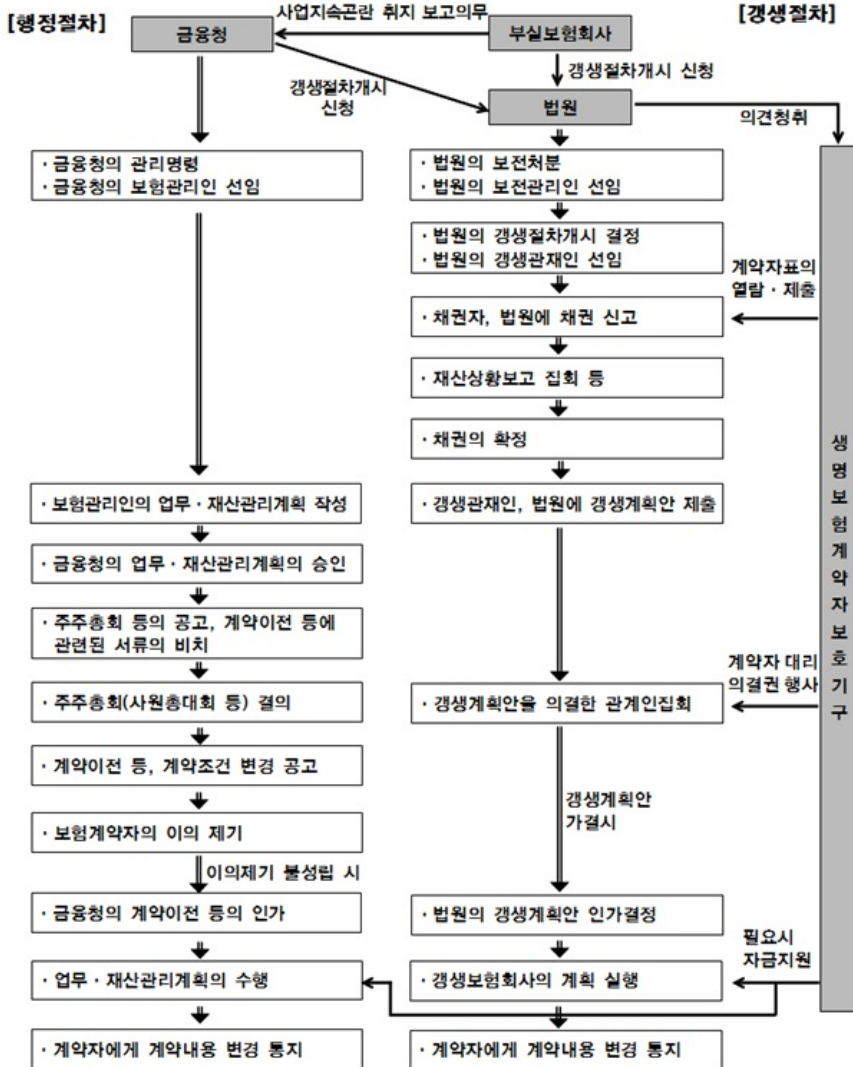
가. 행정절차 방식과 갱생절차 도산처리 방식의 선택적 사용

보험회사에 대한 도산처리 방법으로 보험업법에 의거한 행정절차 방식 이외에 갱생절차특례법에 의거한 사법절차 방식이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도산처리에 효율적이고 계약자보호상 유리한 것일까?

보험업법에 의거한 계약이전 방식의 경우에는 일반채권자를 위하여 상당한 책임 재산을 이전회사(도산회사)에 유보시켜 두어야 하기 때문에(보험업법 제135조 제3항), 계약자에게만 보험금액 등 채권삭감을 하는 행정절차 방식은 갱생절차 방식에 비하여 사용 빈도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행정절차에 의한 도산처리를 하는데 적합한 경우로는 다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¹⁶⁰⁾ 첫째로, 일반채권자가 그 채권을 전부 포기하고 채권자가 보험계약자만 남은 경우, 둘째로 일반채권자 수가 적고 채권의 감축률도 낮은 등 채권 감축에 대해 일반채권자 전원 또는 다수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경우 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160) 金融審議會第2部会(1999. 12), 保険会社のリスク管理と倒産法制の整備, p. 16

〈그림 V-1〉 보험사 도산처리에 대한 행정절차와 사법절차 개념도



자료: 生命保險契約者保護機構, "生命保險会社の保險契約者保護制度Q&A"
 (<http://www.seihohogo.jp/qa/qa4.html>)

위와 같이 명백하게 선택적으로 보험업법에 의거한 행정절차 방식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부분적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업법 제241조 제1항에 의거 보험회사의 업무의 운영이 현저하게 부적절하여 보험사업을 지속할 경우 보험업의 신뢰성을 훼손하거나 공익에 반하게 되는 경우 내각총리대신의 명령 처분으로서 보험관리인에 의한 관리명령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일단 관리명령 처분을 받아 보험관리인에 의해 회사의 재산상황이나 경영실태를 명확히 파악한 후에 필요한 경우 갱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방식의 운영도 가능하다.

나. 계약조건 변경 등 계약자보호 측면 비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험회사의 도산처리 방식은 선택적으로 보험업법에 의거한 행정절차 방식이나 갱생절차특례법에 의거한 사법절차 방식 모두 사용 가능하지만 보험업법이 보험계약자 이외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권리변경이나 권리제한 등의 절차 규정이 정비되지 않는 한 계약자보호상 갱생절차 방식의 사용이 선호될 것이다.

〈표 V-1〉 행정절차와 갱생절차 방식의 계약조건 변경 비교

| 구분 | | 日産生命 | 東邦生命 | 第百生命 | 大正生命 |
|----------------|--------------|---------------|---------------|---------------|---------------|
| 행정 절차 적용 | 책임준비금 삭감 | 삭감 없음 | 원칙 90%로 삭감 | 원칙 90%로 삭감 | 원칙 90%로 삭감 |
| | 예정이율 인하 | 2.75%로 인하 | 1.5%로 인하 | 1.0%로 인하 | 1.0%로 인하 |
| | 조기해약 공제기간 | 6.5년 | 8년 | 10년 | 9년 |
| 구분 | | 千代田生命 | 協榮生命 | 東京生命 | 大和生命 |
| 갱생 절차 적용 | 책임준비금 삭감 | 원칙 90%로 삭감 | 원칙 92%로 삭감 | 삭감 없음 | 원칙 90%로 삭감 |
| | 예정이율 인하 | 1.5%로 인하 | 1.75%로 인하 | 2.6%로 인하 | 1.0%로 인하 |
| | 조기해약 공제기간 | 10년 | 8년 | 10.5년 | 10년 |

갱생방식이라 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특별히 불리하거나 가혹한 방식이 사용되지 않도록 갱생특례절차법에서 보험계약자보호 장치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하였다. 또한 보험계약의 권리삭감 즉 책임준비금 삭감이나 예정이율의 변경, 높은 예정이율 계약에 대한 추가적 삭감 또는 조기해약공제의 적용 등을 보면 보험업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보험업법 적용에 의한 행정절차 방식이나 갱생절차 방식 모두 보험계약자보호 측면에서는 다른 점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갱생절차 방식을 적용한 東京生命의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을 삭감하지 않고 있다.

다. 직원의 고용승계와 노동채권 일부면제

보험업법에 의거하여 행정절차의 일환으로 계약이전을 한 日產生命, 東邦生命, 第百生命, 大正生命의 경우 보험계약은 다른 보험회사에 전부 포괄계약 이전되었으나, 기존회사의 임직원은 기존법인의 청산이나 흡수합병 등 해산됨으로 인해 실직하게 되었다.

그러나 보험업법에 의거하여 타사에 포괄계약이전이나 사업양도 등을 하는 경우 대부분의 도산회사 직원들은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 신설된 あおば生命에 모든 계약을 포괄이전한 日產生命은 바로 법인해산을 하였고, 메뉴라이프에 신계약의 사업양도를 한 第百生命은 기계약의 유지관리회사로 존속하게 되었으나 최소한 유지관리인력 외에는 전부 실직하게 되었다.

그러나 갱생처리를 한 千代田生命, 協榮生命, 東京生命, 大和生命의 경우에는 기존 법인이 해산하지 아니하고 회생을 한 것이므로 사무효율화를 위한 인력구조조정 대상자 이외에는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協榮生命의 경우에는 갱생절차개시일 당시에 재직했던 내근종합직·영업종합직·사무직 직원 총 2,901명에 대해서 희망퇴직을 실시하여 53%인 1,537명이 퇴직하여서, 우선적 갱생채권인 노동채권(퇴직금채권 및 퇴직연금채권)의 8%에 대해서 면제조치를 받아 채권삭감을 하였다. 노동채권에 대해 千代田生命이 25~38%, 東京生命이 15.76%, 大和生命이 24.8%를 면제조치 받았다.

갱생처리된 도산회사의 경우 갱생계획안에서 노동채권의 삭감 내용이 반영된 채법원의 허가를 받게 되나, 보험업법에 의거 행정절차로 도산처리를 한 회사의 경우에는 감독당국이 노동채권에 대해 삭감 등 관여를 할 수 없으므로 고용은 유지되지 못하지만 노동채권은 보장을 받고 있다.

2. 일본 도산처리제도의 특징 요약

일본 보험회사에 대한 도산처리제도의 특징을 요약해 보면 다음 여섯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로, 도산처리 시스템 설계에 도산회사에 대한 계약자보호와 건전회사의 계약자보호를 양립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이다. 일본에서 도산처리 시스템인 ‘지불보증제도(보험계약자보호제도)¹⁶¹⁾’를 설계할 때 논란이 되었던 것은 지불보증제도가 과연 적법하고 필요한 것인가라는 점과 도산회사의 계약자보호와 건전회사의 계약자보호를 어떻게 양립할 것인가라는 점이었다. 지불보증제도의 타당성으로 보험업의 공공성, 국민경제적 의의, 보험업의 신뢰성의 유지 등이 주장되곤 하나 이러한 대의 명분으로는 지불보증제도를 위한 각출금의 지출을 정당화할 수 없고 그 적법성에 의문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¹⁶²⁾ 예컨대, 독일에서는 생명보험분야에 도산 시 계약자보호제도가 없고 손해보험분야에는 자동차강제보험에만 존재하며, 프랑스의 경우에도 손해보험분야에선 자동차·수립분야의 강제보험에만 동 제도가 존재하고 모든 분야에 도산 시 계약자보호제도가 존재하고 있지는 않다.¹⁶³⁾ 그러나 일본에서 대다수의 학자 및 행정당국에서는 정보 약자인 개인계약자의 보호 필요성에는 이의를 제기하는 자가 거의 없었다. 문제는 그 보호의 정도와 수단인데 보험회사가 도산 시 개인 계약자의 자기책임 부담이 전혀 없이 전액을 지불보증제도에서 보증해 준다고

161)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제도와 같은 의미임

162) 出口正義(1998), “保險会社の破綻と国の責任”, *上智法学論集*, 41卷4号, p. 89

163) 독일, 프랑스에서 과거 여러 차례 학자나 행정당국에 의해 계약자보호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대안이 제기되기는 하였음

하면 보험계약자(나아가서는 보험회사 및 감독당국)의 모럴헤저드를 유발하게 될 것이므로 보험계약자보호의 이념도 자기책임의 이념과 밸런스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¹⁶⁴⁾ 즉, 도산회사의 계약자보호와 지불보증제도에 자금을 각출하는 건전한 회사에 가입된 계약자보호가 양립되기 위해서는 도산회사의 계약자에 대한 자기책임 원칙을 확립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논쟁을 거쳐 일본의 지불보증제도는 「(도산회사의) 보험계약자보호」, 「(도산회사 가입자의) 자기책임」, 「(도산회사와 건전회사의) 보험계약자 간의 공평성」이라는 세 가지 이념의 밸런스를 갖춘 제도로 설계되어 제도의 필요성과 적법성의 문제를 모두 충족시켰다고 할 수 있다.¹⁶⁵⁾

둘째로, ‘최소 비용의 원칙’에 의하지 않고 ‘보험계약의 유지를 통한 위험보장의 지속’이라는 대원칙을 관철¹⁶⁶⁾하여 청산·파산을 배제하고 구제회사를 찾아 계약이전을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은행 등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금융재생법 제3조제6호에 의거 ‘최소 비용의 원칙’ 즉 금융기관의 도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대원칙이 법상 명문화되어 있다.¹⁶⁷⁾ 이는 은행의 경우에는 은행예금을 한 자는 예금반환채권자이고 은행은 예금반환의 채무자이어서 도산 시 은행이 예금채권을 반환하면 그 관계가 소멸되므로 최소 비용의 원칙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보험의 경우에는 파산법상 파산을 적용하여 파산절차개시 결정을 할 경우 3개월이 경과하면 보험계약이 실효처리 되므로 그 시점의 해지환급금(보험료적립금)을 지급하고 법인을 해산한다고 하면, 계약이전이나 인수합병 등보다 훨씬 최소 비용으로 처리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처리된 후 타보험사와 새로

164) 佐野誠(2002. 12), “損害保険における支払保証制度”, *保険学雑誌*, 第579号, pp. 175~176

165) 전개서, p. 176

166) 지불보증제도연구회의 좌장인 倉沢康一郎 교수는 정부 자문기구인 ‘금융시스템개혁 연합협의회’에서 보험의 특수성을 주장하여 Payoff를 적용하지 않고 보험독자적인 방법으로 도산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인정받았다고 기술하고 있음(生命保險協會(1998. 7), “支払い保証制度について(강연록)”, p. 8)

167) 금융기관 도산처리에 있어 ‘최소 비용의 원칙’에 직접적인 도산처리비용 뿐만 아니라 도산한 경우의 실업의 증가나 지역경제에 대한 악영향 등 사회적·경제적 비용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도 있으나, 국가 전체의 정책판단이나 금융위기적 상황 등 고도의 정책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협의의 비용으로 판단되고 있음(比護正史(2011), p. 94)

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손실 뿐만 아니라 보험료 인상이나 위험증가에 따른 가입거절 등도 있을 수 있어 결국엔 위험보장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손해보험의 단기계약의 경우에는 미경과보험료를 해지환급금으로 받아 타사에 재가입할 수도 있겠지만 생명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상품의 경우에는 타 회사에 동일조건으로 재가입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은행 등 여타 금융기관은 최소 비용의 원칙을 적용하지만 보험은 이를 적용하지 않고 보험업법에 의한 독자적인 도산처리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로, 일본의 도산처리 시스템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상보험금의 직접지급(Payoff)을 인정하지 않고 도산회사나 구제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또는 계약자보호기구에 의한 계약인수(직접 또는 자회사)만 인정한다는 점이다. 제도설계 시에 도산회사의 계약자보호는 보험계약의 지속적 유지를 통한 위험보장의 지속이라는 측면을 중시하였고, 특히 생명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법정 파산이나 법인해산을 하여 계약자에게 보상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보험보장의 중단을 초래하며 위험의 증가 때문에 다른 보험회사로 계약을 옮겨 계속적으로 보장을 받기도 어려운 구조이다. 결국엔 계약이전이나 인수·합병의 형식으로 구제회사가 출현할 것이 기대되므로 직접지불제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생명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구제회사가 나타났으나 第一火災保險會社の 경우에는 구제회사가 나타나지 않아 계약자보호기구가 계약을 인수하여 관리하였는바, 향후 손해보험회사의 계약구조 특성상 구제회사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단기계약 중심이므로 직접 지급하는 Payoff 시스템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넷째로, 일본의 도산처리 시스템은 보상보험금에는 상한을 두지 않으나 보증비율은 강제보험을 제외하고는 보험계약 채권액의 일정비율(80~90%)로 제한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즉 정률보장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는 영국의 제도에서 볼 수 있다.

다섯째로, 일본의 보험계약자보호제도에 각출하는 민간보험회사의 각출금은 최대부담금이 확정되어 있어 최대부담금 이상의 각출은 하지 않으며 자금이 필요한 경우 국가재정으로 공적자금을 출현하기로 하였다.¹⁶⁸⁾ 이 정부 지원자금의 성격은 사후에

168) 일본 생보업계 전체의 최대부담금은 누계로 5,600억 엔임

보험회사로부터 회수하지 않는 순수한 정부재정 자금의 성격이다.

여섯째로, 일반채권자의 권리도 변경할 수 있는 갱생절차에 의한 처리특례를 도입한 점이다. 물론 보험계약자의 자기책임 원칙은 보험업법에 의한 행정절차 처리에서도 시행되고 있었지만, 보험업법이 일반채권자 특히 후순위채권자의 채권액에 대한 권리변경을 하지 못함으로써 계약자 채권은 삭감하고 일반채권자는 보호한다는 비난과 함께 원활한 도산처리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갱생특례법을 적용하게 됨으로써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비롯한 모든 채권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저비용으로 신속한 구조조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표 V-2〉 보험업법과 갱생특례법상의 도산처리 시 자금원조액 비교

(단위: 억 엔)

| 구분 | 보험업법상 도산처리 | | | | 갱생특례법상 도산처리 | | | |
|-----|------------|-------|-------|-----|-------------|----|----|-----|
| 회사명 | 日産 | 東邦 | 第百 | 大正 | 千代田 | 協榮 | 東京 | 大和 |
| 원조액 | 2,000 | 3,663 | 1,450 | 267 | 0 | 0 | 0 | 277 |

위와 같은 일본의 갱생처리 방식은 미국의 전미보험감독관협회(NAIC)가 1977년에 제정한 모델법인 「보험회사 갱생·청산 모델법(Insurers Rehabilitation and Liquidation Model Act)」을 모방하고 있는데, 미국의 갱생·청산모델법에서도 보험회사가 도산하였을 때 최초로 갱생명령 또는 청산명령을 내리며 법원의 보전명령, 갱생절차 특히 갱생계획 중의 보험계약 변경이나 조기해약공제 등이 있어 일본과 미국의 갱생처리 절차는 거의 흡사하다.

위와 같이 일본의 도산처리제도는 미국, 영국 등 제 외국의 제도를 흡수하여 국제적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도산회사의 계약자보호와 건전한 회사의 계약자보호와도 균형을 맞추어 제도적 불합리성이나 보험회사 및 계약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수많은 보험계약자나 일반채권자 등 채권자들의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조정·처리하면서 현존하는 건전보험사들의 경영악화나 연쇄적인 도미노 도산을 방지함으로써 보험업계로부터 제도에 대한 지지를 받았고, 또한 정부의 최후의 재정부담 지원을 제도화함으로써 향후 대형 도산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우리나라 도산처리제도에 주는 시사점

보험회사에 대한 우리나라의 도산처리 시스템을 일본제도에 비추어 살펴보면 일본의 사례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들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로, 계약자 자기책임원칙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1인당 보험금 지급한도가 5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 5천만 원 이내에서 전액 지급보장을 한다면 가입액이 5천만 원 이내에서는 모럴해저드를 유발하는 상품을 제조하여 계산기초율이 부적절한 상품이라 할지라도 가입자에게 유리하다면 이런 상품이 대거 유통될 수 있다. 만일에 계약자가 도산 시 부분책임을 지는 것을 알고 있다면 신중한 선택을 하기 위하여 거래하고자 하는 회사의 안전성과 지급여력상태, 신용도 등을 충분히 따져 가입하게 될 것이다.

둘째로, 우리나라는 1인당 보상한도가 정액 5천만 원이나, 연금보험 등의 경우에는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보험계약들도 많다. 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는 보험회사 도산 시 사망보장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반해 일본의 경우에는 사망보장 외에도 연금보장 즉 노후생활보장까지 포함하여 보장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일본의 계약자보호제도에서는 보장의 상한액을 두지 않으며 다만 계약자에게 자기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하여 보상액을 정률보호 방식으로 하고 있다.¹⁶⁹⁾ 일본의 계약자보호기구의 지급보장의 범위에 대한 개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로, 일본은 계약자보호기구가 도산회사의 가입자에게 직접 보상보험금을 지급하는 Payoff를 시행하고 있지 않으나 우리나라는 직접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는 타 보험사로의 계약이전이나 인수합병 방식으로 도산처리하고 있을 뿐 개별보험계약자 전부에게 계약채무인 보상보험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다. 보험의 특성상 파산절차를 진행하여 개별적으로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169) 미국 NAIC모델법에서는 생명보험분야의 보험금지급보장의 상한을 계약자당 30만 \$, 해지환급금은 10만 \$ 보장이며, 뉴욕주보험법(제7708조)에서는 해지환급금을 포함하여 50만 \$가 상한임. 보험보증기구가 Payoff 시에는 책임준비금의 100%를 보장하나 실제 갹생절차에서는 Account Value(책임준비금 등)가 재구성되어 감액 당하게 되고, 과도하게 예정이율이 설정된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을 거쳐 예금보험기구가 계약인수하는 회사에 대한 자금원조액 산정 시 이자채무를 조정함

사례는 외국에서도 생명보험분야에서는 거의 찾기 어렵고 일부 손해보험회사에서 종종 나타나는 일이다. 자칫 파산처리된 보험사와 비슷한 순위의 회사에서 도미노 도산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 및 장기보험 보험회사는 계약자보호기구가 직접 보상을 지급하는 Payoff를 시행할 수 없는 연유이다. 우리나라 예금자보호법에서는 은행을 비롯한 여타 금융기관의 파산처리제도상 파산도 염두에 둔 시스템이 되어 있으나 보험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Payoff는 불가하고 계약이전이나 인수합병 방식이 중심이 되어야 하므로 Payoff 원칙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로, 파산처리 방식의 선택에 있어 예금자보호법상의 최소 비용의 원칙은 보험에는 적용배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계약자이익 우선 원칙 속에서 최소 비용의 원칙을 고려사항 정도로 적용하는 등의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섯째로, 위와 같은 조건들이 개선된다면 갱생처리 방식의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갱생처리특례법의 적용을 통해 보험계약자 및 일반채권자의 권리변경을 사법적 구속력에 의해 신속하게 처리해 처리비용 최소화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부수적으로는 예금보험료의 절감을 도모할 수 있어 예금보험 재정의 안정화와 보험회사들의 각출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경우에 연쇄적 파산과 중대형 보험사의 파산으로 파산처리 자금의 고갈을 초래하여,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초저금리의 장기화, 이차역마진의 심화, 엄격한 국제회계기준의 적용 등 경영환경의 악화로 다수회사의 연쇄적 파산이 야기된다면 파산처리에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보험업법에 의한 행정절차 처리 외에 선택적으로 갱생처리특례법에 의한 파산처리도 가능하도록 선택지를 확대·정비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파산 관련 법률체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보험회사 파산 관련 법제는 기본적으로 보험업법에 규정하고 있고 그 조문 수도 200여 개 이상에 달하는 방대하고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들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제는 보험업법상 20여 개 조문에 지나지 않아 절차와 방법이 일본에 비하여 매우 간략화되어 있고 게다가 파산 관련 행정절차의 많은 부분이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간략히 규정되어 있어 미흡한 점들을 찾아 보완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예

컨대 ‘업무·재산의 관리’에 관한 조문 규정도 일본은 16개조에 달하는 상세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2개 조문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도산처리가 계약이전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관리인이 수행하는 역할과 절차가 많음에 비하여 그 세부적인 규정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¹⁷⁰⁾

일본의 예금보험법은 보험을 다루지 않으므로 보험분야의 도산법제는 보험업법 내에서 미국 등 외국의 도산법제의 장점을 수용하여 보험 독자적인 도산법제로 정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예금자보호법은 일본의 예금보험법과 법조문 체계가 매우 흡사하다.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법이 도산 시 보험계약자보호 충실화 차원에서 일본의 보험업법이나 미국의 보험업법을 참고할 부분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보험회사 도산처리 절차와 내용을 소개하는데 그치므로 미국 등 외국의 제도를 다루진 않았고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비교분석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한·일 간 그리고 외국 법제와의 비교를 통해 계약자보호를 위한 도산처리 법제가 보다 충실하고 정교하게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70) 미국 뉴욕주보험법에서도 보험회사의 도산처리 관련 규정은 200여 개에 달하며 갱생, 청산, 인수, 합병, 생명/손해별 계약자보호기구 등 상세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참고문헌

- 更生会社大和生命保険株式会社(2008), *更生計画案(東京地方裁判所2008年ミ)*, 第12号 会社更生事件
- 金融審議会第2部会(1999. 12), *保険会社のリスク管理と倒産法制の整備*, 金融庁大蔵省銀行局保険研究会編(1992), *新しい保険事業の在り方(保険審議会答申)*, 東京, 財経詳報社
- 東邦生命保険相互會社(2000), *第52回 定時総大会 參考資料*
- 保険研究所(1998. 2), “支払保証制度の整備で考え方を示す”, *週刊インシュアランス(生保版)*, 第3787号
- 保険業法研究会編(1986), *最新保険業法の解説*, 東京, 大成出版社
- 保険監督法研究會編(1994), *生命保険保證基金に関する諸問題*, 財團法人生命保険文化研究所
- 比護正史(2011), *金融破綻處理の手續法的考察 : わが国の実務および米国法の視点から*, 一橋大學 博士論文
- 杉下智子(2010), “生命保険会社の更生手続きと保護機構による契約者保護”, *生命保険論集*, 第171号
- 山名規雄(2000), “保険業法及び金融機関等の特例等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概要”, *金融法務事情(1583号)*
- _____ (2000. 7), “保険業法及び金融機関の更生手続きの特例等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概要”, *ファイナンス*
- 山本和彦(2001), “保険會社に對する更生特例法適用の諸問題”, *民商*, 第125卷3号
- 山下友信(2005), *保険法*, 東京, 有斐閣
- 生命保険協會(1998. 7), “支払い保証制度について(講演録)”
- _____ (2009), *生命保険協會百年史*, 東京
- 石田満(1992), “会社の管理・保険契約の移転・保険保障基金”, 竹内昭夫編, *保険事業の在り方(上巻)*

- 松下淳一・事業再生研究機構編(2014), “新更生計畫の實務と理論”, *商事法務*
- 植村信保(2008), *平成生保危機の真実*, 東京, 日本經濟新聞出版社
- 神谷高保(1993), “国際的な保險事業者の強制管理及び保險契約の包括移轉の研究”,
損害保險研究, 第55卷1号
- _____ (1994), “保險事業者の強制管理に関する研究”, *損害保險研究*, 第55卷4号
- 安居孝啓(2006), *最新保險業法の解説*, 東京, 大成出版社
- 櫻井忠明(2001), “更生特例法の適用狀況”, *金融法務事情*, 第1610号
- 佐野誠(2002. 12), “損害保險における支払保証制度”, *保險学雑誌*, 第579号
- 財部誠一(1997. 6), “なぜ日産生命は倒産したのか?”, *生保倒産!あなたの生命保險はど
うなる?*, 日本実業出版
- 田口 誠(2001), “生保會社の更生手続きと保險契約者の保護”, *生命保險經營*, 第69卷6号
- 嶋拓哉(2010), “銀行倒産における国際倒産法的規律”, *FSA リサーチ・レビュー*, 第6
号, 金融庁金融研究研修センター
- 青谷和夫監修(1974), *コンメンタル保險業法(上)*, 千倉書房
- 出口正義(1998), “保險会社の破綻と国の責任”, *上智法学論集*, 41卷4号
- 河谷善夫(2011), “生命保險契約者保護機構財源に関する一考察”, *生命保險論集*,
第177号
- Oehmke(1990), “Gläubigerschutz durch Insolvenzsicherungsfonds in einen
deregulierten Versicherungsmarkt”
- 금융청·예금보험기구, 예금보험제도(<http://www.fsa.go.jp/policy/Payoff/01.pdf>)
- 생명보험계약자보호기구(<http://www.seihohogo.jp/>)
- 生命保險契約者保護機構, “生命保險会社の保險契約者保護制度Q&A”
(<http://www.seihohogo.jp/qa/qa4.html>)

부록 I : 보험업법에 의거한 행정절차 처리사례(東邦生命 사례)¹⁷¹⁾

1. 東邦(토오호오)生命의 경영파탄 현상

東邦生命保險相互會社は 1898년 창립된 회사¹⁷²⁾로 도산 직전년인 1998년 기준으로 자산 25,708억 엔, 수입보험료 3,589억 엔, 보유계약고 201,843억 엔으로 업계 내 14위를 차지하는 중견사였다. 1980년 후반 일본경제 버블기에 양적 성장정책을 추구하여 높은 예정이율의 일시납양로보험과 일시납연금보험, 재테크보험이라 불리었던 건강연금상품 등 저축성상품을 집중적으로 대량판매하여¹⁷³⁾ 1989년 말에는 1985년 말 대비 2.8배의 자산성장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1992년 버블이 붕괴된 이후 부동산 관련 투·융자 손실, 국내 주식투자 손실 및 해외 파생상품투자 등의 투자실패로 1993년 이후 총자산 대비 2%에 상당하는 이차역마진 손실을 기록하고 있었다. 1997년에는 日産生命 도산의 여파로 해약이 급증하여 해약환급금이 총자산 대비 30.8%까지 달하였다. 東邦生命은 사차익 및 비차익으로 이차역마진 손실을 메꾸지 못해 우량 유가증권 매각을 통해 당기이익을 시현해 오다가 도산을 맞이하게 되었다.¹⁷⁴⁾

도산의 결정적 방아쇠가 된 것은 1998 회계연도 결산 시 외부 회계감사인 유한책임감사법인 토마츠(Tohmatsu)로부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의 일부내용에 대해 부적법의견을 받은 것이다. 즉, 토마츠감사법인으로부터 유가증권 평가손실과 부실

171) 東邦生命保險相互會社(2000. 1), “第52回 定時總大会 參考資料”을 발췌·인용하여 정리

172) 원래는 1898년 제일장병보험주식회사로 설립하였다가 1947년에 東邦生命보험상호회사로 조직변경하였음

173) 植村信保(2008), “平成生保危機の眞実”, 日本經濟新聞出版社, p. 102

174) 東邦生命의 「주식미실현이익액 / 주식장부가액 비율」이 93년 1.6%(125억 엔), 94년 1.1%(65억 엔), 95년 10.6%(633억 엔), 96년 4.3%(206억 엔), 97년 -10.7%(-288억 엔)로 추이하였으며, 흑자결산을 하기 위한 주식미실현이익이 도산 2년 전에 이미 전부 소진된 상태였음

채권 등 총액 2313억 엔의 추가 손실처리를 요구받아 전액 회계처리하면 약 2,000억 엔의 채무초과로 판명되어, 보험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을 단념하고 1999년 6월 4일 금융감독청 장관에게 업무정지명령 발동을 요청하게 된 것이다. 이에 금융청장관은 6월 4일 동일 부로 보험업법 제241조에 의거 업무의 일부정지명령을 내리고 6월 5일에 공인회계사 杉山茂八, 변호사 小杉晁 및 사단법인생명보험협회를 보험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업무 및 재산의 관리를 명함과 동시에 보험계약의 이전계획을 작성할 것을 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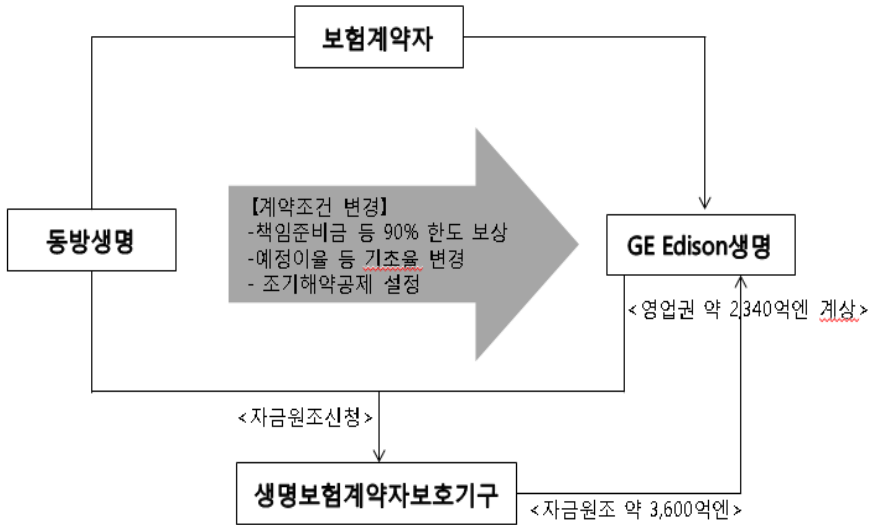
보험관리인이 이전계획 작성 명령을 받아 東邦生命의 재무상황을 실시한 결과, 東邦生命의 채무초과액은 1999년 9월 말 현재 약 6,500억 엔에 달하는 것이 판명되었다.¹⁷⁵⁾ 보험계약의 예정이율은 계약시기별로 2.25%에서 6.25%까지 분포하고 있으나 계약 전체의 평균예정이율은 4.79%(1999년 3월 31일 현재)이고, 초저금리가 지속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연간 약 600억 엔의 이차손실이 발생하였다. 東邦生命의 재무상황으로는 사차익과 비차익으로는 이차역마진의 일부밖에 흡수할 수 없어 지속적인 결산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2. 보험계약 이전계획의 개요 및 요지

東邦生命의 보험계약은 계약조건 변경을 하여 GE Edison생명보험에 이전하기로 하였다. GE Edison생명보험이 영업권을 약 2,340억 엔 계상하기로 하였으나 계약이전 시의 부족액에 대해서는 생명보험계약자보호기구가 약 3,600억 엔의 자금지원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보험계약 이전계획의 개요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부록 그림 I-1>과 같다.

175) 1999년 9월 말 현재의 총자산은 2,187,087백만 엔, 총부채 2,840,088백만 엔, 채무초과액 653,001백만 엔임(1999년 3월 말 현재 채무초과액은 198,605백만 엔)

〈부록 그림 I-1〉 東邦生命의 계약이전 계획의 개요



자료: 東邦生命保險相互會社(2000), "第52回 定時總大會 參考資料", p. 9

보험계약 이전계획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사가 보유하는 보험계약을 GE Edison생명에 포괄하여 이전한다.
- ② 보험계약의 이전 시에 보험계약의 조건변경을 한다.
- ③ 보험계약의 이전에 따라 이전하는 부채 금액에서 계약자보호기구에 의한 자금 원조액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가액의 회사의 재산(영업권을 포함)을 GE Edison생명에 이전한다.
- ④ 보험계약 이전의 실시는 사원총대회의 결의 외에 보험계약자 전원으로부터의 이의제기가 일정 수 이하일 것, 감독당국의 인가를 받을 것 및 기타 GE Edison 생명과의 합의된 일정한 사항이 충족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3. 보험계약의 조건변경

가. 보험계약 조건변경의 내용

법령에 의거한 보상 한도까지 책임준비금을 삭감하며, 이차손을 해소하여 장래 수지를 균형 있게 하기 위해 예정이율을 변경한다. 이를 위해 보험금액 등이 변경된다. 또한 보험집단을 유지하고 만기나 사망 등 보험사고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며, 해약환급금 등의 계약자의 청구에 따른 임의의 지급에 대하여 조기해약공제제도를 도입한다.

1) 변경기준일

1999년 12월 29일을 변경기준일로 한다. 법령에 의거 보험계약 관련 모든 지급을 정지한 때를 변경기준일로 하며, 또한 이전계획이 확정된 후 소급하여 계약조건의 변경을 한다.

2) 계약조건 변경의 대상이 되는 계약

GE Edison생명에 이전되는 보험계약 중 보험업법 제25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규정되는 특정계약을 제외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계약조건의 변경을 실시한다. 여기서 특정계약이란, 보험계약의 지급업무를 전면정지한 때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해 있는 보험계약 및 보험기간이 종료해 있는 계약을 말한다.

3) 책임준비금 등의 삭감

계약자보호기구의 자금원조 전 시점에서 계약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준비해 둔 책임준비금, 배당금, 선납보험료, 거치금 등(이하, '책임준비금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 이미 자산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각 보험계약의 책임준비

금 등을 삭감할 필요가 있는데, 계약자보호기구의 자금원조에 따라 변경기준일의 책임준비금 등의 90%가 보상되며 삭감은 10%로 억제된다. 또한, 개인연금보험, 재해보험, 재형연금보험의 책임준비금 등에 대해서는 특례보상으로 변경기준일의 책임준비금 등의 100%가 전액 보상된다.

여기서 특례보상이라 함은 2001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계약자보호기구에 자금원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파탄보험회사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법령에 의거한 가산보상이며 그 내용은 다음 두 가지의 경우이다. 첫째, 개인연금·재해보험·재형연금보험의 경우 조건변경 전의 책임준비금 등이 100% 보상된다. 둘째, 개인연금·단체보험·의료보장보험·취업불능보장보험의 경우 2001년 3월 말까지 발생한 사망·입원 등의 보험사고(피보험자의 생존 관련 보험사고는 제외)에 대해서는 조건변경 전의 보험금액, 급부금액이 보상된다.

개별적인 취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해약업무의 취급정지에 따라 해약환급금 등이 지급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도 삭감의 대상이 된다. 또한 변경기준일 이전 즉 1999년 12월 28일 이전에 사망·만기 등에 의해 소멸해 있는 계약의 보험금·급부금 등에 대해서는 삭감되지 않는다.

4) 예정이율 등의 변경

변경기준일 이후의 예정이율 및 선납할인이율을 인하한다. 이에 따라 월납계약의 경우 1년 이하의 보험료를 선납한 경우의 1개월 보험료에 대한 할인액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예정이율은 연 1.50%, 선납할인이율은 연 0.50%로 변경한다.

또한, 예정사망률은 東邦生命 내 최신의 수준으로 변경하고 예정사업비율은 보유계약의 평균 수준으로 변경한다.

5) 보험금액, 연금액 등의 변경

책임준비금 등의 삭감 및 예정이율의 변경에 따라 보험금액, 연금액 등이 변경된다.

원칙적으로 납입하고 있는 보험료는 변경하지 않고, 변경기준일 이후의 보험금액, 연금액(이미 지급이 개시된 연금을 포함), 급부금액(생존급부금, 입원급부금 등)을 변경한다. 특약(상해특약, 의료특약 등)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주계약과 동일한 비율로 변경한다. 해약환급금에 대해서도 변경한다.

다만, 변경기준일 현재 이미 선납되어 있는 계약에 대해서는 선납기간을 변경하지 않고 보험료의 납입에 충당하는 금액을 변경하며, 보험금액·연금액 등도 변경한다. 만기일, 연금개시일,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방법(회수) 등은 변경하지 않는다.

또한 개인보험, 단체보험, 의료보장보험, 취업불능보장보험에서 2001년 3월 말까지 기간 동안에 발생한 사망·입원 등의 보험사고(피보험자의 생존 관련 보험사고는 제외)에 대해서는 계약자보호기구의 자금원조(특례보상)에 의해 조건변경 후에도 조건변경 전의 보험금액·급부금액이 지급된다.

6) 조기해약공제제도의 도입

계약이전 계획은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에 대해서 상기의 “보험금액·연금액 등의 변경” 이외에 2008년 3월 말까지 <부록 표 I-1>과 같이 소정의 공제를 한다.

공제율의 적용기준일은 원칙적으로 해약 등의 접수일로 한다. 다만, 해약 등의 접수일까지 납입할 보험료가 납입되어 있지 않은 계약(실효계약 등)인 경우 당해 미납입보험료의 납입기일의 전월 말일을 공제율의 적용기준일로 한다.

조기해약공제제도의 대상은 모든 보험계약으로 하며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은 $\{(조건변경 후의 조기해약공제 전 지급해야 할 금액) \times (1 - 공제율)\}$ 을 지급액으로 한다.

〈부록 표 I-1〉 東邦生命의 조기해약공제 적용 시 공제율

| 공제율의 적용기준일 | 공제율 |
|---------------------|-----|
| ~ 2001년 3월 | 15% |
| 2001년 4월 ~ 2002년 3월 | 14% |
| 2002년 4월 ~ 2003년 3월 | 12% |
| 2003년 4월 ~ 2004년 3월 | 10% |
| 2004년 4월 ~ 2005년 3월 | 8% |
| 2005년 4월 ~ 2006년 3월 | 6% |
| 2006년 4월 ~ 2007년 3월 | 4% |
| 2007년 4월 ~ 2008년 3월 | 2% |

자료: 東邦生命保險相互會社(2000), "第52回 定時總大會 參考資料", p. 12

조기해약공제제도의 개별적인 취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해약환급금 외에 보험금액·연금액 등의 감액, 납제보험, 연장보험으로의 변경, 배당금의 임의인출, 연금의 일시금지급 등에 대해서도 공제의 대상이 된다.
- ② 해약 등의 경우 해약환급금과 함께 지급되는 배당금, 선납되어 있는 보험료 등도 공제의 대상이 된다.
- ③ 단체연금보험 등의 인수비율의 변경에 따라 이관되는 책임준비금 등도 공제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공제율의 적용기준일은 인수비율의 변경일로 한다.
- ④ 각출형기업연금보험의 사망·퇴직 이외의 사유에 의한 탈퇴급부금 등도 공제의 대상이 된다.
- ⑤ 보험료의 자동대출 및 약관대출의 한도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조기해약공제 후의 해약환급금액으로 변경한다.
- ⑥ 해약업무의 취급정지에 의해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도 조기해약공제의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15%로 한다.
- ⑦ 단체연금보험의 신규가입자분 및 계좌증가에 대해서도 중도해약 및 계좌감소를 한 경우에는 그 환급금이 조기해약공제의 대상이 된다.

또한 해약 등이 다수 발생하여 자산운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장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해약환급금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지급연기기간 중의 연체이자를 붙이지 않는 것으로 한다.

7) 계약자배당금

개인보험, 개인연금보험, 재해보험, 재형연금보험 및 단체연금보험 중 유배당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이전 후의 계약자배당금의 할당은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영업권의 상각이 완료되고 또한 본 계약의 전부에 대한 책임준비금이 표준책임준비금(표준책임준비금 대상 외 계약은 평준순보험료식에 의해 계산한 책임준비금)의 금액에 달하기까지 계약자배당준비금은 적립하지 않고 따라서 계약자배당금의 할당도 하지 않는다. 이후의 사업연도에서 적립되는 본 계약에 대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은 계약자배당의 대상이 되는 연간사업연도수익(이하, '연간사업수익'이라 한다) 중 당해 사업연도에서 본 계약이 속하는 상품구분이 기여한 비율에 한정된다.
- ② 계약자배당준비금은 GE Edison생명의 이사회가 그 재량에 의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는 것으로 하며, 계약자배당 금액도 GE Edison생명의 이사회가 그 재량에 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하는데, 각 사업연도의 각 본 계약이 속하는 상품구분이 관련하는 연간사업수익의 1/4을 한도로 한다. 이 계약자배당금의 지급 한도는 GE Edison생명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다.

8) 기타

가) 책임준비금의 적립방식의 변경

개인보험 및 개인연금보험의 책임준비금의 적립방식을 전기질멜식으로 변경한다.

나) 교통재해보장특약의 취급

개인보험 교통재해보장특약은 상해특약 및 재해입원특약으로 변경한다.

다) 기타 이율의 변경

선납보험료적립이율, 거치이율, 약관대출이율을 소정의 이율로 변경한다.

라) 연금개시 후의 해약 취급

개인연금보험에 대해서 업무정지기간에 연금개시일이 도래한 계약의 해약을 계약이전 후 6개월간 가능한 것으로 한다.

마) 계약내용 변경 제한

책임준비금의 감축을 수반하는 피보험자의 변경 등, 조기해약공제의 취지에 반하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제한한다.

바) 전환계약의 취급

전환계약은 계약이전 초기에는 취급하지 않는다. 장래 GE Edison생명이 정한 바에 따라 일정 조건에 따라 GE Edison의 상품으로 전환도 허용한다.

사) 약관대출 및 보험료자동이체대출의 취급

약관대출 및 보험료자동이체대출의 한도액은 조기해약공제 적용 후의 해약환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아) 보험금액의 증액·특약의 중도부가 취급

보험금액의 증액·특약의 중도부가는 계약이전 당초에는 취급하지 않지만 장래 GE Edison생명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을 재개할 예정이다.

자) 통산 최고보험금액, 최저보험금액의 취급

특례를 두어 통산최고보험금액에 대해서는 GE Edison생명과 東邦生命의 보험 계약은 합산하지 않으며, 최저보험금액에 대해서는 계약조건의 변경에 의해 최저보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

차) 수재보험의 취급

수재보험에 대해서도 계약조건의 변경을 한다. 또한, 수재보험은 계약자보호기구의 자금원조 대상 외이기 때문에 그 밖의 상품과 다른 책임준비금 삭감률(18.4%) 및 〈부록 표 I-2〉의 조기해약공제율을 적용한다. 예정이율 등의 계산 기초율의 변경은 개인보험의 취급에 준하여 실시한다.

〈부록 표 I-2〉 수재보험 관련 東邦生命의 조기해약공제 적용 시 공제율

| 공제율의 적용기준일 | 공제율 |
|---------------------|-------|
| ~ 2001년 3월 | 11.5% |
| 2001년 4월 ~ 2002년 3월 | 10.8% |
| 2002년 4월 ~ 2003년 3월 | 9.2% |
| 2003년 4월 ~ 2004년 3월 | 7.7% |
| 2004년 4월 ~ 2005년 3월 | 6.1% |
| 2005년 4월 ~ 2006년 3월 | 4.6% |
| 2006년 4월 ~ 2007년 3월 | 3.1% |
| 2007년 4월 ~ 2008년 3월 | 1.5% |

자료: 東邦生命保險相互會社(2000), "第52回 定時總大會 參考資料", p. 14

카) 단체보험, 단체연금보험의 면책

GE Edison생명의 단체보험 및 단체연금보험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포괄계약일의 東邦生命의 인수비율에 한정된다. 그 밖의 東邦生命의 행위 또는 부작위(보험회사로서의 것이나 간사로서의 것을 불문한다)로부터 발생한 청구에 관하여 GE Edison 생명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 보험금 지급정지 등 관련

1) 지급의 정지

1999년 6월 4일 이후, 해약 및 이에 유사한 업무와 계약자배당금의 지급 등을 정지하며, 1999년 12월 29일 이후에는 보험금, 연금, 급부금 등의 지급을 포함하여 보험계약에 관련된 모든 지급을 정지한다. 이는 1999년 12월 29일을 변경기준일로 하고 그 시점에 東邦生命에 가입해 있는 기존계약에 대해서 계약조건의 변경을 하기 위한 것이고 조건변경을 공평하게 실시하기 위해서는 변경기준일 이후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정지기간 중의 연체이자의 취급

보험업법에 의거한 東邦生命의 업무의 일부정지(1999년 6월 4일)로부터 GE Edison생명에 보험계약이 이전된 후 1주일이 경과하기까지의 기간은 보험금·급부금 등의 지급이 지연된 것에 따른 연체이자를 붙이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 상품별 계약조건 변경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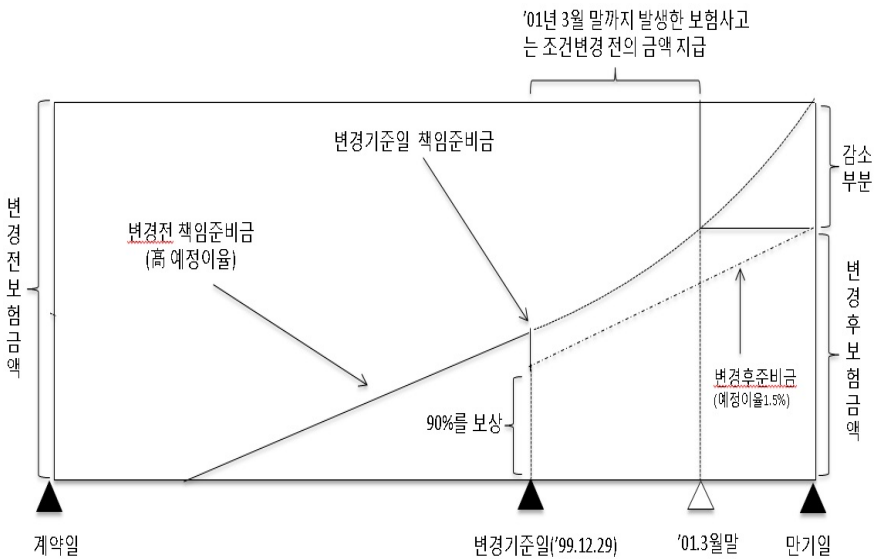
〈부록 그림 I-2〉는 東邦生命의 신양로보험을 예시로 들어 개인보험 계약조건 변

경내용을 도해한 것이다. 개인보험의 경우, 변경기준일의 책임준비금 등의 90%를 보상(〈표 II-2〉 참조)하며, 예정이율은 변경기준일부터 장래에 향하여 연 1.5% 적용으로 변경한다.

그러나, 2001년 3월 말 이전에 발생한 사망·입원 등의 보험사고(피보험자의 생존에 관계된 보험사고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계약자보호기구로부터 자금원조(특례보상¹⁷⁶⁾)되어 계약조건 변경 전의 보험금액, 급부금액이 지급된다.

또한, 〈부록 그림 I-2〉의 신양로개인보험의 만기일에는 책임준비금액이 감소된 상태의 만기환급금을 지급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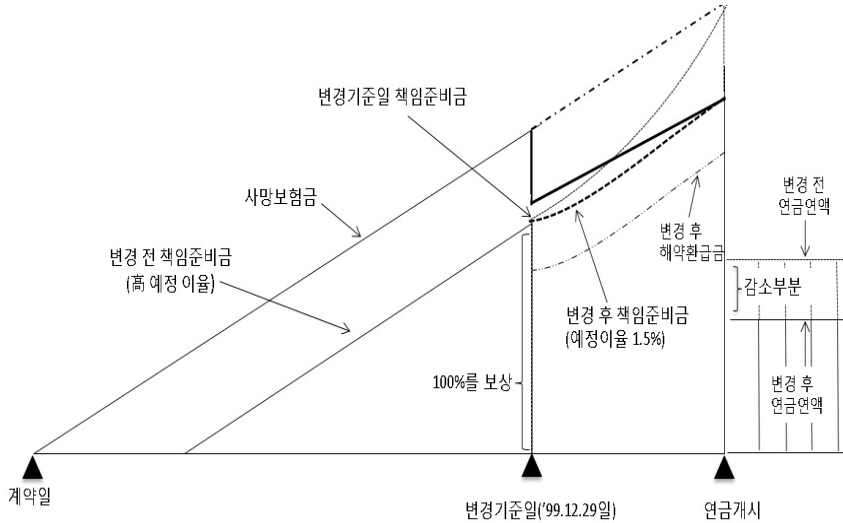
〈부록 그림 I-2〉 東邦生命의 개인보험 계약조건 변경 개념도



자료: 東邦生命(東邦生命保險相互會社(2000), "第52回 定時總大會 參考資料", p. 15

176) 특례보상이란, 2001년 3월 말까지 계약자보호기구에 자금원조의 신청이 있었던 경우 도산보험회사의 보험계약에 대한 법령에 의거한 추가보상을 말함. 개인연금, 재형보험, 재형연금보험에 대해서는 책임준비금의 100%가 보상되며, 개인보험, 단체보험, 의료보장보험의 경우 2001년 3월 말까지 발생한 사망, 입원 등의 보험사고(생존보장은 제외)에 대해서는 조건변경 전의 보험금액, 급부금액이 보상됨

〈부록 그림 I-3〉 東邦生命의 개인연금보험 계약조건 변경 개념도



자료: 東邦生命保險相互會社(2000), "第52回 定時總大會 參考資料", p. 15

〈부록 그림 I-3〉은 東邦生命의 신중신연금보험을 예시로 들어 개인연금보험 계약조건 변경내용을 도해한 것이다. 개인연금보험의 경우, 2001년 3월 말까지 계약자보호기구에 자금원조의 신청이 있었던 경우에는 계약자보호기구로부터 자금원조(특례보상)에 의해 변경기준일의 책임준비금의 100%가 보상된다. 다만, 해약환급금에 대해서는 개인보험과 마찬가지로 변경기준일의 책임준비금의 90%로 변경된다. 예정이율은 변경기준일부터 연 1.5%로 변경된다.

계약조건 변경 시 상품별로는 보장성이 높은 정기보험, 의료보험상품 등에서는 보험금액·급부금액이 감소하지 않거나 감소폭이 작고, 저축성이 높은 개인연금보험이나 일시납종신보험 등 저축성상품에서는 감소폭이 크다. 계약체결의 시기별로는 예정이율이 높은 시기¹⁷⁷⁾에 체결된 보험계약일수록 보험금액·급부금액의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177) 1992년 이전계약은 예정이율이 5.5%, 1993년도 계약은 4.75%, 1994년 및 1995년 계약은 3.75%가 많음

〈부록 표 I-3〉 계약조건 변경 후 보험금액·연금액 모델 예시

| 보험 종류 | 경과 연수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
| | 계약 연도 | 98년 | 97년 | 96년 | 95년 | 94년 | 93년 | 92년 | 91년 | 90년 | 89년 |
| 일시납 양로 (10년 만기) | 30세 | 84 | 84 | 85 | 86 | 80 | 79 | 79 | 82 | 86 | - |
| | 40세 | 84 | 84 | 85 | 86 | 80 | 79 | 79 | 82 | 86 | - |
| | 50세 | 84 | 85 | 85 | 86 | 80 | 79 | 79 | 82 | 86 | - |
| 양로 (30년 만기) | 30세 | 84 | 83 | 83 | 72 | 72 | 63 | 58 | 58 | 58 | 60 |
| | 40세 | 85 | 84 | 84 | 74 | 74 | 66 | 61 | 61 | 61 | 62 |
| | 50세 | 87 | 86 | 86 | 78 | 78 | 70 | 66 | 66 | 66 | 69 |
| 일시납 종신 | 30세 | 55 | 55 | 56 | 40 | 41 | 31 | 26 | 26 | 27 | 29 |
| | 40세 | 60 | 60 | 61 | 47 | 48 | 38 | 33 | 34 | 35 | 37 |
| | 50세 | 66 | 66 | 67 | 56 | 56 | 48 | 43 | 44 | 45 | 48 |
| 종신 (60세 납완) | 30세 | 72 | 71 | 70 | 56 | 56 | 45 | 40 | 39 | 39 | 41 |
| | 40세 | 74 | 73 | 73 | 60 | 59 | 49 | 43 | 43 | 43 | 45 |
| | 50세 | 76 | 75 | 75 | 62 | 62 | 51 | 45 | 46 | 46 | 48 |
| 정기 (30년 만기) | 30세 | 98 | 100 | 100 | 100 | 100 | 99 | 100 | 100 | 100 | 100 |
| | 40세 | 98 | 98 | 97 | 97 | 97 | 92 | 91 | 91 | 90 | 100 |
| | 50세 | 96 | 95 | 95 | 94 | 93 | 87 | 84 | 84 | 84 | 94 |
| 건강 종신 연금 (10년 보증) | 30세 | 72 | 71 | 71 | 56 | 56 | 43 | 37 | 37 | 37 | 38 |
| | 40세 | 76 | 76 | 76 | 62 | 62 | 51 | 44 | 45 | 45 | 47 |
| | 50세 | 80 | 81 | 81 | 69 | 70 | 61 | 56 | 57 | 58 | 58 |

- 주: 1) 예시의 모든 계약은 남성 기준임
 2) 보는 법 예시: 일시납양로보험을 96년에 30세의 나이로 가입한 남성의 경우, 변경 전 만기보험금 액을 100으로 했을 경우 변경 후는 85로 감액됨
 3) 계약연도는 4월부터 익년 3월까지의 기간이며 모든 신계약은 각 연도의 1월 1일 가입으로 전제함
 자료: 東邦生命保險相互會社(2000), "第52回 定時總大會 參考資料", pp. 18-20에서 발췌·작성함

부록 Ⅱ: 갱생특례법에 의한 사법절차 처리사례(大和生命 사례)¹⁷⁸⁾

1. 大和(야마토)생명의 회사갱생절차개시 신청의 경위

가. 구조적인 비차손 발생

大和生命保險株式會社は 1911년 9월 설립되어 역사가 유구한 회사인데 오랜 기간에 걸쳐 우량한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을 기초로 하는 자산운용에 의해 높은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한편으로, 사업이 비교적 소규모였기 때문에 계약관리사무 등의 비용이 높고 그 중에서도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는 동업 타사에 비하여 높았다. 이에 따라 오랫동안 비차손이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보험모집에 대해서는 주로 영업직원(보험모집인)의 지연·혈연 등의 개인적인 인맥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계약 획득에도 한계가 있어 보험모집인이 퇴직하면 그에 더불어 보험계약의 실효·해약이 증가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 때문에 동업 타사에 비해 보험계약의 실효해약률은 대체로 높고 영업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었다.

나. 고예정이율 상품의 판매

大和生命의 주력 보험상품은 양로보험 등의 개인보험이 중심인데, 1976년부터 1993년까지 판매된 보험상품들의 예정이율은 연 5.5%에서 연 6.25%로 모두 다 고예정이율이었다.

이는 금리가 현재 수준보다 높았던 당시의 경제상황을 배경으로 생명보험업계 전

178) 更生会社 大和生命保險株式會社(2008), “更生計畫案(東京地方裁判所 2008年(ニ)第12号 會社更生事件)”을 발췌·인용하여 정리

체가 高예정이율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던 것에 기인한다. 그러나 大和生命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항상적인 비차손을 메꿀 필요가 있었으므로 보다 높은 수익률로 자산 운용을 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었다.

다. 자산매각에 의한 비차손실 총당

이러한 경과에 의해 大和生命은 그 때까지 운용해 온 우량한 보유자산을 매각함으로써 이차손실 및 비차손실을 메꾸어 영업수지의 흑자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수익구조는 다른 생명보험회사가 버블경제 붕괴 후에 이차역마진에 의한 운용상 손실을 경영합리화를 통해 개선하고 비차손실 해소에 노력해 온 경위와는 매우 다른 점이다. 이와 같이 大和生命은 미실현익이 있는 우량자산을 서서히 매각하여 총 자산은 실질적으로 계속 감소되어 갔다.

라. 적극투자에 의한 운용수익의 확보

大和生命은 비차손실에 총당할 높은 운용수익률을 얻기 위하여 大正生命보험주식회사¹⁷⁹⁾를 승계한 2001년 이후 J-REIT나 금융파생상품 등의 투자가 추진되었다. 2005년 이후에는 부동산펀드나 부동산증권화상품 등의 투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07년 회계연도 기초에는 J-REIT 상장주식을 36개 종목(장부가 78억 엔), 조립식 파생상품펀드를 70개 종목(장부가 400억 엔) 보유하여 동 연도의 유기증권 보유잔액 중 '외국증권 및 기타 증권'의 비중은 42.2%로 비교적 높은 수준에 달하였다.

179) 1913년에 설립된 大正生命은 이차역마진 확대에 따라 경영이 위축되고 지급여력이 급락하여 자본증강을 하는 가운데 자본증강에 나선 신규주주인 클레아몬트캐피털과의 부적절한 자산거래로 결국 사기에 의한 자산손실로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음. 이후 보험업법에 의거 도산처리되어 大和生命으로 전부계약이전이 되었음

마. 거액의 유가증권평가손실의 발생

이러한 유가증권 및 기타 금융상품에 의한 자산운용은 시장의 변동에 의한 영향을 직접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악화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자산가치도 하락하게 되었다. 2007년 11월에는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투자위원회를 설치하여 모든 투자운영활동을 동 위원회의 관리하에 두는 등의 대응을 했지만, 그 후에도 계속되는 자산가치의 하락을 저지하지 못하고 2008년 3월 결산기에는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차 손금으로서 112억 3,800억 엔을 계상하기에 이르렀다.

바. 자력재건의 단념

2008년 3월 결산기의 순자산은 40억 5,200만 엔으로 급속히 감소하여 지급여력비율도 55.4%로 하락하였다. 이 때문에, 大和生命은 자기자본을 증강하고자 2008년 4월 이후 새로운 자본제휴처를 모색했지만 최종적으로 충분한 지원책을 제시해 줄 곳을 찾지 못했다.

大和生命은 2008년 9월 중간결산에서 중간 순손실 140억 3,900만 엔을 계상하여 140억 2,300만 엔의 채무초과 상태가 되어 지급여력비율도 더욱 급락하였다. 이 때문에 大和生命은 자력재건을 단념하고 동년 10월 10일 동경지방법원에 회사갱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2. 大和生命의 회사갱생절차개시 결정의 경위

가. 보전관리처분과 보전관리인의 선임

大和生命은 2008년 10월 10일, 동경지방법원에 회사갱생법 및 금융기관 등의 갱생절차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갱생특례법'이라 한다)에 의거, 회사갱생절차개시 신청

을 하였다. 동일부로 법원에 의해 보전관리명령이 내리고 보전관리인으로서 변호사 瀬戸英雄씨가 선임되었다. 보전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보전관리인대리로서 6명의 변호사를 선임하였다.

나. 보전관리처분에서 갱생절차개시 결정까지의 경과

보전관리인은 보전관리명령 발령 직후에 갱생회사인 大和生命의 본사에 부임하여 보전관리인실을 설치하고 자산의 보전조치를 함과 동시에 각 담당부장과 면담한 후에 지휘명령 계통을 보전관리인실로 일원화했다.

또한, 大和生命의 재건을 위해서는 구제회사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불가결하므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日興시티그룹증권과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했다.

다. 갱생절차개시 결정과 관리인의 선임

2008년 10월 17일, 동경지방법원으로부터 갱생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져 관리인으로서 보전관리인이었던 변호사 瀬戸英雄씨가 선임되었다.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보전관리인대리를 하고 있는 6명의 변호사를 관리인대리로 선임하였다. 또한 관리인은 재무상황 및 기업가치 파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재산조사 및 재산평가는 감사법인 토마츠, 금융상품 등의 매각은 (주)日興시티그룹증권, 부동산평가 및 매각은 (주)미쯔비시지소리얼에스테이트 서비스, 보험계약의 가치평가는 (주)왓슨와이어트인슈어런스컨설팅과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생명보험계약자보호기구의 갱생대책실 설치

갱생절차개시 결정 후 생명보험회사가 파탄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의 일체의 절차를 대행하고 보험계약의 이전 시 자금원조 등을 할 생명보험계약자보호기구(이하,

‘계약자보호기구’라 한다)의 갱생대책실이 갱생회사에 설치되어 상주하게 되었다. 관리인은 상기 자문기관 및 계약자보호기구와 협의하면서 갱생절차를 진행하였다.

3. 大和生命 갱생회사 관리인의 관재업무의 경과

가. 갱생절차개시 결정 후의 보험업무 취급

1) 갱생절차개시 결정 후의 보험 취급

大和生命의 관리인은 갱생절차개시 결정에 따라 <부록 표 II-1>의 업무에 대해서는 보전관리기간부터 계속하여 업무정지를 하였다.

<부록 표 II-1> 갱생절차개시 결정 후 관리인의 조치에 따른 업무정지 내용

| 갱생절차개시 결정 후 관리인의 조치에 따른 업무정지 내용 |
|--|
| ① 신규 보험계약의 체결, 특약중도부가, 보험금 및 급부금액의 증액, 단체보험의 인수비율 증가 |
| ② 보험계약의 전환 |
| ③ 보험계약의 해약접수, 보험계약 실효 시의 환급금의 청구접수 |
| ④ 보험금액 및 급부금액의 감액, 보험계약의 특약의 해약접수, 단체보험의 인수비율의 감소 |
| ⑤ 계약자 약관대출 |
| ⑥ 감액완납, 감액완납연금보험(단체연금 제외) 및 연장정기보험으로 계약 변경 |
| ⑦ 보험료 납입횟수의 변경 |
| ⑧ 연금개시일의 변경 |
| ⑨ 보험료 납입기간의 변경 |
| ⑩ 보험기간의 변경 |
| ⑪ 보험·연금의 종류 변경 |
| ⑫ 연금의 일시금 지급 |
| ⑬ 보험계약자의 변경 |

자료: 更生会社 大和生命保險株式會社(2008), “更生計畫案(東京地方裁判所 2008年(ニ)第12号 会社更生事件)” pp. 12~13에서 정리하여 작성함

2) 보상대상보험금 지급 관련 자금원조계약의 체결

또한, 관리인은 취임 후 바로 계약자보호기구와 보상대상보험금에 관련된 자금원조계약 체결의 준비에 착수하여 2008년 10월 31일 동 계약을 체결하고, 동년 11월 10일 갱생특례법 제440조 1항에 의거한 보상대상보험금의 지급을 재개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3) 개인보험 · 개인연금보험의 갱생절차개시 전 해약

갱생절차개시 신청 전에 보험계약자로부터 大和生命에 해약청구가 있었던 보험계약 중 2008년 10월 9일 이전에 해약청구의 수령권한이 있는 본사에 해약청구서를 접수한 것에 한하여 유효한 해약으로 간주하여 지급을 하였다.

해약청구의 수령권한이 없는 그 밖의 영업점포 등에 도달한 채 멈춰있는 것은 해약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보상대상보험금은 2008년 11월 10일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을 재개하였다.

4) 단체보험 · 단체연금보험

단체보험에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기업 등의 단체가 계약자가 되어 있는 종합복지단체정기보험, 단체정기보험, 의료보장보험(단체형), 단체취업불능보장보험, 단체신용생명보험, 심신장애자부양자생명보험에 대해서 추가가입, 탈퇴, 보험금변경 등을 원인으로 하는 보험금액의 증감을 접수하기로 하였다.

또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갱생계획인가에서 결정까지의 기간 동안에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납입되는 단체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및 기타 급부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하였다.

단체연금보험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2008년 10월 9일 이전을 변경일로 하는 제도해약 · 웨어아웃의 신청이 있었던 단체연금보험계약에 대해서 보전관리명

령일 전에 통지나 서류가 수령권한이 있는 大和生命의 본사에 도달한 것에 대하여 大和生命이 보관하는 계약자의 연금자산을 계약자가 지정하는 생명보험회사로 전액 이관하기로 하였다.

또한, 신기업연금보험과 국민연금기금보험에 대해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보험료 적립금에 계약자보호명령 제50조의 5에서 정한 이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액의 범위 내에서 연금·일시금의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갱생절차개시 후의 채무 변제

1) 보험급부채무의 변제

사망보험금, 만기보험금, 급부금 등의 보험급부는 2008년 10월 31일 계약자보호기구와 보상대상보험금 지급에 관한 자금원조계약 체결 후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개인보험·개인연금보험에 대해서는 동년 11월 10일부터, 단체보험·단체연금보험에 대해서는 동년 11월 25일부터 각각 순차적으로 지급을 개시하였다. 갱생절차 개시 결정 일로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 지급한 보험급부액은 사망보험금 508건, 만기보험금 3,945건, 연금 1,129건, 급부금 1,969건으로 합계 7,551건에 88억 7489만 엔이다.

2) 일상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공익채권화

大和生命更生會社は 은행, 증권, 투자펀드, 부동산회사 등과 다양한 계약을 체결하여 자산운용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계약에 기인하는 채무를 변제금지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의 기본구조가 붕괴하고 신용불안의 발생에 의해 갱생회사의 기업가치를 현저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최대채권자인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해치고 생명보험회사로서의 유지존속 자체가 위협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갱생회사의 기업가치를 유지하고 보험계약자 등 채권자의 최대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선례에 따라 갱생절차개시 전을 원인으로 하는 채무 중 '일상업무에 기인

하여 발생한 비용'을 공익채권으로 하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수시로 변제를 하였다.

3) 공익채권 등의 발생과 변제

갱생절차 개시 결정일 이후 사업 경영,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비용의 발생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 대응 관련 비용 및 갱생회사의 사업가치의 훼손방지의 관점에서 최소한으로 한정하여 지급하였다. 그 결과, 갱생절차개시 결정일로부터 2009년 2월 28일 사이에 지급한 공익채권 및 상기 공익채권화한 일상업무에 소요된 비용(이하, '공익채권 등'이라 한다)의 합계는 22억 5,900만 엔이다.

다. 재산상황 조사

갱생회사의 재산상황에 대해서는 자산매각 결과 및 계약자보호기구의 자산·부채 평가매뉴얼을 참고로 하여 감사법인 토마츠의 협력을 얻어 시가로 재산평가를 하였다. 그 결과 순자산 합계액은 2008년 10월 17일 재산평가일 전의 마이너스 294억 7,054만 엔에서 마이너스 643억 3,047만 엔으로 확대되었다.

라. 경영책임의 조사

관리인은 갱생회사에 대하여 회사갱생법 제100조에서 정한 임원 등의 책임에 기인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유무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2008년 10월 27일 전 대법원 판사이었던 才口씨를 위원장, 전 검찰청검사장이었던 上田씨를 부위원장으로 하는 경영책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구 임원 등의 경영책임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였다.

경영책임조사위원회는 사내서류의 조사분석 및 금융청 검사 결과를 검토함과 동시에 구 임직원 13명으로부터 大和生命更生會社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과 및 그 과정에서 문제점 등에 대하여 의견진술 청취를 하고 또한 감사법인에 의뢰하여 갱생회사의 최근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재무·회계면의 조사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에 의거 동 위원회는 소형 보험회사였던 大和更生會社の 구조적인 비차손 체질과 함께 보험업무에 관한 영업상의 문제점 및 고위험 투자에 치우친 자산운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갱생회사의 파탄원인이 된 사실을 분석하여 그에 관련된 전 임원 등의 책임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경영책임조사위원회는 大和生命의 구 임원 등의 각 시점마다의 경영판단에는 여러 가지 비난할 수 있는 점들이 인정되기는 하나,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만한 비행은 인정되지 않고 또한 민사상의 책임에 대해서도 경영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경영판단의 오류에 의한 것이라고 하기까지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구 임원 등의 법적책임을 추궁하기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이를 관리인에게 보고하였다.

한편, 관리인은 경영책임에 관한 정보제공을 사내외에 호소하여 정보수집에 힘쓰고 또한 경영책임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 후에는 그 조사결과의 요지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표하였는데, 경영책임에 관한 특필할 만한 정보는 수집되지 않았고 경영책임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에 대해서도 그 조사방법이나 조사내용의 타당성에 대하여 특단의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은 경영책임조사위원회에 의한 조사·검토와 그 결론 등에 의거하여 관리인은 大和生命更生會社の 구 임원 등의 경영책임에 대하여 법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회사갱생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는 최종적인 판단을 하였다.

4. 갱생채권 등에 관한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가. 갱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갱생채권 등에 관한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보험계약자 등’이라 함은 보험금청구권, 보험료환급청구권, 해약환급금청구권 등 갱생회사에 대하여 보험계약에 관한 채권을 갖는 자를 말한다(유효 중인 보험계약뿐만 아니라 이미 종료한 보험계약에 관련된 채권을 갖는 자를 포함한다).

‘책임준비금 등’이라 함은 보험업법 제270조의3 제2항 및 계약자보호명령 제50조의4에서 정하는 계약조건 변경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에 관련되는 책임준비금, 지급비금, 계약자배당준비금(미할당인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계산기초율’이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계산에 있어 사용되는 기초적인 수치를 말한다.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에 규정되며 예정사망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 예정사고발생률 등이 있다.

‘계약자가액’이란 보험업법시행규칙 제10조 3호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액 등 기타 피보험자를 위하여 적립해야 할 금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금액, 연금액, 급부금액 등’이라 함은 보험금액, 연금액 등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보험계약의 급부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조기해약공제’라 함은 보험의 균단성을 유지시킴과 동시에 조기에 대량으로 해약되어 수지악화를 막기 위하여 갱생특례법 제445조 2항에 의해 인정된 해약환급금 등의 감액을 말한다.

‘고예정이율계약’이란 갱생절차개시 결정일 시점에서 과거 5년간 항상 예정이율이 기준이율을 초과해 있는 보험계약을 가리킨다.

〈高예정이율계약의 보상률과 삭감률〉

① 보상률

高예정이율계약의 보상률은 아래 산식으로 계산된 율로 한다.

(산식) 高예정이율계약의 보상률 = $90\% - \{(과거\ 5년간의\ 각\ 연도의\ 예정이율 - 기준이율)\}$ 의 총합 ÷ 2

여기서, 기준이율은 3%로 하며 소수점 이하 제3위를 절상한다.

② 삭감률

高예정이율계약의 삭감률은 아래 산식으로 계산된 율로 한다.

(산식) 高예정이율계약의 삭감률 = $100\% - 高예정이율계약의\ 보상률$

‘이관금’이란 단체연금 등의 공동인수계약의 경우에 인수비율의 변경에 따라 당해 보험회사로부터 다른 보험회사로 이관되는 책임준비금을 말한다.

‘보통보험약관 등(기초서류)’이란 정관, 보통보험약관, 사업방법서 및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말한다.

‘변경기준일’이란 계약조건변경의 기준일인 2008년 10월 17일(갱생절차개시 결정일)을 말한다.

나. 보험계약 관련 우선적 갱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확정채권은 계약자보호기구가 법원에 제출한 보험계약자표 기재의 내용과 같다.

1) 권리변경 및 보험계약 특칙

보험계약 관련 채무면제의 효력은 바로 뒤에서 서술하는 ‘특칙 적용이 있는 갱생채권’을 제외하고 갱생계획 인가결정 확정 시에 발생한다.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는 보험계약에 관한 특칙은 다음과 같다. 즉, 다음 보험계

약에 관련된 채권에 대해서는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는다. 다만, 후술하는 ‘지급기한의 연기 및 연체이자’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① 보전관리명령일의 전날까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당해 보험사고에 관련된 보험금 지급에 의해 소멸하게 되는 보험계약에 기인한 보험금, 연금, 급부금 등 및 배당금의 청구권
- ② 보전관리명령일의 전날까지 해약된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청구권
- ③ 보전관리명령일의 전날까지 회사가 인수비율의 인하(영까지 인하를 포함한다)의 통지를 받고 동시에 인수비율의 인하가 보전관리명령일의 전일까지 있었던 보험계약에 관련된 이관금청구권

2) 계약조건의 변경 및 변제방법

바로 앞에서 설명한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는 보험계약에 관한 특칙’에 기재된 보험계약 이외의 모든 보험계약은 다음과 같이 계약조건을 변경한다.

가) 변경기준일

계약조건변경의 기준일은 갱생절차개시 결정일(2008년 10월 17일)로 한다.

계약조건변경의 기준일 전날까지 보험사고가 발생한 보험계약에 기인하는 보험금, 연금, 급부금 및 배당금의 청구권에 대해서는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는다.

나) 책임준비금 등의 삭감

변경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계약자 등을 위해 적립되어 있는 책임준비금 등을 삭감한다. 삭감률은 아래 <부록 표 II-2>와 같고 책임준비금의 적립방식을 전기 질멸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 보험 종류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의 인가¹⁸⁰⁾를 얻어 당해

180) 보험업법 123조의 규정에 의거 본 갱생계획에 관련된 주무관청의 인가를 말함

방식으로 변경한 후에 변경 후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하여 본 갱생계획 및 大和生命更生會社 소정의 방법에 의해 삭감한다.

〈부록 표 II-2〉 책임준비금 등의 삭감률

(단위 :%)

| 구분 | | 개인 보험 | 개인 연금 | 단체 보험 | 단체 연금 | 재형/ 재형연금 | |
|-----------|------------|----------|----------|----------|----------|-------------|---|
| 책임 준비금 | 보험료적립금 | 10 | 10 | 10 | 10 | 10 | |
| | 미경과보험료 | 10 | 10 | 10 | - | 10 | |
| 지급 준비금 | 보험금 급부금 | 생존 | 0 | 0 | - | 0 | 0 |
| | | 생존 제외 | 0 | 0 | 0 | 0 | 0 |
| | 연금 | | 0 | 0 | 0 | 0 | 0 |
| | 해약환급금 | | 0 | 0 | - | 0 | 0 |
| | 실효 | | 10 | 10 | - | - | - |
| 계약자배당준비금 | | 10 | 10 | 0 | 10 | 10 | |

주: 高예정이율계약(연 3.0% 초과)의 삭감률은 ‘용어의 정의’에서 기 서술한 산식으로 계산함
 자료: 生會社 大和生命保險株式會社(2008), “更生計立案(東京地方裁判所 2008年(ニ)第12号 會社更生事件)” p. 29

한편, 보전관리명령일 이후에 납입된 보험료에 관계되는 책임준비금 등은 삭감하지 않는다.

다) 계산기초율의 변경

변경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 책임준비금 및 계약자가액의 계산기초율을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어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다만, 변경 후의 예정이율이 변경 전의 율보다 높을 때에는 예정이율을 변경하지 않는다.

① 개인보험·개인연금보험

예정이율, 예정사망률, 예정사고발생률, 예정사업비율에 대해 〈부록 표 II-3〉과 같이 적용한다.

〈부록 표 Ⅱ-3〉 계산기초율의 변경 적용률

| 구분 | 개인보험·개인연금보험의 계산기초율 변경 적용률 |
|---------|--|
| 예정이율 | 연 1.0%를 적용 |
| 예정사망률 | 생보표준생명표2007(사망보험용)〈유배당용/무배당용〉 생보표준생명표2007(연금개시후용) 제3분야표준생명표2007〈유배당용/무배당용〉 |
| 예정사고발생률 | 변경대상이 되는 각 보험 종류별로 최신의 판매상품에 적용하고 있는 율로 변경 |
| 예정사업비율 | 변경대상이 되는 각 보험 종류별로 최신의 판매상품에 적용하고 있는 율로 변경 |

자료: 更生会社 大和生命保險株式會社(2008), “更生計畫案(東京地方裁判所 2008年(ミ)第12号 会社更生事件)”
p. 33에서 정리하여 작성함

② 단체보험

예정이율은 연 1.0%로 변경하며, 예정사망률, 예정사업비율은 변경하지 않는다.

③ 단체연금보험

계산기초율은 변경하지 않는다. 다만, 신기업연금보험에서는 변경기준일 전에 연금수급권 미취득자 부분을 해약한 보험계약과, 각출형기업연금보험에서 변경기준일 전에 이미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피보험자의 연금액에 대해서는 예정이율을 연 1.0%로 변경한다.

④ 재형보험·재형연금보험

예정이율은 연 1.0%로 변경하며, 예정사망률, 예정사업비율은 변경하지 않는다.

라) 선납할인율 등의 변경

선납할인율은 연 0.25%로 하며 변경 후의 할인율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에 보고하여 회사내부 소정의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또한 월납계약의 일괄납 할인율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어 회사 소정의 방법으로 변경한다.

마) 보험금액, 연금액, 급부금액 등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아래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보험금액, 연금액, 급부금액 등을 변경하지 않는다.

① 단체보험

종합복지단체정기보험 및 단체정기보험에서 연금지급특약의 부가에 의해 변경기준일 전에 이미 연금지급을 개시해 있는 계약(연금지급을 연장하고 있는 계약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또한 갱생절차개시 결정일 시점에서 월납을 일괄납입으로 하고 있는 계약에 대해서는 보험금액, 연금액, 급부금액 등,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에 상당할 금액을 변경하지 않고 계약자로부터 부족보험료 상당액을 납입함으로써 보험료에 충당한다.

② 신기업연금보험

연금수급권 미취득자 부분을 해약한 보험계약은 보험금액, 연금액, 급부금액 등의 변경대상에서 제외한다.

바) 보험금액, 연금액, 급부금액 등의 변경

변경기준일 이후 <부록 표 Ⅱ-2>의 기준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삭감한 후의 책임준비금을 기본으로 상기의 '다) 계산기초율의 변경'을 적용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어 회사가 정하는 방법(아래의 ①~④ 참조)에 의하여 보험금액, 연금액, 급부금액 등을 변경한다.

① 개인보험·개인연금보험

각 보험계약의 주계약 및 특약별로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은 방법에 의해 보험금액, 연금액(기지급개시연금도 포함), 급부금액 등을 변경한다. 또한, 조건변경 전후로 보험료는 변경하지 않고 보험금액, 연금액(기지급개시연금도 포함), 급부금액 등을 변경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다만, 변경 후 보험금액·연금액·급부금액이 변경 전의 금

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변경 전의 금액으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갱생절차개시 결정일 시점에서 이미 선납된 계약 및 그 이후에 선납된 계약은 선납기간을 변경하지 않고 보험료의 납입에 상당할 금액을 변경한 연 후에 보험금액, 연금액, 급부금액 등을 변경한다. 또한 만기일, 연금개시일,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방법 등은 변경하지 않는다.

한편, 보험금액의 관계가 보통보험약관 등에 의해 일정비율로 되어 있는 보험 종류(의료보험의 각 급부금액 등)에 대해서는 이를 합산하여 각각의 보험금액 등이 동일 비율이 되도록 계산한다.

② 단체보험

종합복지단체정기보험 및 단체정기보험에서 연금지급특약의 부가에 의해 변경기준일 전에 이미 연금지급이 개시해 있는 계약(연금지급을 연장하고 있는 계약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삭감 후의 책임준비금을 기본으로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은 방법에 의해 보험금액, 연금액을 변경한다.

③ 단체연금보험

신기업연금에서 변경기준일 전에 연금수급권 미취득자 부분을 해약한 보험계약 및 각출형기업연금보험의 변경기준일 전에 이미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피보험자의 연금액에 대해서는 삭감 후의 책임준비금을 기본으로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은 방법에 의해 변경한다.

④ 재형보험·재형연금보험

변경기준일 이후 삭감 후의 책임준비금을 기본으로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어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해 보험금액, 연금액, 급부금액 등을 변경한다.

사) 계약자가액의 변경

변경기준일 이후 상기의 '다) 계산기초율의 변경'을 적용하여 바로 앞에서 설명한 '바) 보험금액, 연금액, 급부금액 등의 변경'에 대한 계약자가액을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은 방법에 의하여 변경한다.

아) 조기해약공제의 적용

갱생절차개시 결정일에 존속하는 모든 보험계약(갱생계획인가 결정일 이후에 당해 계약이 전환된 경우는 당해 계약으로부터 전환 후 계약에 충당된 부분을 포함한다) 및 실효된 모든 보험계약에 대하여 <부록 표 II-4>의 조기해약공제율에서 정한 기간에 <부록 표 II-5>에서 정한 해약사유에 의하여 이미 설명한 '나. 1) 권리변경 및 보험계약 특칙'의 규정 및 보통보험약관에 따라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액(<부록 표 II-6>)에서 당해 지급할 금액에 조기해약공제율을 곱하여 얻은 액을 뺀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조기해약공제를 적용할 때에 곱하는 공제율의 적용기준일은 <부록 표 II-7>의 적용기준일과 같이 한다.

<부록 표 II-4> 大和生命의 조기해약공제율 적용내역

| 적용기간 | 공제율 | 적용기간 | 공제율 |
|------------------------|-----|------------------------|-----|
| ~2010. 3. 31 | 20% | 2014. 4. 1~2015. 3. 31 | 10% |
| 2010. 4. 1~2011. 3. 31 | 18% | 2015. 4. 1~2016. 3. 31 | 8% |
| 2011. 4. 1~2012. 3. 31 | 16% | 2016. 4. 1~2017.3.31 | 6% |
| 2012. 4. 1~2013. 3. 31 | 14% | 2017. 4. 1~2018. 3. 31 | 4% |
| 2013. 4. 1~2014. 3. 31 | 12% | 2018. 4. 1~2019. 3. 31 | 2% |

자료: 更生会社 大和生命保険株式会社(2008), "更生計画案(東京地方裁判所 2008年(ミ)第12号 会社更生事件)" p. 37

〈부록 표 II-5〉 大和生命의 조기해약공제 적용 사유

| 종류 | 조기해약공제의 적용 사유 | 조기해약공제의 부적용 사유 |
|---------------------------------|---|---|
| 개인 보험 · 개인 연금 보험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약(특약만의 해약 포함) 2. 감액(특약만의 감액 포함) 3. 실효 4. 감액완납보험으로 변경 5. 연금의 일괄납입(선납) 6. 전환일 또는 연금으로의 이행일에 대출금 잔액이 있는 경우 전환가격이 될 적립금에 의한 대출금의 원리금 변제 충당 7. 연금개시일에 대출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 연금자원에 의한 대출금의 원리금 변제 충당 8. 연금개시일에 대출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 새로운 기본연금액을 정할 때 회사가 정한 금액에 미달 시 연금잔액의 일시금 지급 9. 적립된 배당금의 지급 10. 부부형에서 본인형 등으로 변경 시 환급하는 책임준비금 지급 11. 고지의무 위반 및 중대사유에 의한 해제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령개정에 따라 강제적인 해약이 이루어진 경우 2. 감액완납보험으로 변경한 시점에 충당할 금액에 대해서 이미 조기해약공제가 있었던 보험계약이 그 후 해약된 경우 3. 보통보험약관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고도장해 포함) 시에 연금수익자에게 미지급연금의 현가의 일시금이 지급된 경우 4. 전 각 호 외에 보험계약자 등의 임의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라고 회사가 판단한 경우 |
| 단체 보험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약(특약만의 해약 포함) 2. 감액(특약만의 감액 포함) 3. 실효 4. 종합복지단체정기보험 연금특약 및 단체정기보험연금특약의 연금 일괄 지급 5. 적립된 배당금의 지급 6. 공동취급계약에 관한 협정서에 기재된 인수비율 또는 인수금액의 변동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체의 해산 등 계약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해약된 경우 2. 종합복지단체정기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사망퇴직금 등으로 규정된 금액이 보험금액에 미달함으로써 감액하는 경우 3. 종합복지단체정기보험 연금특약, 단체정기보험연금특약에서 연금수익자의 사망에 의한 상속인에 대한 연금기금 또는 미지급연금 현가가 지급된 경우 4. 전 각 호 외에 계약자의 임의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라고 회사가 판단 시 |

(계속)

| 종류 | 조기해약공제의 적용 사유 | 조기해약공제의 주적용 사유 |
|----------------|--|--|
| 단체 연금 보험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약(특약만의 해약을 포함) 2. 감액(특약만의 감액 포함) 또는 각출형기업연금보험의 단위보험구조수의 감소 3. 각출형기업연금보험의 보험료납입이 중지된 계약으로 3년 이내에 보험료의 납입이 재개되지 않음에 따른 해제 및 신기업연금에서 감액완납연금으로 변경한 후 갱생회사가 정하는 기간 내에 복구가 되지 않음에 따른 해제 4. 각출형기업연금보험 또는 신기업연금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임의에 의한 탈퇴에 수반하는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5. 각출형기업연금보험에서 전호 외의 사유에 의해 연금지급을 개시한 후의 연금수익자로부터 신청에 의해 연금에 대신한 일시금 지급 6. 각출형기업연금보험에서 이연을 실시한 경우 당해 이연기간 만료전의 연금에 대신하는 일시금 지급 및 이연기간 단축에 의한 연금 또는 연금을 대신한 일시금 지급 7. 각출형기업연금보험 또는 신기업연금보험에서 임의로 탈퇴한 피보험자가 이연을 실시한 경우의 당해 이연기간 만료에 의한 연금 또는 연금을 대신한 일시금 지급 8. 적립된 배당금의 지급 9. 인수비율의 변동에 의해 발생하는 책임준비금의 이관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체의 해산, 합병, 사업양도 및 피보험자의 전직이나 후생연금기금의 해산 등 계약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약하는 경우 2. 신기업연금보험 중 적격퇴직연금에서 감액변경의 경우 3. 각출형기업연금보험에서 연금수익자의 사망에 따라 유족에게 잔여연금현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4. 각출형기업연금보험에서 이연을 실시한 경우로 당해 이연기간 만료전에 피보험자의 사망·퇴직에 따라 연금 또는 연금을 대신한 일시금의 지급 5. 각출형기업연금보험 또는 신기업연금보험에서 임의로 탈퇴한 피보험자가 이연을 실시한 경우의 당해 이연기간 만료에 의한 연금 또는 연금을 대신하는 일시금의 지급으로 당해 이연의 개시기일이 2008년 10월 9일 전인 경우 6. 각출형기업연금보험에서 계약자지정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계약에서 연금수급권취득에 따르는 연금적립기금을 이관하는 경우 7. 변경기준일 후에 신규로 가입한 피보험자 개인이 탈퇴한 경우 8. 기타 계약자의 임의의사에 의하지 않고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라고 회사가 판단한 경우 |

(계속)

| 종류 | 조기해약공제의 적용 사유 | 조기해약공제의 부적용 사유 |
|---------------------------------|---|---|
| 재형 보험 · 재형 연금 보험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약(적립금의 중도인출 및 재형연금적립보험의 연금지급개시전 해약을 포함한다) 2. 재형주택저축적립보험 또는 재형연금적립보험에서 2년간 보험료의 납입이 없는 경우의 간주해약 3. 재형주택저축적립보험 또는 재형연금적립보험에서 변경기준일 이후 비과세한도액을 인하한 경우로 보험료누계액이 비과세한도액을 초과함으로써 보험료가 납입중단되어 그 후 2년이 경과한 것에 의한 간주해약 4. 재형주택저축적립보험에서 주택취득 전에 일부 생존급부금을 인출하여 그 후 필요서류 미제출에 의한 간주해약 5. 재형연금적립보험에서 비과세적용 확인 신고서 기간 내 제출이 없는 경우의 간주해약 6. 재형연금적립보험의 보험료납입완료 만료 이후의 퇴직에 의한 부적용사유에 의한 해약 7. 재형연금적립보험에서 확정연금의 연금지급 개시 후의 해약 8. 고지의무 위반에 의한 해제 9. 중대한 사실의 기재불량에 의한 소멸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적용사유 또는 계속 부적용사유 때문에 해약된 경우 2. 전직 등의 경우에 환급금의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된 경우 3. 재형주택저축적립보험에서 보험료누계액이 비과세한도액을 초과함으로써 보험료납입중단이 되어 그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간주해약이 된 경우(왼쪽 란의 3호를 제외) 4. 재형연금적립보험에서 연금액이 갱생회사가 정하는 연금액에 달하지 않아 연금지급일 전일에 해약이 된 경우 5. 재형연금적립보험에서 보험료누계액이 비과세한도액을 초과함으로써 보험료납입중단이 되어 그 후 2년 경과 후에 간주해약이 된 경우(왼쪽 란의 3호를 제외) 6. 기타 계약자의 임의의사에 의하지 않고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라고 회사가 판단한 경우 |

자료: 更生会社 大和生命保險株式會社(2008), “更生計畫案(東京地方裁判所 2008年(ミ)第12号 会社更生事件)” pp. 34~36

〈부록 표 II-6〉 大和生命의 조기해약공제 대상 금액

| 보험 종류 | 조기해약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
|------------------|--|
| 개인보험 · 개인연금보험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약환급금 2. 책임준비금 3. 선납보험료(일괄납 포함)의 미경과부분 4. 적립된 배당금 5. 미지급연금의 현가에 상당하는 금액 · 연금자원 6. 개인연금보험료 세제적격특약을 부가한 경우 적립되어 있는 환급금 중 변경기준일 시점에서 적립되어 있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자 포함) 7. 고지의무 위반 및 중대사유에 의한 해약환급금과 동액의 환급금 |
| 단체보험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약환급금 2. 탈퇴급부금 3. 배당금 4. 연금기금의 가격 또는 미지급연금의 현가 상당부분 5. 월납에서 일괄납보험료의 미경과부분 |
| 단체연금보험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급금 2. 일시금(연금에 대신하는 일시금을 포함) 3. 연금적립금 4. 연금수익자의 신청에 의해 지급하는 잔여보증기간에 대응하는 연금현가(다만, 연금수익자의 신청이 있었던 시점에서 직전의 연금개시기일 해당일에 대응하는 연금의 분할지급에 의한 미지급이 있을 때에는 당해 미지급분할연금의 현가상당액을 제외한다) 5. 배당금 6. 인수비율의 변동에 따라 지급하는 책임준비금 |
| 재형보험 · 재형연금보험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급금 및 기타 환급하는 금액 2. 적립금 3. 배당금 |

자료: 更生会社 大和生命保險株式會社(2008), “更生計畫案(東京地方裁判所 2008年(ミ)第12号 会社更生事件)” p. 37

〈부록 표 II-7〉 大和生命의 조기해약공제 적용기준일

| 보험 종류 | 적용기준일 |
|---------------|--|
| 개인보험 · 개인연금보험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기해약공제의 사유에 관련되는 청구서류가 회사의 본사에 도착한 날(보험계약자의 통지에 기인하지 않는 사유인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하, '접수일'이라한다)) 2. 전호에 불구하고 감액, 감액완납보험 등으로의 변경, 대출금의 잔액이 있는 보험계약의 전환 또는 연금 등으로의 이행에 대해서는 변경일(전환일 및 연금 등으로 이행한 날을 포함) 3. 전 1,2호에 불구하고, 접수일에 실효 또는 보험료납입유예 기간 중인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당해 미납입보험료를 납입해야 할 기일의 계약응당일의 전일 |
| 단체보험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기해약공제의 사유에 관련되는 청구서류가 회사의 본사에 도착한 날(보험계약자의 통지에 기인하지 않는 사유인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전호에 불구하고 보험계약자와 회사 간 협의에 의하여 해약이나 감액 등을 한 경우 또는 공동취급계약에서 인수비율을 변동한 경우는 그 해약일이나 감액일 또는 인수비율을 변동한 날 3. 공동취급계약에서는 간사회사에서 판정한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
| 단체연금보험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기해약공제의 사유에 관련되는 청구서류가 회사의 본사에 도착한 날(보험계약자의 통지에 기인하지 않는 사유인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다만, 이연기간 만료에 따라 연금 또는 연금을 대신하여 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당해 이연기간 만료일 또는 청구서류가 갱생회사의 본사에 도착한 날 중에서 늦은 날 2. 단체보험의 2호와 동일 3. 단체보험의 3호와 동일 |
| 재형보험 · 재형연금보험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기해약공제의 사유에 관련되는 청구서류가 회사의 본사에 도착한 날(보험계약자의 통지에 기인하지 않는 사유인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재형연금보험에서 전호의 해당일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는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당해 미납입보험료가 납입되는 납입기일의 전일 3. 전 1,2호 이외의 사유에 기인하는 경우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

자) 보험료자동이체대출 및 계약자대출한도액

보험료자동이체대출 및 계약자약관대출의 한도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조기해약공제 후의 해약환급금액으로 변경한다.

차) 계약내용의 변경 등의 제한

보통보험약관 등에서 정하는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하여 조기해약공제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다음의 변경은 조기해약공제의 기간 만료 시까지는 그 취급을 <부록 표 Ⅱ-8>과 같이 제한한다.

<부록 표 Ⅱ-8> 계약내용의 변경 등의 제한

| 제한하는 계약내용의 변경 | 취급 |
|--|---|
| 보험기간·보험료납입기간의 연장 등, 책임준비금의 인출을 수반하는 계약내용의 변경 | 취급하지 않음 |
| 보험기간·보험료납입기간의 단축 | 만기일·보험료납입기간 만료일이 조기해약공제 기간 만료일 이전이 되는 것과 같은 만기일이 앞당겨지는 단축화 및 보험료납입기간의 단축은 취급하지 않음 |
| 연금개시일의 변경 | 연금개시일의 지체·연장 및 연금개시일이 조기해약공제기간 만료일 이전이 되는 것과 같은 연금개시일의 단축화는 취급하지 않음 |
| 연금종류·연금지급기간의 변경 | 연금지급기간의 단축이 되는 연금종류의 변경 및 연금지급기간의 변경은 취급하지 않음 |
| 수령방법 선택 관련 특약의 일부제한 | 10년 미만의 확정연금에 의한 지급은 취급하지 않음 |

자료: 更生会社 大和生命保険株式会社(2008), “更生計画案(東京地方裁判所 2008年(ミ)第12号 会社更生事件)” p. 39

카) 기타 취급제한

개호보장이행특약의 부가는 취급하지 않는다.

연장보험(신무배당체증정기보험에서는 감액완납정기보험)으로의 변경은 취급하지 않는다.

특별부활(당초 부활기간보다 시점을 늦춘 부활)은 취급하지 않는다. 연금의 분할지급은 취급하지 않는다(다만, 단체보험·단체연금보험에서 연금의 분할지급은 제외한다).

타) 제 이율의 변경

① 적립이율

변경기준일 이후 선납보험료의 적립이율은 연 0.25%를, 배당 적립이율은 연 0.01%를 적용한다.

2009년 5월 1일 이후 보험금거치이율은 연 0.1%를, 생존급부금거치이율은 연 0.1%를 적용한다.

② 대출이율

2009년 5월 1일 이후 계약자대출이율은 연 2.75%를, 보험료자동이체대출이율은 연 2.75%를 적용한다.

또한, 상기 변경 후의 제 이율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며 회사소정의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

파) 계약자배당금의 할당

회사는 영업권의 상각이 완료되고 또한 보험계약 전부에 대한 책임준비금이 평균 순보험료식 적립액을 초과한 경우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적립하며 계약자배당금을 할당할 수 있다. 다만, 당분간 계약자배당금이 새롭게 할당될 예정은 없다. 장래의 계약

자배당금의 할당에 대해서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단체정기보험, 종합복지단체정기보험, 단체신용생명보험, 단체취업불능보장보험, 의료보장보험(단체형), 심신장해자부양자생명보험, 신기업연금보험유족연금특약, 각출형기업연금보험유족연금특약의 각 계약(이하, '단체보험'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집단마다 발생원인별 수지를 기준으로 하여 계약자배당을 할당한다. 다만, 2010년 3월 31일까지 계약응당일이 도래하는 단체보험 등에 대해서는 변경기준일 이후의 보험기간이 만료하여 갱신하는 경우에 한하며, 그 배당금액에 대해서는 갱신일 시점의 인수비율의 동향을 감안하여 산출한다.

하) 개인연금보험의 해약 취급

개인연금보험에 있어서 보전관리명령일로부터 갱생계획인가결정일 이후 3개월을 경과하는 날 사이에 연금개시일이 도래한 계약에 대해서는 갱생계획인가결정일 이후 6개월에 한하여 해약을 인정한다. 다만, 해약의 경우에는 조기해약공제를 적용한다.

가) 변경기준일 시점의 실효계약의 취급

변경기준일에 있어서 실효되어 있는 계약에 대해서는 이미 소멸해 있는 계약이어서 예정이율 등을 변경하는 사무적 절차를 시행하지 않는다. 다만, 당해 실효계약을 부활하는 경우에는 변경기준일에 유효했던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조건변경기준일이나 조기해약공제 적용 등 계약조건을 변경한다.

나) 변경기준일에 감액완납보험·연장보험으로 변경되어 있는 계약

당해 계약을 복구하는 경우에는 변경기준일에 변경 전의 계약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고 계약조건변경기준일이나 조기해약공제 적용 등 계약조건을 변경한다.

다) 연금지급정기보험계약의 다른 보험 종류에 대한 변경의 취급

취급 건수가 적은 '연금지급부정기보험특약'에 대해서는 갱생절차개시 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 소정의 방법에 의해 '수령방법 선택특약이 부가된 재해할증특약 정기보험'으로 변경하여 상기의 '⑥보험금액, 연금액, 급부금액 등의 변경'의 규정을 적용한다.

3) 갱생계획인가결정일 이전의 보험금 및 급부금의 지급

앞서 서술한, '나)보험계약 관련 우선적 갱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중 2)계약조건의 변경 및 변제방법'에서 정하는 계약조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갱생절차개시 결정일의 전날까지 발생한 보험사고에 기인하는 보험금, 연금, 급부금 등 및 배당금은 계약조건변경 전의 보험금액, 연금액, 급부금액 및 배당금액을 지급한다.

또한 갱생절차개시 결정일 이후부터 갱생계획 인가결정일 동안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기인하는 보험금, 연금, 급부금 및 배당금은 계약조건변경 후의 보험금액, 연금액, 급부금액 및 배당금액이 계약조건 변경 전의 보험금액, 연금액, 급부금액 및 배당금액의 90%(高예정이율계약의 경우에는 기설명한 별도의 보상률을 사용)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조건 변경 전의 보험금액, 연금액, 급부금액 및 배당금액의 90%(高예정이율계약의 경우에는 기설명한 별도의 보상률을 사용)를 지급한다.

4) 갱생계획인가결정일까지 잠정지급분의 정산

갱생절차개시 결정일의 전날까지 발생한 보험사고에 기인하는 보험금, 연금, 급부금 및 배당금에서 갱생계획인가 결정 후에 정산할 것을 전제로 지급한 계약에 대해서는 회사는 계약조건변경 전의 보험금, 연금, 급부금 등 및 배당금과 이미 기지급한 보험금액, 연금액, 급부금액 및 배당금액과의 차액을 갱생계획 인가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지급일까지의 연체이자는 붙이지 않는다.

또한 갱생절차개시 결정일 이후 갱생계획 인가결정일 사이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기인하는 보험금, 연금, 급부금 및 배당금에서 갱생계획인가 결정 후에 정산할 것을 전제로 하여 지급한 계약에 대하여 기 서술한 '2)계약조건의 변경 및 변제방법'에서 정한 계약조건 변경 후의 보험금액, 연금액, 급부금액 및 배당금액과 이미 기지급한 보험금액, 연금액, 급부금액 등 및 배당금액과의 차액을 갱생계획 인가결정 후 정산하는 것으로 하며, 회사가 추가로 지급할 때에는 갱생계획인가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지급일까지의 연체이자 는 붙이지 않는다.

5) 지급기한의 연기 및 연체이자

갱생계획 인가결정일까지 지급할 보험금, 연금, 급부금, 해약환급금, 이관금 등 보험계약에 관계된 일체의 지급채무의 지급에 대해서는 갱생계획 인가결정일로부터 3개월을 한도로 하여 지급기일을 연기하는 것으로 하며 이 경우 보전관리명령일로부터 지급일까지의 연체이자 는 붙이지 않는다.

한편, 갱생계획인가 결정일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기 전까지 그동안에 지급할 보험금, 연금, 급부금, 해약환급금, 이관금 등 보험계약에 관계되는 일체의지급채무의 지급에 대해서는 지급해야 할 때로부터 3개월을 한도로 하여 지급기일을 연기하는 것으로 하며 이 경우 보전관리명령일로부터 지급일까지의 연체이자 는 붙이지 않는다.

6) 보통보험약관 등의 변경

보통보험약관 등의 기재는 본 갱생계획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어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되는 것으로 한다.

7) 갱생계획안에 기재가 없는 사항

갱생계획안에 기재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갱생계획 인가결과와 동시 또는 결정

직후에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은 보통보험약관 등의 기재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다. 우선적 갱생채권(노동채권)의 권리의 변경 및 변제방법

1) 확정채권

내근직원 및 영업직원의 노동채권은 12건의 확정채권(퇴직일시금) 43,320,107원과 확정채권액 미정인 것(중신연금과 유기연금)이 304건이 있다.

2) 권리의 변경

상기의 확정채권인 퇴직일시금 및 퇴직연금에 관계된 노동채권은 갱생계획인가결정 확정 시에 24.8%의 면제를 받는다.

3) 변제방법

가) 퇴직일시금의 변제방법

퇴직일시금에 대해서는 면제 후의 금액을 갱생계획인가결정 확정일로부터 2개월을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일괄하여 변제한다.

나) 퇴직연금의 변제방법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면제 후 연금월액을 갱생회사의 「내근직원퇴직연금규정」, 「내근종업원제2퇴직연금규정」, 「영업직원(모집인)연금규정」, 「영업직원제2연금규정」(이하, 「각 퇴직연금규정」이라 한다)에 규정된 지급기일에 변제한다. 다만, 갱생계획인가결정 확정일 전에 이미 지급기일이 도래해 있는 미지급연금채권에 대해서는 지급기일이 도래한 미지급연금채권에 대한 상기 면제(24.8%) 후의 잔액을 갱생계획인

가결정 확정일로부터 2개월을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변제한다.

또한, 갹생계획인가결정 확정일 전에 연금채권의 기지급이 있을 경우에는 상기 단서의 변제액에서 당해 기지급액을 공제하여 변제하며, 기지급액이 미지급연금채무의 변제액을 초과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가장 빠르게 변제기가 도래하는 면제 후 연금월액의 변제에서 공제하여 변제한다.

다) 퇴직연금의 변제방법에 관한 특칙

채권자가 퇴직연금의 변제에 대하여 갹생계획 인가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미리 관리인의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기의 ‘나) 퇴직연금의 변제방법’에서 정하는 연금지급이 아니라 일시금지급을 선택하여 관리인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의 일시금 평가산정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액을 산정한 후에 산출된 채권액에 대한 상기 면제 후의 잔액을 갹생계획 인가결정 확정일로부터 2개월을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변제한다.

라) 유족연금의 변제방법

유족연금에 관계된 채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이 수급받을 퇴직연금은 상기 ‘2) 권리의 변경’에 의해 변경된 연금월액을 기초로 하여 각 퇴직연금규정에 따라 산출된 지급액을 정해진 지급기일에 변제한다.

라. 일반갹생채권의 권리의 변경 및 변제방법

1) 확정채권

일반갹생채권은 임원퇴직연금으로 29건, 317,746,397엔이다.

2) 권리의 변경

상기의 확정채권은 갱생계획인가결정 확정 시에 그 전액(100%)에 대해서 면제를 받는다.

5. 미확정갱생채권 등에 대한 조치

확정 전의 미확정일반갱생채권에 대해서는 면제를 하지 않는다. 또한 미확정일반 갱생채권이 확정된 때에는 일반갱생채권으로서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라. 일반갱생채권의 권리의 변경 및 변제방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전액 면제조치를 한다.

6. 주주의 권리변경과 모집주식의 할당

갱생회사는 갱생계획 인가결정 확정일의 익일 또는 2009년 5월 29일 중 늦은 날에 大和生命의 발행주식 전부를 무상으로 취득하고, 같은 날에 주식을 취득함과 동시에 그 보유주식 전부를 소각한다.

또한 자본금액을 감소하여 자본금 감소에 따라 발생한 자본잉여금은 결손보전에 충당하였다.¹⁸¹⁾

한편, 갱생회사는 다음과 같이 모집주식을 발행하여 할당하였다. 갱생회사는 보통 주식을 모집하여 갱생계획인가결정 확정일의 익일 또는 2009년 5월 29일 중 늦은 날을 납입기일로 하였다. 모집주식은 전액 일본프루덴셜보험그룹의 자회사인 지브랄터(Gibraltar)생명에 할당하였다.

갱생회사의 주식 전부를 할당받은 지브랄터생명은 갱생회사大和生命보험주식회사를 '프루덴셜파이낸셜저팬 생명보험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고 2009년 6월 1일부터 업무를 재개하였다.

181) 자본금 120억 8,696만 3,000엔을 감소하여 69억 900만 엔(자본금 34억 5,450만 엔, 자본준비금 34억 5,450만 엔)으로 하였음

7. 변제자금의 조달방법

가. 변제자금의 조달

갱생채권의 변제자금은 갱생회사의 유동성보유 현예금, 영업수익금, 부동산·유가증권과 신규모집주식발행 납입금, 대출금 등 기타 자산 매각처분자금 및 대출금의 회수금 등에 의해 조달한다.

나. 예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수익금의 사용처

갱생계획 수행 중에 갱생계획의 수익예상액을 초과하는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갱생회사 재무내용의 건전화를 위해 영업권 등 무형자산의 상각, 책임준비금의 충실화 등에 충당한다.

다. 변제의 총당지정

관리인 또는 갱생회사는 갱생채권자가 채권을 복수 보유하는 경우에는 갱생채권의 변제 시에 총당할 채권을 지정하여 변제할 수 있다.

라. 공익채권 및 보상대상보험금과 그 변제방법

1) 지급공익채권 등

갱생절차개시 결정 후 2009년 2월 28일까지 지급한 공익채권 등은 총액 약 22억 엔이고, 동 기간 내에 갱생특례법 및 보험업법에 기인하여 지급한 보상대상보험금 등의 총액은 약 88억 엔이다.

2) 미지급공익채권 등

2009년 2월 28일 현재의 미지급공익채권 등은 약 3,200억 엔이다.

3) 공익채권 등의 변제방법

상기 미지급공익채권 등 및 2009년 3월 1일 이후 회사갱생절차 종결까지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공익채권 등은 수시로 지급한다.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2017년부터 기존의 연구보고서, 정책보고서, 경영보고서, 조사보고서가 연구보고서로 통합되었습니다.

■ 연구보고서

- 2017-1 보험산업 미래 / 김석영 · 윤성훈 · 이선주 2017.2
- 2017-2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 개선방안 / 전용식 · 채원영 2017.2
- 2017-3 상호협정 관련 입법정책 연구 / 정호열 2017.2
- 2017-4 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사연계연금 연구 / 정원석 · 강성호 ·
마지혜 2017.3
- 2017-5 자영업자를 위한 사적소득보상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 · 강성호 · 김동겸
2017.3
- 2017-6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개선을 위한 현안 과제 / 이태열 · 최장훈 · 김유미
2017.4

■ 연구보고서(구)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 · 장동식 ·
김동겸 2008.1
-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6
-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 · 이경희 · 김동겸 2008.3
-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 안철경 · 권오경 2009.1
-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2
-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 · 이해은 2009.3
-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 · 이창우 · 김동겸
2009.3
-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 방법
연구 / 기승도 · 김대환 2009.8
-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 · 김대환 · 김혜란
2010.1
-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 · 이해은
2010.4

-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 · 이경희 2010.5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 익 · 김동겸 2010.7

■ 정책보고서(구)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 · 최 원 2008.3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 이태열 · 신종협 · 황진태 · 유진아 · 김세환 · 이정환 · 박정희 · 김세중 · 최이섭 2008.11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 익 · 이민환 · 유경원 · 최영목 · 최형선 · 최 원 · 이경아 · 이혜은 2009.2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 · 김경환 · 이종욱 2009.3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 황진태 · 변혜원 · 이경희 · 이정환 · 박정희 · 김세중 · 최이섭 2009.12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 · 변혜원 · 권오경 2010.1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 김대환 · 이경희 · 이정환 · 최 원 · 김세중 · 최이섭 2010.12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 · 안철경 · 변혜원 · 최영목 · 최형선 · 김경환 · 이상우 · 박정희 · 김미화 2010.4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 · 김경환 · 박정희 2011.7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2011-4 저출산 · 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 · 류건식 · 오영수 · 조용운 · 진 익 · 유진아 · 변혜원 2011.7
 2011-5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 안철경 · 이경희 2011.11
 2011-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 황진태 · 이정환 · 최 원 · 김세중 · 오병국 2011.12
 2012-1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 조재린 · 이기형 · 정인영 2012.8
 2012-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 이기형 · 변혜원 · 정인영 2012.10

- 2012-3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 변화 및 시사점 / 임준환 · 유진아 · 이경아 2012.11
- 2012-4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연구: 공시 및 상품설계 개선을 중심으로 / 이기형 · 임준환 · 김해식 · 이경희 · 조영현 · 정인영 2012.12
- 2013-1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 이창우 · 윤상호 2013.1
- 2013-2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 · 김대환 · 이상우 2013.1
- 2013-3 201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 전용식 · 이정환 · 최 원 · 김세중 · 채원영 2013.2
- 2013-4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 진 익 · 오병국 · 이성은 2013.3
- 2013-5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구 / 이승준 · 김해식 · 조재린 2013.5
- 2013-6 201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 전용식 · 최 원 · 김세중 · 채원영 2013.12
- 2014-1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 이승준 · 강민규 · 이해랑 2014.3
- 2014-2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 조재린 · 김해식 · 김석영 2014.3
- 2014-3 공 · 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 방안 / 이태열 · 강성호 · 김유미 2014.4
- 2014-4 201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 김석영 · 김진익 · 최 원 · 채원영 · 이아름 · 이해랑 2014.11
- 2014-5 의료보장체계 합리화를 위한 공 · 사건강보험 협력방안 / 조용운 · 김경환 · 김미화 2014.12
- 2015-1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IFRS와 RBC 연계방안 / 김해식 · 조재린 · 이경아 2015.2
- 2015-2 2016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 김석영 · 김진익 · 최 원 · 채원영 · 이아름 · 이해랑 2015.11
- 2016-1 정년연장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와 개인연금의 정책방향 / 강성호 · 정봉은 · 김유미 2016.2
- 2016-2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인상 정책 평가: DSGE 접근법 / 임태준 · 이정택 · 김혜란 2016.11
- 2016-3 2017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6.12

■ 경영보고서(구)

- 2009-1 기업휴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 · 한상용 2009.3
-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 익 2009.3
-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 익 · 유시용 · 이경아 2009.3
-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 · 최 원 2009.6
-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 · 권오경 2010.2
-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 · 김경환 2010.2
-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 · 이창우 · 이상우 2010.3
-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 · 정책연구실 · 동향분석실 2010.6
-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 · 재무연구실 2010.6
-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관리연구 / 권용재 · 장동식 · 서성민 2010.4
-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 방안 / 김해식 · 최영목 · 김소연 · 장동식 · 서성민 2010.10
-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 · 변혜원 · 서성민 2011.1
-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 · 김소연 · 김동겸 2011.2
-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연구 / 기승도 · 황진태 2011.3
- 2011-4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 · 기승도 · 권오경 2011.5
-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윤아 · 정인영 2011.6
-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관리방안 / 조용운 · 황진태 · 김미화 2011.8
-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 · 김대환 · 이상우 2011.9
-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 · 류건식 · 이상우 2011.10
- 2012-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 조영현 · 전용식 · 이해은 2012.7
- 2012-2 보험산업 비전 2020 : ㉠ sure 4.0 / 진 익 · 김동겸 · 김혜란 2012.7
- 2012-3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 김해식 · 김석영 · 김세영 · 이해은 2012.9
- 2012-4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발생원인과 관리방안 / 김대환 · 류건식 ·

- 김동겸 2012.9
- 2012-5 은퇴가구의 경제형태 분석 / 유경원 2012.9
- 2012-6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 조재린 · 황진태 · 권용재 · 채원영 2012.10
- 2013-1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전용식 · 채원영 2013.3
- 2013-2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확대방안 연구 / 기승도 · 조용운 · 이소양 2013.5
- 2016-1 뉴 노멀 시대의 보험회사 경영전략 / 임준환 · 정봉은 · 황인창 · 이해은 · 김혜란 · 정승연 2016.4
- 2016-2 금융보증보험 잠재 시장 연구: 지방자치단체 자금조달 시장을 중심으로 / 최창희 · 황인창 · 이정아 2016.5
- 2016-3 퇴직연금시장 환경변화와 보험회사 대응방안 / 류건식 · 강성호 · 김동겸 2016.5

■ 조사보고서(구)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 · 김진억 · 이재원 · 박정희 · 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 기승도 · 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 이상우 · 권오경 2009.3
-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 평가모형 및 측정 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 · 이정환 · 최이섭 · 정중영 · 최태영 2009.3
-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 익 · 김상수 · 김종훈 · 변귀영 · 유시용 2009.3
-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 · 전선애 · 최 원 2009.4
-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 · 오영수 · 김영진

- 2009.4
-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 · 이민환 · 윤건용 · 최 원 2009.7
-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 · 김세환 · 김세중 2009.7
-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 · 해약분석 / 류건식 · 장동식 2009.8
-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중협 · 최형선 · 최 원 2010.3
-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 · 김미화 2010.3
-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제와 시사점 / 이창우 · 이상우 2010.4
-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 · 박정희 2010.4
-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제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5
-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 · 이종욱 2010.5
- 2010-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 · 서대교 · 김미화 2010.4
-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 익 · 김해식 · 유진아 · 김동겸 2011.1
-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 · 이창우 · 이상우 2010.7
-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 · 황진태 · 서성민 2011.6
-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 · 최 원 2011.5
-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 익 · 김해식 · 김혜란 2011.7
- 2011-4 의료시장 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 · 이기형 2011.8
-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운 · 변혜원 · 이승준 · 김경환 · 오병국 2011.11
- 2012-1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황진태 · 전용식 · 윤상호 · 기승도 · 이상우 · 최 원 2012.6
- 2012-2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제 특징과 시사점 / 이상우 · 오병국 2012.12
- 2012-3 솔벤시 II 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 장동식 · 김경환 2012.12
- 2013-1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 · 황진태 · 변혜원 · 정원석 · 박선영 · 이상우 · 최 원 2013.8
- 2013-2 건강보험 진료비 전망 및 활용방안 / 조용운 · 황진태 · 조재린 2013.9
- 2013-3 소비자 신뢰 제고와 보험상품 정보공시 개선방안 / 김해식 · 변혜원 ·

- 황진태 2013.12
- 2013-4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연구 / 변혜원 · 조영현 2013.12
- 2014-1 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제도 도입 방안 / 박선영 · 권오경 2014.3
- 2014-2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 효율화방안: 보험료 납입단계의 세제방식 중심으로 / 정원석 · 강성호 · 이상우 2014.4
- 2014-3 보험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법제연구: 모집채널, 행위 규제 등을 중심으로 / 한기정 · 최준규 2014.4
- 2014-4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판매채널 전략 연구 / 황진태 · 박선영 · 권오경 2014.4
- 2014-5 거시경제 환경변화의 보험산업 파급효과 분석 / 전성주 · 전용식 2014.5
- 2014-6 국내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 전용식 · 윤성훈 · 채원영 2014.5
- 2014-7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사업모형 연구 / 조용운 · 오승연 · 김미화 2014.7
- 2014-8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 김경환 · 강민규 · 이해량 2014.8
- 2014-9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 · 변혜원 · 정원석 · 박선영 · 오승연 · 이상우 · 최 원 2014.8
- 2014-10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 김석영 · 김세중 · 김혜란 2014.11
- 2014-11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평가와 제언 / 전용식 · 조영현 · 채원영 2014.12
- 2015-1 보험민원 해결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 / 박선영 · 권오경 2015.1
- 2015-2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 · 조재린 · 김혜란 2015.2
- 2015-3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 성장 저해 요인 분석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 / 최창희 · 정인영 2015.3
- 2015-4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 / 이태열 · 황진태 · 이선주 2015.3
- 2015-5 2015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5.8
- 2015-6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 / 오승연 · 김유미 2015.8
- 2016-1 경영환경 변화와 주요 해외 보험회사의 대응 전략 / 전용식 · 조영현 2016.2
- 2016-2 시스템리스크를 고려한 복합금융그룹 감독방안 / 이승준 · 민세진 2016.3
- 2016-3 저성장 시대 보험회사의 비용관리 / 김해식 · 김세중 · 김현경 2016.4
- 2016-4 자동차보험 해외사업 경영성과 분석과 시사점 / 전용식 · 송윤아 · 채원영 2016.4

- 2016-5 금융·보험세제연구: 집합투자기구, 보험 그리고 연금세제를 중심으로 / 정원석·임준·김유미 2016.5
- 2016-6 가용자본 산출 방식에 따른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 비교 / 조재린·황인창·이경아 2016.5
- 2016-7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중·소형 보험회사의 생존전략 / 이태열·김해식·김현경 2016.5
- 2016-8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상품 다양화 방안: 종신소득 보장기능을 중심으로 / 김세중·김혜란 2016.6
- 2016-9 201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6.8
- 2016-10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연구 / 이기형·김혜란 2016.9

■ 조사자료집

- 2014-1 보험시장 자유화에 따른 보험산업 환경변화 / 최원·김세중 2014.6
- 2014-2 주요국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 제도 연구 -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 / 장동식·이정환 2014.8
- 2015-1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현황과 해외사례 / 강성호·정원석·김동겸 2015.1
- 2015-2 경증치매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의 치매신탁 도입방안 / 정봉은·이선주 2015.2
- 2015-3 소비자 금융이해력 강화 방안: 보험 및 연금 / 변혜원·이해랑 2015.4
- 2015-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 / 박대근·박춘원·이향용 2015.5
- 2015-5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 전성주·박선영·김유미 2015.5
- 2015-6 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 / 정원석·김미화 2015.5
- 2015-7 일반 손해보험 요율제도 개선방안 연구 / 김석영·김혜란 2015.12

■ 연차보고서

- 제 1 호 2008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09.4
- 제 2 호 2009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0.3
- 제 3 호 2010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1.3

| | | |
|-------|---------------------|---------|
| 제 4 호 | 2011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 2012.3 |
| 제 5 호 | 2012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 2013.3 |
| 제 6 호 | 2013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 2013.12 |
| 제 7 호 | 2014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 2014.12 |
| 제 8 호 | 2015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 2015.12 |
| 제 9 호 | 2016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 2017.1 |

■ 영문발간물

| | | |
|-------|---|---------|
| 제 7 호 |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IRI, | 2008.9 |
| 제 8 호 |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IRI, | 2009.9 |
| 제 9 호 |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IRI, | 2010.8 |
| 제10호 |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 KIRI, | 2011.10 |
| 제11호 |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2 / KIRI, | 2012.11 |
| 제12호 |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3 / KIRI, | 2013.12 |
| 제13호 |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4 / KIRI, | 2014.7 |
| 제14호 |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5 / KIRI, | 2015.7 |
| 제15호 |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6 / KIRI, | 2016.7 |
| 제 6 호 |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3 / KIRI, | 2014.2 |
| 제 7 호 |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3 / KIRI, | 2014.5 |
| 제 8 호 |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4 / KIRI, | 2014.8 |
| 제 9 호 |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4 / KIRI, | 2014.10 |
| 제10호 |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4 / KIRI, | 2015.2 |
| 제11호 |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4 / KIRI, | 2015.4 |
| 제12호 |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5 / KIRI, | 2015.8 |

■ CEO Report

| | | |
|--------|--|---------|
| 2008-1 |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율 관리 방안 / 기승도 | 2008.6 |
| 2008-2 |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 2008.6 |
| 2008-3 |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 2008.8 |
| 2008-4 |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 · 서성민 | 2008.12 |
| 2009-1 |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 2009.2 |

-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 · 김동겸 2009.3
-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 · 이상우 2009.6
-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 · 이상우 2009.10
-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 · 이상우 · 김혜란 2010.4
-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 · 이기형 2010.9
-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 · 이상우 2010.9
-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제 / 최형선 · 김동겸 2011.3
-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 · 류건식 2011.8
- 2012-1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2.8
- 2012-2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조용운 · 이상우 2012.11
- 2012-3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 윤성훈 · 전용식 · 전성주 · 채원영 2012.12
- 2012-4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Ⅰ):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 이기형 · 정인영 2012.12
- 2013-1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Ⅱ):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 김대환 · 이상우 2013.1
- 2013-2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Ⅲ):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 이승준 2013.3
- 2013-3 FY2013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3.7
- 2013-4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 전용식 · 윤성훈 2013.7
- 2014-1 2014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4.6
- 2014-2 인구구조 변화가 보험계약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김석영 · 김세중 2014.6

- 2014-3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이태열 · 조재린 · 황진태 · 송운아 2014.7
- 2014-4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 임준환 · 황인창 · 이해은 2014.10
- 2015-1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소득세제 개선 방향 / 강성호 · 류건식 · 정원석 2015.2
- 2015-2 2015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5.6
- 2015-3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및 이의 영향 / 김석영 2015.10
- 2016-1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의미와 시사점 / 김석영 2016.1
- 2016-3 2016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6.7
- 2016-4 EU Solvency II 경과조치의 의미와 시사점 / 황인창 · 조재린 2016.7
- 2016-5 비급여 진료비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 / 정성희 · 이태열 2016.9
- 2017-1 보험부채 시가평가와 보험산업의 과제 / 김해식 2017.2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 · 김동겸 2008.2
-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 · 권오경 2008.7
-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 · 김동겸 2008.7
-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 익 2008.7
-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 · 서성민 2008.9

■ 간행물

- 보험동향 / 연 4회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및 제공자료

| | 법인회원 | 특별회원 | 개인회원 |
|------|---|---|---|
| 연회비 | ₩ 300,000원 | ₩ 150,000원 | ₩ 150,000원 |
| 제공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보험동향 - 보험금융연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보험동향 - 보험금융연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보험동향 - 보험금융연구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PDF) - 영문보고서 | - |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 3775-9113, 9080 팩스 : (02) 3775-9102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부산 : 영광도서

저자약력

정봉은

일본 慶應大學(KEIO) 대학원 상학박사 과정수료

(전) 삼성생명 상무

(전)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 전무

(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한국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koko1957@daum.net)

연구보고서 2017-7

일본의 보험회사 도산처리제도 및 사례

발행일 2017년 5월

발행인 한 기 정

발행처 보 험 연 구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대표전화: (02) 3775-9000

조판및
인쇄

고려씨엔피

ISBN 979-11-85691-57-2 94320

979-11-85691-50-3 (세트)

정가 10,000원